

제429회 국회  
(정기회)

#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록

## (임시회의록)

제 6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9월23일(화)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위철환) 인사청문요청안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위철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위철환)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위철환)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 2025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

### 상정된 안건

- |                                            |   |
|--------------------------------------------|---|
|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위철환) 인사청문요청안            | 1 |
|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위철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 1 |
|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위철환)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   | 2 |
| 5. 2025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 2 |
| 6.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 | 3 |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신정훈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먼저 인사청문회 관련 안건을 처리하고 2025년도 국정감사 계획서를 채택한 후에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청문회를 진행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위철환) 인사청문요청안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위철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10시06분)

○위원장 신정훈 의사일정 제1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위철환) 인사청문요청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17일 대통령으로부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서 회부 후 15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실시계획서와 같이 인사청문회를 실

시코자 합니다.

인사청문회는 10월 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 질의 시간, 증인신문 등 운영 관련 사항은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정하며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는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실시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철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계획서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위철환)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

(10시07분)

○위원장 신정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까지 총 39개 기관에 대하여 830건의 자료제출 요구가 접수되었습니다. 이 안건은 의결 즉시 각 기관에 송부하여 9월 28일 오전 10시까지 자료를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경우 인사청문회법 제12조에 따라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연서한 요구서를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 설명해 드린 내용과 같이 자료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서면질의와 구두질의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법은 서면질의를 청문회 5일 전까지 후보자에게 송부하여 청문회 48시간 전 까지 답변서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원님들께서는 9월 26일 오전 10시까지 서면질의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두질의의 경우 질의요지서를 청문회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원님들께서는 9월 30일 오전 9시까지 질의요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상 기한이 준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은 증인·참고인 출석요구가 없어서 상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 5. 2025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09분)

○위원장 신정훈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올해 우리 위원회의 국정감사는 10월 14일부터 30일까지 행정안전부 등 24개 위원회 선정기관과 서울경찰청 등 14개 본회의 승인기관에 대해 실시하는 것으로 위원장과 간사 간 합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와 같이 국정감사를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 일정과 지방감사반의 구성·변경 등 국정감사 운영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위원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6.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

(10시10분)

○위원장 신정훈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청문회는 먼저 출석한 증인들의 선서를 받고 바로 위원님들의 증인신문 및 참고인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국정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 중 모욕적 행동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할 때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국회에서 증인으로 조사받는 자는 같은 법으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 증언으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영환 충북도지사께서 발언대로 나와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영환 지사께서 선서를 실시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영환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9월 23일

증인 김영환

증인 이동옥

증인 홍명기

증인 양찬모

증인 이석식

증인 박준규

증인 여운현

증인 박상준

증인 오유길

증인 이한울  
증인 이범석  
증인 최원근  
증인 조희송  
증인 이상래  
증인 조완석  
증인 서재환  
증인 최선호  
증인 박영빈  
증인 남화영  
증인 이현상

○**이연희 위원** 위원장님, 질의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증인들은 좌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위원님들의 신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은 배부해 드린 순서에 따라서 신문하실 증인 등을 지정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신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입니다.

의사진행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지난 기관보고와 또 현장보고를 통해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증인들의 답변이라든가 이런 과정에 상당히 정체되지 않은 표현도 있었고 또 엇갈리는 표현도 있었습니다. 이번 청문회가 이 아픈 사건의 진상에 접근하고자 하는 것이지 누구를 기어코 처벌하고자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아는 범위 내에서 차분하니 충분하게 답변과 진술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려면 신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연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동안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오늘 증인으로 나오신 김영환 지사께서 유명을 달리하신 감리단장님에 대해서 국정감사에 오는 것을 두려워해서 4년 중에 2년을 산 감리단장이 목을 매 죽었다라는 발언을 10일과 15일에 두 차례나 하셨습니다. 이 발언은 사자의 명예와 직결된 부분입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말씀드리는 이유는 감리단장의 지인들께서 저희 의원실로 직접 의견을 전달해 주셨기 때문에 부득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리단장은 오송참사로 인한 희생에 대해서 많이 자책하시면서 매우 힘들어하셨고 독실한 천주교 신자로 수감 중에도 매일같이 희생자를 위해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감리단장은 임시제방과 관련한 사고에 대해서는 자책을 하셨고 또 매우 힘들어하셨다고 합니다. 다만 무단 절개에 대해서는 또 많이 억울해하셨다고 합니다.

실제로 참사 당일 극한 강우로 인해 제방 월류 위기를 인식하고 감리단장은 현장에서 제방 월류 위험 상황을 관계기관에 긴급히 알리고자 노력했고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서 제방의 월류를 막고자 애썼으나 안타깝게도 참사를 막지 못했습니다.

감리단장이 위인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감리단장은 이미 부실 관리 감독 등의 혐의 대

부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충북도지사의 감리단장이 책임을 회피하고 국감에 출석하지 않으려고 목숨을 끊었다라는 식의 발언은 명백한 사자명예훼손입니다.

위원장님, 이에 대해서 김영환 지사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해 주시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김영환 지사에게 더는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발언을 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정훈 본 위원장도 질의와 답변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긴 하지만 대단히 흥분된 상태에서 아주 적절치 못한 발언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회의록을 제가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확인 절차를 거치는 시간이, 그 당일 회의에서 도저히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적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마는 오늘 이연희 위원님의 발언과 같은 내용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국정감사에 오는 것이 두려워서 감리단장이 스스로 생을 달리한 것처럼 한 표현에서부터 굉장히 적절치 못한 발언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국정감사의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또 정말 국정감사 과정에서 지금 감리단장의 명예와도, 가족과의 명예와도 관련돼 있는 문제기 때문에 적절한 사과의 표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영환 그 발언의 취지는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마는 어떻든 그렇게 비친 면이 있고 또 가족들에게 그런 상처가 됐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김영환 증인께서는 직설적인 표현을 하시고도 늘 본의가 아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답변 과정에서 좀 더 정제된 표현을 해 주시고 또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 책임감 있는 발언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이제 신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덕흠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박덕흠 위원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지역구인 박덕흠 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참사 희생자 여러분들의 명복을 빌고 또 유가족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청문회를 통해서 미흡한 부분은 찾아서 보완을 하고 또다시 재난안전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완석 금호건설 대표이사님 나오셨나요?

○증인 조완석 예.

○박덕흠 위원 대표님, 지금 시공사의 임시제방 부실시공에 대해서 인정하고 계시는 거지요?

○증인 조완석 예, 저희가 공사 수행 중에 임시제방 축조 관련해서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죄드립니다.

○박덕흠 위원 결국은 부실하게 축조된 임시제방이……

○위원장 신정훈 잠깐만요. 답변자는 마이크에 좀 더 가까이 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흠 위원 부실하게 축조된 임시제방이 붕괴되면서 발생된 사안입니다.

대표님, 시공사에서는 유족과 피해자분들께 보상을…… 피해 보상이 있었습니까?

○증인 조완석 죄송스럽게도 아직 거기까지는 신경을 못 썼습니다.

○박덕흠 위원 피해 보상을 할 용의는 있으신가요, 유족들에게?

○증인 조완석 예, 제가 그간 참사가 일어난 이후에 수사를 받고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확정받고 하는 과정 속에서 그것까지 미처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유가족과 재해자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말씀 드립니다.

○**박덕흠 위원** 시공사에서도 함께 가족을 잃은 유가족분들의 피해 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 조완석** 예, 알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상래 전 행복청장님 나오셨나요?

○**증인 이상래** 예.

○**박덕흠 위원** 잠깐 나오시지요.

이번 사고의 주된 원인이 시공사의 부실한 제방 설치 또 행복청의 부실한 시공 관리라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으시지요?

○**증인 이상래**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대법원 판결을 한 줄 얘기……

○**박덕흠 위원** 하여간 일단 지금 그 대답만 해 주세요.

○**증인 이상래**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박덕흠 위원** 동의하지 않아요?

○**증인 이상래** 예.

○**박덕흠 위원** 그러면 지난 10일 기관보고에서 강주엽 행복청장께서 기존 제방의 일부를 절개하고 임시제방을 설치했다는 취지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PPT 좀 띠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면)

저기 보면 시공사가 계속 절개를 시작하고 철거를 하고 또 임시제방 설치하고, 또 임시제방 설치 시작을 2023년도 6월 29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 청장님께서…… 금강 유역환경청에서는 기존 제방을 무단으로 이렇게 절개를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행복청에서 기존 제방 절개와 관련된 협의 내용은 없다고 하는 데 동의하시는 거지요?

○**증인 이상래** 그것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존 제방 설계는 제가 부임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박덕흠 위원** 아니, 협의 내용이 없다고 하는 걸 동의 안 하신다고요?

○**증인 이상래** 그러니까 기존 제방 절개에 대해서 협의가 없었다는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박덕흠 위원** 그러면 뭐예요?

○**증인 이상래** 꾸준한 협의가 있었던 걸로 사후에 보고받았습니다.

○**박덕흠 위원** 어디랑 협의를 했다는 거예요?

○**증인 이상래** 환경청하고요.

○**박덕흠 위원** 환경청하고 계속했다?

○**증인 이상래** 예.

○**박덕흠 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시공을 해서…… 왜냐하면, 교량을 놓잖아요. 그렇지요? 교량을 놓으면 결국은 절개를 해야 되는데 관리 감독을 행복청에서 하잖아요. 그렇지요?

○**증인 이상래** 관리 감독의 내용이 좀 다릅니다, 위원님.

○박덕흠 위원 왜요?

○증인 이상래 대법원 판례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공사를 지휘·감독할 법령상 혹은 계약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누가 없다는 거예요?

○증인 이상래 발주청에요.

○박덕흠 위원 그러면 어디가 있다는 거예요?

○증인 이상래 시공사가 책임을 지는 것이지요, 감리인하고. 감독권한대행 사고입니다, 위원님.

○박덕흠 위원 아니, 시공사가 하게 되면 관리 감독을, 당연히 이게 잘못된 걸 지적을 하고……

그러면 설계 변경 같은 것도 안 해 주나요?

○증인 이상래 설계 변경은 검토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박덕흠 위원 설계 변경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관리 감독을 하는 거지요. 관리 감독이 안 되면 어떻게 설계 변경을 합니까?

○증인 이상래 위원님 말씀은요, 법령에 따라서 행복청이 해야 될 의무를 다한 것은 맞는데 그 의무의 내용이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박덕흠 위원 내 얘기는 금호건설에서, 예를 들면 시공사에서 절개를 하게 되면 감리나 또 행복청 감독이 당연히 현장에 나와서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아는데 무단으로 했다니까 제가 이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증인 이상래 저도 사후에 보고를 받고 체크를 해 봤는데 무단 절개 자체가 저는 인정이 안 되고요. 그리고 저희 행복청 직원들의 보고에 따르면 꾸준히 협의를 해 왔고 또 설계에 이미 제방의 절개가 반영이 돼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러니까 금강유역환경청하고 수시로 협의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증인 이상래 관련된 협의도 하고 아마 환경청 직원들이 현장에도 나와 본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덕흠 위원 다음 PPT 좀 띄워 주세요.

금강유역환경청 회신 공문인데 여기 제목을 보면 미호천길(미호강 제방도로) 단절했다는 협의사항입니다.

단절이라는 내용이 뭔 것 같아요, 청장님?

○증인 이상래 기존 제방을 절개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박덕흠 위원 그렇지요?

○증인 이상래 예.

○박덕흠 위원 단절이 절개라는 건데, 저기에 절개라는 표현이 안 됐는데 단절했다는 것은 결국은 끊어냈다는 얘기거든. 이게 단절시켰다는 얘기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임시제방은 충분히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축조 또 향후 강외지구 사업 준공 시 우리 청에서 철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임시제방은 충분히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라 하는 것은, ‘충분히 안정성’ 뭘 의미하는 거라고 봐요, 청장님?

- 증인 이상래** 제방을 홍수에 대비해서 안전하게 축조를 하라는 의미겠지요.
- 박덕흠 위원** 그렇지요. 홍수 대비해서 하라는 건데, 그러면 절개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 증인 이상래** 저 문구를 보면 기존에 제방이 절개됐다는 것을 환경청에서도 이미 알고 있었던 거라고 추단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저게 만일 무단절개라면 왜 그때 시정조치를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로서는 기존에 이미 설계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환경청에서 별다른 얘기가 없었고……
- 박덕흠 위원** 그런데 제 말씀은 환경청에서 이 내용으로 행복청에다가 회신을 했잖아요. 그러면 금강청에서도 임시제방 안정성 이런 부분, 절개 부분을 행복청에서도 알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단절개가 아닌 것 아닌가……
- 증인 이상래** 행복청에서 절개 사실을 안 것은, 제가 재임 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다만 제가 부임하기 전에 2021년 9월에서 11월경에 절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덕흠 위원** 그러면 그때 청장님은 누구예요?
- 증인 이상래** 오늘 증인으로 출석을 안 했습니다, 채택이 안 돼 가지고.
- 박덕흠 위원** 제일 중요한 분이 안 나오셨네, 보니까.
-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식 위원** 이해식 위원입니다.

행복청의 성흔수 주무관님 그리고 충청북도 박상준 근무자, 충청북도 이한울 주무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시간 끊어 주시고.

성흔수 주무관께서는 좀 서 주시고요. 이한울 주무관하고 박상준 근무자는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자리에.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성흔수 주무관께 묻겠습니다.

오송참사 당일 날 충북도 자연재난과에 네 차례 전화를 했지요?

- 참고인 성흔수** 예.

- 이해식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이 네 차례 전화 중에 세 차례는 이한울 주무관이 받았는데 이한울 주무관과 통화한 시간이 도합 7분 3초더라고요, 세 차례에 걸쳐서. 어떤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까?

- 참고인 성흔수** 처음에는 임시제방이 수위가 올라와서 위험하다고 해서……

○**이해식 위원** 주민대피 및 교통통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두 번째 통화는 아까는 대피 준비였지만 지금은 대피해야 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고. 그렇지

요?

○참고인 성흔수 예.

○이해식 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 미호천 제방이 터지는 중이다라고 하는 것은 박상준 주무관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렇지요?

○참고인 성흔수 박상준 주무관한테는 제가 전화를 처음 받았는데 박상준 주무관이 ‘제가 아까 전화했던 행복청 성흔수입니다’ 이러니까 다시 전화를 돌려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해식 위원 누구한테? 이한울 주무관한테?

○참고인 성흔수 예.

○이해식 위원 아, 그러면 네 차례 다 이한울 주무관하고 통화를 했군요?

○참고인 성흔수 예, 제 기억으로는 전달 내용은 아마 아까 통화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아는 이한울 주무관한테 다시 바꿔 준 것으로……

○이해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질문은 그러면 도합 8분 이상을 이한울 주무관과 통화했다는 건데 이렇게 길게 통화한 이유, 그러니까 조치가 됐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전화였는지 그 외 어떤 다른 내용이 또 있었는지 혹시 기억 안 나세요?

○참고인 성흔수 그때 조사 받으면서 저도 정확히 확인까지는, 확인을 했는지는 기억은 안 나고……

○이해식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성흔수 주무관께서는 충북도청에 근무한 적이 있지요? 어디에 근무하셨어요? 자연재난과에 근무한 적 있습니까?

○참고인 성흔수 예, 자연재난과, 회계과 그리고 남부출장소에 근무했습니다.

○이해식 위원 너무 잘 아시는군요. 그렇지요?

충북도는 재난상황실 전화도 있어요. 재난상황실에 전화하지 않고 지금 이한울 주무관이 맡고 있는 여름철 대표전화에 한 이유는 뭐니까?

○참고인 성흔수 그때는 출근 준비 및 출근하면서 도청뿐만 아니라 청주시에도 전화를 했는데요. 인터넷 홈페이지를 검색하면서……

○이해식 위원 홈페이지 검색해서 봤다 이런 얘기입니까?

○참고인 성흔수 부서를 아무래도 검색을 하다 보니까 상황실까지는 검색을 못 했습니다.

○이해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한울 주무관께 묻겠습니다.

이한울 주무관은 방재안전직이지요?

○증인 이한울 예, 맞습니다.

○이해식 위원 출산을 최근에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얼마 됐습니까, 출산하신 지?

○증인 이한울 3개월 됐습니다.

○이해식 위원 나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한울 주무관은 증인이세요.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여기에서 위증을 하면 매우 엄한 처벌을 받습니다.

○증인 이한울 예.

○이해식 위원 그리고 지금 항고장이 제출이 돼 가지고 고등검찰청에서 다시 수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그렇지요?

○증인 이한울 예.

○이해식 위원 지금 방재안전직이시기 때문에 재난안전관리법이나 이런 건 너무 잘 아시겠네요. 그렇지요?

○증인 이한울 공무원 시험 준비할 때 외웠었습니다.

○이해식 위원 예, 공부도 하시고 그리고 지금……

○위원장 신정훈 잠깐만요.

증인, 마이크를 좀 더 가까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 위원 재난안전업무를 자연재난과에서 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증인 이한울 2021년 7월부터 했습니다.

○이해식 위원 그러면 한 2년 정도가 됐네요, 참사 당시까지 하면. 그렇지요?

○증인 이한울 예.

○이해식 위원 그러면 상황관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아시지요?

○증인 이한울 제가 그 당시 업무분장이 서무였는데 제가 자연재난대책팀이다 보니 팀원들과 계속, 상황관리라고 하면 우선……

○이해식 위원 아니, 지금 220-2454 이것이 자연재난과의 대표전화인데 여름철에는 220-2454이고 겨울철 전화는 또 따로 있고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증인 이한울 예.

○이해식 위원 그래서 여름철 우기의 이런 홍수 관련된 전화는 이한울 주무관이 받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한울 주무관이 통화를 한 건데……

○증인 이한울 제 담당번호는 2457번이었고요. 2454번으로 왔던 걸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으셔서 제가 당겨 받았던 것입니다.

○이해식 위원 당겨 받았습니까?

○증인 이한울 예.

○이해식 위원 그런데 어떻든 방재안전직이고 굉장히 위중한 상황이고, 비상대응 3단계 였잖아요. 직원들이 다 근무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10분 전부터 지사 주재의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4시에는 금강홍수통제소에서 홍수경보가 울려졌고. 그걸 지금 단톡방에서 확인하셨지요? 그렇지요?

○증인 이한울 그것은 추후에 확인했습니다. 바로 확인하지는 못 했습니다.

○이해식 위원 어떻든 그때 상황이라는 건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고 미호강이 범람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게 있었고 보도도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성흔수 주무관한테 전화가 걸려 와 가지고 이것 빨리 통제를 해야 된다 이런 보고를 받았는데 전화로, 그렇지요?

○증인 이한울 제 기억상에 ‘통제’라는 단어를 들은 적은 없습니다.

○이해식 위원 아니, ‘통제’라는 단어가 있든 없든 어떻든 비가 많이 와서 미호강이 범람하고 교통을 차단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여기 성흔수 주무관이 얘기한 것은 인근 제

방 범람의 위험으로 주민대피 및 교통통제가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취지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냥 별일 없이 전화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증인 이한울** 그래서 제가 그때 통화 내용을 기억을 해 봤는데요. 제 기억상으로는 범람 위험이 있어서 청주시하고 경찰청에 연락을 했고 재난문자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해식 위원** 그런데 그것을 이한울 주무관이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그런 목적으로 전화했을 리는 없지 않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한울 주무관한테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한울 주무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서 상부에 보고를 하라라고 하는 취지로 전화를 했을 것이고, 그리고 상황관리라고 하는 것은 정보를 접수를 하고 분석을 하고 전파를 하고 보고를 하고 이 네 단계가 상황관리예요. 우리 주무관께서는 방재안전직이고 그와 관련된 지식도 있고 훈련도 받았을 텐데 지금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증인 이한울** 그 당시에는 알고 있어야 할 것 같다는 말을 그렇게 느끼지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이해식 위원** 알고 있어야 할 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어떤 임무를, 나의 임무를 느끼지 못 했다 그런 말입니까, 그 긴박한 상황에서? 전 직원들이 나와서 비상 3단계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서 그 전화가 왔는데 이한울 주무관 알고만 있으라 하고 일체 다른 사람한테 보고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이한울** 말씀을 하시기를 청주시하고 경찰청에 연락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쪽은 이제 현장을 대응할 수 있는 기관인데 알려줬다고 하니 현장을 대응……

○**이해식 위원** 토클 7분 넘게 얘기를 했어요, 7분 넘게. 아니 8분, 맨 마지막 네 번째 전화까지 하면 8분간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전파하고 보고하고 하는 그런 자기 자신의 임무를 느끼지 못 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증인 이한울** 저 네 번째 전화는, 네 번째 전화가 왔을 때 저는 제 자리에서 2457로 왔던 기자하고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해식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8분간에 걸친 네 차례의 전화를 받고 그리고 알고 있으라라고 하는 취지여서 나 혼자 알고 그냥 끝냈다 그 얘기입니까?

○**증인 이한울** 끝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초동대응기관인 청주시·경찰청에 알려줬다고 해서 거기에서 우선 대응이 되는 줄 알았고 나중에 상황전파메신저나 재난통신망으로 전파가 될 줄 알았던 것입니다.

○**이해식 위원** 그렇게 알았는데 전파를 하거나 보고를 하거나 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한울 주무관이. 그렇지요?

○**증인 이한울** 제가 보고를……

○**이해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훈 이한울 주무관!

○증인 이한울 예.

○위원장 신정훈 지금 말씀 중에 다 답변을 못 하셨는데 일단 네 차례 전화를 받은 것은 사실입니까?

○증인 이한울 아니요. 네 차례 중 세 차례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세 차례?

○증인 이한울 예.

○위원장 신정훈 아까 이야기에는 7분에서 8분 가량의 통화시간을, 통화를 했다는 겁니까?

○증인 이한울 그러니까 세 차례 전화 통화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본인이 기억하는 세 차례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통화내역 기억합니까?

○증인 이한울 구체적으로 세부 내용은 기억이 나지를 않는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우선 범람 위험이 있어서 청주시하고 경찰청에 연락을 했고 재난문자도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알고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위원장 신정훈 그리고 그 이외의 다른 조치는 본인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증인 이한울 초동대응기관에 연락을 하셨다고 해서 대응이 될 줄 알았고……

○위원장 신정훈 본인은 전혀 아무런 조치도 안 했다, 누구에게도 전파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증인 이한울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다음은 양부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흔수 주무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부남 위원 광주 서구을의 양부남 위원입니다.

박영빈 검사장!

○증인 박영빈 예.

○양부남 위원 박 검사장, 내가 다른 곳에서 만나야 되는데 이 증인석에서 만나서 좀 그렇구먼.

○증인 박영빈 아닙니다.

○양부남 위원 그런데 청주검사장으로서 오송지하 사건을 열심히 수사했습니다. 국민들은 검찰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검찰이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가지고 모든 것을 말끔히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게 국민의 마음입니다. 검찰은 나름대로 열심히 수사를 했다 하더라도 국민이 이해를 못 하고 승복을 못 하면 수사를 잘한 것이 아니지요?

○증인 박영빈 예.

○양부남 위원 모든 사람이 이해를 하고 승복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검찰은 법리적 잣대를 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일반 국민이, 관련자들이 수용을 못 하면 이게 잘된 수사가 아니고 여기서 검찰의 애로사항이 있는 겁니다.

내가 오늘 실은 서울고등검사장을 증인으로 신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은 이미 사건을 끝내 버린 청주 검사장이었던 박영빈 검사장에 대한

질의 내용이 아니고 지금 항고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고등검사장을 상대로 질의를 해야 될 내용인데……

○증인 박영빈 위원님, 항고 사건은 대전고검에 있습니다.

○양부남 위원 대전고검, 대전고등에 해야 되는데 오늘 대전고등검사장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질의하는 내용을 박 검사장이 잘 듣고 이것을 대전고등검찰청에 꼭 전달해 주기를 바랍니다.

○증인 박영빈 예, 알겠습니다.

○양부남 위원 내가 오늘 질의하는 것은 김영환 지사를 기소하자, 김영환 지사는 기소를 해야 된다, 내가 그런 결론을 내는 게 아닙니다. 불기소장 이유를 내가 검사 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 입장에서 면밀히 한번 분석을 해 봤어요. 과연 불기소 이유가 적절한지 내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내가 이 불기소 이유에 대해서 부족한 점, 내 의견을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잘 들으시고 꼭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 좀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면)

지금 문제가 된 게 중대재해법 제9조제2항제1호의 해석 문제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중대재해법 제9조제2항제1호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안 하면 처벌받지요? 박 검사장, 그렇지요?

○증인 박영빈 예, 그렇습니다.

○양부남 위원 그래서 김영환 지사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 조항 해석을 이렇게 했어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만들고 그것이 사전에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도 인원도 점검도 하면 된다, 이걸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김영환 지사는 안전보건에 관련한 매뉴얼도 만들고 그 매뉴얼이 잘 돌아가도록 인원도 넣고 예산도 얻고 점검도 했다, 그러니까 이 조항에 나온 의무를 다 이행했다고 해석을 했어요. 그렇지요?

○증인 박영빈 예, 그렇습니다.

○양부남 위원 나는 해석이 좀 다른데, 그렇다면 굳이 법문에 ‘이행에 관한 조치’를 넣을 필요가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방금 이 ‘구축’이라는 의미 속에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라는 의미 속에는 당연히 이 체계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사전에 이러한 인사·예산·점검 등이 필요한 조치라고 보고 그렇다면 이 조항에 ‘이행에 관한 조치’가 필요 없었다, 그래서 이 조문에서 말하는 이행에 관한 조치는 실제로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만들어 낸 관리체계, 구축된 관리체계가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관리해서 실행에 옮기라는 그 의미로 나는 해석이 되는데 박 검사장 생각은 어때요?

○증인 박영빈 중대재해법이 22년 1월에 시행이 됐고 시민재해치사가 적용된 사례가 이 건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지자체장이 피의자로 된 사건도 처음이고요.

본건에 있어서는 지자체장이 평소에 안전보건 의무 확보·이행에 따른 안전체계를 구축하고, 그 이행에 관한 조치라 함은 실제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이행 안 했다고 그러면 그것은 업무상 과실치사가 직접적으로 적용이 된다고 할 것입니

다. 본건에 관한 이행에 관한 조치는 체계를 구축하고 체계가 평상시에 작동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그 경영책임자가 직접 점검하거나……

○양부남 위원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좋아요.

그 생각을 가지고 검찰이 무혐의했는데 내 주장, 내가 한 이론도 고등검사에서 수사할 때는 한번 체크를 해 보세요.

○증인 박영빈 예.

○양부남 위원 지금 첫 사건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증인 박영빈 예, 그렇습니다.

○양부남 위원 이것은 우리가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제가 지금 지적한 것은 문리 해석상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법 정합성의 문제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5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중대시민재해법은 1년 이상의 징역이고 10억 원 이하의 벌금, 굉장히 세겼어요.

○증인 박영빈 예, 그렇습니다.

○양부남 위원 형이 세진 이유는 일반적인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서 요구되는 과실보다 더 수준 높은 주의 의무를 요구한다고 해석이 되고, 수준 높은 주의 의무라는 의미가 방금 내가 해석한 것처럼 실제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점검하고 관리하고 조치해야 될 의무를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나는 해석이 돼요.

답변은 시간이 없으니까 내 말을 참고해서 꼭 고등검사 수사 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입법 취지상의 문제입니다.

이번에 청주지검에서 무혐의했던 논리대로 간다면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지자체장 이걸로 기소될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한 체계만 구축해 놓고 체계가 사전에 실제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떠나서 인사·예산·점검 조치 그것만 해 놓으면 아무도 처벌을 안 받아. 이것은 내가 볼 때 ‘이행에 관한 조치’를 쓸 필요도 없었고 또 입법 취지상으로도 맞지 않다. 지자체장이, 처벌할 사람이 없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은 이러한 문제는 한번 우리가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첫 사건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증인 박영빈 예, 그렇습니다.

○양부남 위원 그래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서 과연 이 조항의 해석이 검찰의 해석이 맞는지 내가 말한 해석이 맞는지는 판단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 할 이야기가 많은데 오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증인 박영빈 고검에서도 그 부분 관련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부남 위원 예, 검토를 해 보세요.

○서범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예, 의사진행발언해 주시지요.

○서범수 위원 이 청문회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본인들의 의사를 표명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표명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수사기관에 관계기관에 본인의 의사를 강요하듯이 질문을 하고 답변을 유도하면 이 청문회의 의의가 없어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딱 이재명 대통령 말대로 직접선출 권력이니까 임명직, 간접선출 권력을 충분히 지휘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자제를 해 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수사기관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내리는 것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광희 위원 지금 수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전 수사본부장이에요.

○서범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제를 좀 해 주십시오 부탁을 드립니다.

○양부남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저 발언 좀.....

○위원장 신정훈 예, 양부남 위원님.

○양부남 위원 서범수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검찰 기관을 지휘할 권한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게 아닙니다. 일반적 사람 입장에서 이 불기소 이유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수사기관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라면 서범수 간사님 말씀이 맞지요. 그렇지만 저는 그런 지휘와 권한이 있지 않고 얼마든지 국정감사장에서, 청문회장에서 이 불기소 이유가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또 저도 법률가이기 때문에 법률가입장에서 봤을 때 뭔가 부족하다, 이것을 재기수사할 때 참고하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수사기관을 지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위원장 신정훈 다음은 정춘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생 위원 조국혁신당 정춘생입니다.

존경하는 양부남 위원님의 법 해석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박영빈 수사본부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대한민국 검찰의 법기술을 정말 잘 활용하셨다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면, 법을 만들고 규칙 만들고 시행령 만들고 하면 모든 책임에서 다 벗어납니까? 이행을 하라고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이행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이행 책임을 묻는 거고요. 분명히 해 주십시오.

김영환 지사님, 지난 9월 10일 기관보고 당시에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에 취약하다는 것 알고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위원의 질의에 ‘침수에 가장 안전한 차도였다’ ‘충청북도에서 가장 짚고 안전한, 침수 경험이 전혀 없는 도로였다’고 답하셨지요?

○증인 김영환 예, 3등급으로.....

○정춘생 위원 속기록, 회의록 6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증인 김영환 예, 같은 생각인데요. 3등급으로 되어 있고 방재 4등급으로 되어 있는 것은 가장 안전한 도로이고 지하차도가 제일 짚은 도로였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

니다.

○정춘생 위원 됐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또 이어서 ‘오송지하차도는 당시에 침수취약지역이 아니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속기록 62쪽에 나와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그런데 이거는 다 거짓말입니다.

PPT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면)

충청북도 공무원들에 대한 청주지검의 공소장 내용입니다. 공소장 내용을 보면 ‘침수 당시 궁평2지하차도 건설 예정 부지 인근이 침수지역에 포함되는 등 궁평2지하차도는 지리적, 환경적으로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에 취약한 시설이다’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또 밑의 부분 보면 ‘도로관리사업소는 2020년경부터 궁평2지하차도를 침수취약 지하차도로 분류하고 이를 관리하여 왔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공소장이 틀린 것입니까?

○증인 김영환 위원님, 이 문제에 관해서 좀 전문가, 우리 뒤에 있는 배석한 안전실장한테 말씀을 좀 들어도 되겠습니까?

○정춘생 위원 저는 자료에 근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PT 봐 주십시오.

○증인 김영환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정춘생 위원 다음 기회에 드릴게요. 시간이 짧아서요.

다음 PPT 봐 주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보고서입니다.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가 발간한 2023년도 보고서입니다. 보셨어요?

○증인 김영환 지금 멀리 있어서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봤을 것 같습니다.

○정춘생 위원 참사 전의 보고서입니다, 도로관리과가 하는.

여기에 붙임 자료가 있습니다. 붙임 자료 2 보면 침수우려 취약도로 분류 해 가지고 침수우려 취약도로 지정 현황, 여기 오송읍 궁평리 궁평2지하차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서에 있는데도 침수 취약지역이 아니다, 예전부터 하나도 사고가 없었다, 안전지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지사님?

○증인 김영환 이 도로, 궁평제2차도가 2019년도에 완공을 해서 우리한테 위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차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오송·오창·옥산 지역은 침수가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비가 잘 빠지지 않아서.

○정춘생 위원 아니요. 지사님, 제 질의의 본질을 흐리지 마시고요.

○증인 김영환 그리고 침수 위험지역으로……

○정춘생 위원 이거는 사고 발생 전 따끈따끈한 보고서란 말입니다. 여기에 침수 취약도로라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증인 김영환 그러니까 그 담당자의 말씀을 좀 들어보면 되겠습니까? 제가 자꾸 제……

○정춘생 위원 그러면 관리했어야지요, 관리를. 저는 관리 책임을 묻는 겁니다, 관리 책

임을.

○증인 김영환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그 담당자의 말씀을 좀 한 번 들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정춘생 위원 시간이 취약해서 제가 더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사님의 위증을 묻고 싶은 겁니다.

기관보고 때 참사 당일 궁평2지하차도 모습을 CCTV로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다고 했지요?

○증인 김영환 거기에 대해서……

○정춘생 위원 속기록 66쪽 나와 있습니다.

○증인 김영환 예, 거기에 대해서 오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정춘생 위원 오해가 아니고 그렇게 하셨어요, 속기록 66쪽에.

○증인 김영환 아니, 사고 당일 날 충청북도 전역이 집중호우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그 CCTV를 보고 있을 지방자치단체장이 누가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정춘생 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66쪽 보면……

○증인 김영환 아니, 그거는……

○정춘생 위원 제 말씀 들으세요. 통제를 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순간에 우리는 CC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물은 1mm도 차지 않았다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66쪽에 나와 있습니다.

○증인 김영환 제가 봤다는 것이 아니라……

○정춘생 위원 위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증인 김영환 그리고 저한테 말씀을 할 기회를 주셔야지……

○정춘생 위원 분명히 참사 당시 CCTV로 보고 있었다고 했는데 우리가 행안위에서 현장조사 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상황실을 봤더니 CCTV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분명 이게 거짓이 들통날 것 분명히 알면서도 기관보고 때 위증을 하신 겁니다, 지사께서. 인정하십니까?

○증인 김영환 전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정춘생 위원 거짓말하셨잖아요.

○증인 김영환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날 그 순간에 본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CCTV를 어떻게 해서 사고가 일어났는지를 보니까……

○정춘생 위원 그런 식으로 말을 그때그때 피해 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증인 김영환 그때 상황이 1mm도……

○정춘생 위원 속기록이 증명하는 거니까요 한 번 더 확인해 보십시오, 지사님께서.

○증인 김영환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정춘생 위원 동의하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사님은 이 자리에 증인으로 나오신 거예요. 증인으로 나오신 거라고 분명히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시고요. 거짓이 없는 사실만을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증인 김영환 (고개를 끄덕임)

○정춘생 위원 거짓말을 계속하고 말을 바꾸는 것 전부 위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증언감정법은 14조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요. ‘허위의 진술을 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기시켜 드립니다.

저는 지사님께 두 개의 법적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입니다. 참사 당시 행복청 공무원이 미호천교 범람 위험을 경고하기 위해서 충청북도 자연재난과에 여러 차례 전화를 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았고 결국 참사를 막지 못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참사를 막으라고 있는 것이고 재발 방지를 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충북도지사가 말단 공무원들,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하급 공무원들에게만 책임 전가하고 가장 최고책임자인 충북도지사가 책임을 면한다면 이 법의 취지가 없습니다.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건을 제대로 처리해야 된다고 보고요.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에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에 10조에 처벌 근거조항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김영환 지사를 불기소 처분한 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책임을 다하지 않아도 된다는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며 재난대응시스템의 기본적 문제를 방치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사 당시에 도지사는 무엇을 했고 어떤 안전조치를 했는지 그것을 따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위증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위원장님, 시간 다했지만 한 30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정리하시지요. 다음에 추가질문하시지요.

○정춘생 위원 기관보고에서 명백하게 위증을 했기 때문에 행안위 차원에서 저는 김영환 지사를 위증죄로 고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김영환 도지사님, 증인,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중복해서 질문하고 있으니까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사실 표현이 직접 본 것처럼 증언하셨다가 그 이후에는 뒤에 있는 실무자들이 관리하고 있었다, 저는 직접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증인 김영환 그 말씀이 아니고 그 저녁이 그런 재난상황이어서 저는 괴산으로 갔고 현장에 간 것은 그날 오후 1시 반, 4시간 늦게 갔지 않습니까?

○위원장 신정훈 아니, 제가 지금 묻는 이야기는 궁평.....

○증인 김영환 그 당시에는 그거를 볼 여유가 없었고요. 그러니까 그 뒤에.....

○위원장 신정훈 잠깐만요.

본인이 보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그 답변을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답변의 그 후속 답변, 내가 사실은 그때 본 것같이 표현했지만 실제로 보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추후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실무자들이 이 상황을 관리하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때……

○**박덕흠 위원** 위원장님, 자꾸 위원님들 질의 끝난 다음에 질의를 하시면 안 되고 마지막에 가서 정리를 해 주시면 되지……

○**위원장 신정훈** 제가 확인할게요. 조금만 확인할게요.

○**박덕흠 위원** 계속적으로 시간을 이렇게 소비하면 안 되잖아요.

○**위원장 신정훈** 아니, 똑같은 질문이 반복되는데……

○**박덕흠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정리를 하셔야지……

○**위원장 신정훈** 오해스러운 이야기가 계속 있어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 관리자가 하고 있기 때문에 뒤에 있는 누구한테 좀 답변을 받아 보라 이야기하면서, 뒤에 있는 누가 그 CCTV를 보고 있었습니까?

○**증인 김영환** 도로관리사업소장이나 그 실무자에게 말씀……

○**위원장 신정훈** 사업소장 나와 보세요. 도로관리사업소장 나와 보세요.

당시에 1cm도 차지 않았다 내지는 실시간 보고 관리가 되고 있었다, 그런데 소위 말해서 갑작스런 범람에 의해서 7분 이내에 침수가 돼 버렸기 때문에 조치를 못 했다 이런 이야기가 요지입니다.

현장에서 직접 보고 있었습니까?

○**증인 이석식** 저는 제 사무실에 있었고요. 도로관리과 사무실에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실제로 봐서 그 침수된 사실을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증인 이석식** 제가 직접 본 거는 아니고요. 직원들이 여섯 명이 근무하면서 CCTV를 보고 저희들이 현장에 출동을 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실무자들이 보고 있었다, 여섯 명이 보고 있었다 이거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증인 이석식** 정확하게는 여섯 명이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그리고 저희들이 CCTV, 방재센터를 이렇게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사무실에 50인치……

○**위원장 신정훈** 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실시간 보고 있었다 이게 사실인지, 추후에 CCTV를 돌려 본 것이다……

○**증인 이석식**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침수된 것을 8시 40분경에 발견하고 출동을 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현일 위원** 영등포구갑 국회의원 채현일입니다.

이번 국정조사의 핵심 쟁점은 검찰의 김영환 지사의 불기소 처분입니다. 김영환 지사가 오송참사의 총괄 책임자이고 부실 대응의 핵심 인물임에도 검찰은 이해할 수 없는 불기소, 면죄부 결정했습니다. 국민 어느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현 충북 부지사이자 당시 대통령 민정비서관이었던 이동옥 부지사

와 관련된 제보를 접하면서 그동안 제기되었던 많은 의문들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동옥 부지사님, 잠깐 앞으로 와 주십시오, 증인.

지금 부지사님은 제보에 의하면 고향인 충북 제천에서 시장 출마를 위해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도움으로 대통령실 민정비서관 경력을 만들었고, 민정비서관으로 있는 동안에 검찰의 오송참사 수사에서 김영환 지사가 무혐의 받도록 도움을 줬고 그래서 원래 다른 사람이 충북 부지사로 내정돼 있던 것을 뒤집고 12·3 내란 이후에 대통령실을 탈출할 수 있었다라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부지사님!

○증인 이동옥 예.

○채현일 위원 행안부 소속 공무원이셨지요?

○증인 이동옥 맞습니다.

○채현일 위원 대변인이었지요?

○증인 이동옥 예, 맞습니다.

○채현일 위원 행안부 최초 실장급 대변인이었지요?

○증인 이동옥 예, 그렇습니다.

○채현일 위원 행안부 소속 공무원이 대통령실 민정비서관 간 것이 역대 처음이라 하더라고요, 최초라 하더라고요?

○증인 이동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채현일 위원 맞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이 상당히 부지사님을 높게 평가하고 신뢰를 했다는데 맞나요?

○증인 이동옥 뭐, 제가 장관님이 아니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안부……

○채현일 위원 이상민 전 장관의 강력한 추천으로 대통령실 민정비서관, 그게 아마 수석비서관실이 없어졌다가 다시 최초로, 윤석열 대통령 재임 당시에 최초로 생겼다가 첫 민정비서관이자 마지막 민정비서관. 맞지요?

○증인 이동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현일 위원 민정비서관이 어떤 업무를 하나요?

○증인 이동옥 일반적으로 역대 정부에서 보면 민정비서관은 정책 현장 민심 청취 그 다음에 친인척 관리, 또 특별감찰업무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반부패업무도 같이 민정비서관실에서 했던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현일 위원 맞습니다.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을 재설치하면서 민심 청취 기능이 부족하다 그런 얘기 있었고.

민정비서관은 어떤 업무냐 하면 공직자 비위 감찰, 검찰·경찰 등 사정기관과 잘 조율해 가지고 수사·감찰 상황도 대통령실에 직보하는 자리입니다. 아마 이동옥 부지사님은 민정비서관 당시에 민심 청취를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또 역할을 했을 텐데요.

그런데 작년의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 동안 재직했는데 그 당시에 충북에서는 가장 큰 현안이 뭐였나요?

○증인 이동옥 제가 사실은 그……

○채현일 위원 오송참사였지요? 그 당시 수사 기간하고 겹치지요?

○증인 이동옥 제가 지역 현안이라든지 또는, 위원님 좀 말씀드리면 저는 수사라든지

이런 역대 정부에서 했던 일반적인 민정비서관 업무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채현일 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문할 때 하나씩 답변하세요.

○**증인 이동옥** 예.

○**채현일 위원** 부지사님이 민심 청취를 위해 지자체 의견 같은 거 수렴하는 업무를 맡았지요?

○**증인 이동옥** 예.

○**채현일 위원** 충북 같은 건 어떤 지자체 여론이나 의견을 수렴했나요? 어떤 분들을 만나고 그렇게 했나요?

○**증인 이동옥** 제가 지자체분들을 직접 나가서 만난 적은 잘 없었고 다만 대개 지자체에서는 지역 현안 관련된 것들을 많이……

○**채현일 위원** 충북도에 간 적 있어요, 민정비서관 당시에?

○**증인 이동옥** 그런 적 없습니다.

○**채현일 위원** 민정비서관 당시에?

○**증인 이동옥** 없습니다.

○**채현일 위원** 김영환 지사를 직접 만나거나 전화 통화한 적 있나요?

○**증인 이동옥** 민정비서관 당시에 김영환 지사를 제 기억에 만난 적이 없습니다.

○**채현일 위원** 통화한 적도 없어요?

○**증인 이동옥** 통화는 아마 한두 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통화는 가끔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채현일 위원** 어떤 통화를 했나요?

○**증인 이동옥** 제가 지금 제일 기억에 남는 통화는 대청댐 상류에 거기, 제가 그게 왜 기억이 남냐면 대청댐 상류에 출렁다리 만드는 거랑 그다음에 저도 사실은 처음 들었는데 전기 배 만드는 일……

○**채현일 위원** 알겠습니다.

오송참사 관련해 가지고 검찰 수사 상황이나 과정 이런 거에 대해 논의한 적은 없어요?

○**증인 이동옥**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제 기억에.

○**채현일 위원** 전혀 없어요?

○**증인 이동옥** 예.

○**채현일 위원** 아까 말한 박영빈 전 검사장하고 통화한 적 있습니까?

○**증인 이동옥** 그런 적 없습니다.

○**채현일 위원** 김영환 지사가 불기소될 당시에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오송참사 관련해 가지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민정수석실에 지시를 내리거나 보고를 한 적 있어요?

○**증인 이동옥** 저는 전혀 그런 보고를 드린 적이 없고요. 그다음에 보고를 내렸는지도, 제가 그런 지시를 받아 본 적도 없습니다.

○**채현일 위원** 이것 지금 위증을 하면, 이것은 검찰 수사 항고가 돼서 다시 하면 아마 가서 설명하실 입장이 될 수 있어요. 이것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저도 제보를 받고 나서 말하는 거예요.

○**증인 이동옥** 위원님, 제가 조금만 설명말씀 드리면……

○**채현일 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증인 이동옥** 예.

제가 처음에 민정비서관을 갔을 때 이미 공직기강비서관실이라든지 법률비서관실이라든지 다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채현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그 당시 계엄 있고 나서 셧다운 상태였잖아요?

○**증인 이동옥** 예.

○**채현일 위원** 그 당시에 내정자가 있었어요, 김광용 당시 행안부 대변인. 그분이 2024년 12월 말에 충청일보에 보도가 나옵니다. 내정이 됐지요. 내정이 됐는데, 3개월 만에 갑자기 지금 부지사님으로 바뀌었어요.

그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김영환 지사가 불기소됩니다. 그래서 지역 정가에서는 이동옥 부지사, 당시 민정비서관이 역할을 했다. 그리고 지금 현 지사님이 본인은 불기소처분을 받을 거라고 온 동네에 이렇게 말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기소됐다는 정보를 이동옥 당시 민정비서관으로부터 들었다라고 저희한테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것에 대해서 지역 정가에서는 불기소 사건 처리에 대해서 보은인사다 그리고 부지사로 온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해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증인 이동옥** 우선 부지사 인사는 행정안전부와 그다음에 시도가 협의해서 인사 검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가 이렇게 되고 있어서……

○**채현일 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도지사가 제청을 하면 30일 이내에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3월 7일 날 임명이 됐지요?

○**증인 이동옥** 예, 3월 7일……

○**채현일 위원** 그러면 한 달 전이면 김영환 지사가 2월 달에 김 부지사를 제청한 거고 1월 초에 불기소가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이동옥** 제 생각에는 아마 작년에, 제 전임 행정부지사가 이미 12월 말에 명예퇴직을 하겠다라고 널리 알려져서 후임자를 물색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후보자가 정해지면 내부적으로 인사 검증이라든지 이런 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나서 제청을 하는데……

○**채현일 위원** 추가적인 부분은 제가 추가질의 때 상세하게 몇 가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증인 이동옥** 예, 그렇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다음은 서범수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서범수 위원** 이동옥 부지사님.

○**증인 이동옥** 예.

○**서범수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발언대도 저쪽에, 양쪽에 하나씩 설치해 주세요. 이게 지금 야당 탄압하는 것도 아니고…… 목이 아파 죽겠다, 지금.

○**위원장 신정훈** 예, 가능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서법수 위원**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음모론을 펴는데요. 한덕수와 조희대 대법원장 회동설과 같이 그냥 제보만 받았고, 다른 팩트 확인 없이 그냥 제보받았다는 이야기만으로 공식적인 국회 석상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 지금 이동옥 부지사께서는 민정비서관을 하면서 오송참사 관련 수사를 컨트롤하고 난 뒤에 거기에 따라서 보은으로 충북 부지사를 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겠지요, 부지사님?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지요, 지금?

○**증인 이동옥** 제가 답변드릴 위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서법수 위원** 자, 그러면 지금 민정비서관이라고는 하나 이동옥 부지사께서는 행안부에서 파견된 분이겠지요. 그렇지요?

○**증인 이동옥** 예.

○**서법수 위원** 아까 부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기존의 민정비서관이 하던 역할과 달리 다른 역할들을 많이 했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민정비서관 할 때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와 관련해서 컨트롤을 했거나 다른 지침을 줬거나 한 적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증인 이동옥** 전혀 없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 올리면, 특히 저희 민정비서관실에는 검찰이나 경찰, 국정원 같은 종래의 민정비서관실에 이렇게 파견을 나왔던 분들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일반 공무원들만 저랑 같이 일을 했습니다.

○**서법수 위원** 고향이 어디시지요?

○**증인 이동옥** 저는 충북 제천입니다.

○**서법수 위원** 그러면 제천 출신이 행안부 대변인 하다가 시간이 맞았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부지사를 가셨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증인 이동옥** 예.

○**서법수 위원** 본인이 보기에는…… 부지사를 원했습니까, 본인이? 예를 들면 ‘충북에 가야 되겠다’, 저 같으면 ‘내 태어난 고향 충북에 가고 싶다’ 하겠는데요.

○**증인 이동옥** 행정안전부 공무원들 고참 국장이 되거나 아니면 초임 실장이 되면 다들 고향 부지사후보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2022년도부터 제가 우리 고향에서 부지사 후보로 언론에 여러 번 오르내린 바가 있습니다.

○**서법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지사님, 9월 1일부터 유가족지원단 만들어서 행안부 쪽에서 열심히 지원을 하는데 처음에 이 참사가 났을 때 지원 주체는 충북입니까, 청주입니까? 어떻습니까?

○**증인 김영환** 그것은 가릴 것이 없다고 생각을 했고 청주시도 노력을 했고 저희는 유가족들, 조문단까지 포함해서……

○**서법수 위원** 청주시장님 저기 앉아 계시는데 청주시는 별로 노력한 게 없던데요. 재정·심리 지원 모두 충북도에서 중심이 됐고 그리고 그때 기관보고 할 때 유가족 세 번 정도 만나셨다고 그러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지사님?

○**증인 김영환** 저는 세 번 만났습니다.

○**서법수 위원** 충분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증인 김영환** 아니, 그분들이 원할 때는 언제든지 만날 생각이었는데 우선 매달 장소

를 제공하고 우리 대표가 그분들을 만났기 때문에 제가 직접 만난 것은 세 번이었습니다.

○서법수 위원 알겠습니다.

지난 현장조사 당시에 유가족 간담회도 있었거든요. 그때 지사님은 안 계셨는데 간담회 내용 보고받으셨습니까?

○증인 김영환 못 받았습니다.

○서법수 위원 왜 그런 것을 안 받으세요? 아니, 그것 못 받았다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면 됩니까?

○증인 김영환 대략적인 말씀은 들었는지 몰라도 자세하게 이런 말씀은 못 들었습니다.

○서법수 위원 아이고야, 이거는 아니잖아요. 지사님 같으면 그 자리에서, 국회에서 내려와서 유가족을 만났으면 유가족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는 게 안 맞습니까?

○증인 김영환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청주시하고 관계도 있고 개략적인 말씀은 들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듣진 않았습니다.

○서법수 위원 그러면 유가족분들께서 제일 요구하시는 게 뭐디까?

○증인 김영환 제가 그날 말씀이 아니라 추모비 건립 문제와 그리고 그분들의 심리치료 문제와 또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서법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러니까 지금 자꾸 유가족들이 충북도나 청주시를 적대시하는 겁니다. 그때 유가족들은 뭐였냐면 담당 공무원들이 처음에 한두 번 장례식장이나 화장터만 왔지 유가족을 방치했다, 사실은 전담팀이 아니고 감시팀 역할을 하더라는 식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충북도지사님이나 청주시장님께서는 최대한 유가족을 위해서 배려를 하고 뭔가를 잘 캐어를 했다라고 하시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그때 대충이라도 말씀을 들으셨다 하니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도지사님이 지금이라도 당장 해 주셔야 될 게 어떤 게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증인 김영환 우선 제가 크게 결정한 것은 추모비를 건립해야 되겠다 그리고 도에다 건립해 드리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도에서 이게 브레이크가 걸려 있습니다, 예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어떻든 제가 꼭 해결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요.

○서법수 위원 또 하나는?

○증인 김영환 또 하나는 이분들께서 심리치료를 받는데 의사들뿐만 아니라 심리상담사가 필요하다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지원하는 문제……

○서법수 위원 알겠습니다.

재난심리치료비 지원과 관련해서 예산 배정된 것에 대해서 실제 집행률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증인 김영환 지금 제가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서법수 위원 반도 안 돼요. 반의반도 안 돼요, 이게.

○증인 김영환 충분히 공급할 용의가 있고 또……

○서법수 위원 아니 충분히 공급할 용의가 있는데, 충분히 공급했다고 하실까는 모르지만 안 가신다고요, 유가족분들께서.

○증인 김영환 그 말씀을…… 제가 의사인데, 정신과 의사를 배정했는데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심리상담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듣고 그런 것에 더 보완을 해서 배려하겠다고 약속을 한 바가 있는데 그런 것을……

○서법수 위원 지금 하십니까?

○증인 김영환 지금 우리가 그것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법수 위원 왜 그러세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 하나하나씩을 좀 빨리빨리 조치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잖아요, 지금.

○증인 김영환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서법수 위원 청주시장님, 한 번 만나셨지요?

○증인 이범석 예.

○서법수 위원 그 이후 면담 요청이 없었다고 한 번밖에 안 만나셨다면서요?

○증인 이범석 예, 일단 도가 사고 지점의 수습기관이라서 도가 만나고 있을 때는 저희들이 필요한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법수 위원 아니, 그래도 기초자치장 되면…… 그래도 우리 지역민이잖아요. 좀 자주 만나면서 뭐가 필요한지, 도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고 시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왜 그것을 안 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청주시에서 지금 당장 해 주셔야 될 부분이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증인 이범석 심리치료비는 도에서 50% 부담하고 저희 시에서 50% 부담해서 원하는데까지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법수 위원 또 자꾸 심리치료비 예산을 하시는데요. 치료비만 예산이 책정됐다고 해서 유가족들이 가시는 게 아니잖아요, 유가족들이 원하는 심리치료를 공급해 주셔야지.

지사님 그리고 시장님, 제발 이 부분만이라도 좀 빨리빨리 조치를 해 주세요.

○증인 김영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법수 위원 시장님.

○증인 이범석 .....

○서법수 위원 시장님!

○증인 이범석 예, 그렇게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청주시장님, 답변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증인 이범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지금 이 자리가 그렇게 그냥 눈 깜빡깜빡하고 있을 자리가 아니잖아요.

이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잠깐만요.

이한울 주무관님하고 박준규 실장님하고 홍명기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고, 박영빈 검사장님도 앞으로…… 같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울 주무관께서 발언대에 서 주시고 검사장님 여기 앉아 주십시오.

청주시 흥덕구의 이연희 위원입니다.

먼저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 청문회가 더 안전한 대한민국, 생명을 더 존중하는 그런 사회로 나아가는 역사적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한울 주무관님, 2023년 7월 15일 참사 전까지 충북도에서 일곱 차례의 재난대응훈련이 있었고 두 차례는 자연재난과 주관으로 진행된 것으로 충북도에서 제출한 자료는 그렇게 확인이 됩니다. 주무관님도 이런 일곱 차례 대응 훈련할 때 교육을 받으셨지요?

○증인 이한울 훈련에서는 업무분장대로……

○이연희 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받으셨지요?

○증인 이한울 교육이라기보다는 훈련을 했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니까 훈련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본인은 방재안전직이시지요? 그래서 평소에 재난방재와 관련한 전문적 지식을 갖고 계신 거지요? 그리고 그에 따른 훈련을 받으신 거잖아요. 훈련받으신 것은 맞지요?

○증인 이한울 예, 시나리오 훈련은 받았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재난 대응과 관련해서, 특히 훈련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재난 상황에서는 신고를 받으면 신고 보고를 하고 전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매뉴얼상의 가장 1번 수칙이 보고와 전파입니다.

그런데 충북도에서 작성한 매뉴얼만 보더라도 신고를 받게 되면 그리고 다른 유관기관으로부터 신고를 받게 되면 접수 시간, 접수자, 신고 내용 이런 것들을 육하원칙에 작성하도록 매뉴얼상에 돼 있고 관련한 서식도 있어요. 관련해서 당일 날 성흔수 주무관의 네 차례의 전화를 받으셨는데 이것을 기록했습니까?

○증인 이한울 우선 신고라고 하셨는데 저는 조치일지……

○이연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화를 했는데 그 전화 기록을…… 그 응대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매뉴얼상에는 적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자체에서는 통화 녹음까지 다 합니다. 그런데 적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기록을 했느냐고.

○증인 이한울 매뉴얼상에 보고서를 작성해야 된다는 것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 알게 된 사실입니다.

○이연희 위원 아니, 훈련을 받으셨다면서요.

○증인 이한울 훈련을 받을 때……

○이연희 위원 그리고 지금 본인이 방재안전직 아니에요?

○증인 이한울 훈련을 받을 때 따로 보고서를 작성해야 된다는 것을 교육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이연희 위원 실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도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일곱 차례나 걸쳐서 재난대응훈련을 했고 재난안전과 주관으로 두 차례나 했어요. 그것 훈련하신 것 맞잖아요?

○증인 박준규 예, 맞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훈련을 할 때 당연히 상황보고 관련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보고하고 전파한다 이런 것 다 하잖아요. 안 해요?

○증인 박준규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한 것 맞지요?

○증인 박준규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교육훈련한 것 맞잖아요.

이한울 주무관님, 말씀 들으셨지요? 전반적으로 다 교육하고 훈련한다잖아요.

○증인 이한울 그런데 그 당시 훈련을 했을 때 저는 주로, 훈련의 타임라인을 작성해서 그것에 대해 발표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저는 주로 회의장 준비나 세팅 그리고 참석자 명단을 관리하였었습니다. 아까 보고서를 작성했어야 했다고 했는데 그것에……

○이연희 위원 그러면 도지사 주재 당일 날 재난대응대책회의 그 회의록도 작성하셨어요? 참석자하고 이런 것 다 기록하셨어요?

○증인 이한울 회의록을 제가 작성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연희 위원 지금 방금 회의록을 작성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일지를?

○증인 이한울 아니요, 회의장 준비……

○이연희 위원 참석자, 누가 참석했는지?

○증인 이한울 회의장 준비와 참석자 명단 정도로 준비를 했었던 것입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성흔수 주무관이 이한울 주무관한테 긴박하게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증인 이한울 저는 그때 조치 요청이나 피해 신고로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범람 위험이 있고 그래서 청주시하고 경찰청에 이미 연락을 했고 재난문자도 요청했다는 공유 차원의 내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연희 위원 마지막 전화는 ‘제방이 터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도 알고 나 있어라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게 방재·재난 전문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해야 될 그런 태도예요?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 특히 방재 공무원은 주의의무가 있잖아요, 공무원의?

○증인 이한울 저는 네 번째 전화를 받지 않았고요, 그 당시에 저는 기자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연희 위원 아니, 제방이 터졌다라고 하는 부분을 연결해서 전화를 받았다면서요?

○증인 이한울 아니요, 저는 그때 당시에 기자님과 통화를 해서 팀장님 인터뷰가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이연희 위원 알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검사장님, 재난안전실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충북도에서 참사가 일어나기 전 일곱 차례에 걸쳐서 교육훈련을 했다, 전반적으로 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증인 박영빈 예.

○이연희 위원 그런데 왜 가장 중요하게, 중대한 신고 전화가 왔는데 그것을 접수한 이한울 주무관은 기소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보고를 안 받은 재난실장하고 과장은 또 기소를 했어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증인 박영빈 상황관리라는 게 있고 재난안전실장은 실무 총책임자고 과장도 실무자들을 관리할 책임자입니다.

○이연희 위원 잠깐만요. 지금 재난실장님이 말씀하잖아요. 일곱 차례에 걸쳐서 재난대

응훈련을 전반적으로 다 했다, 교육훈련을 다 했다 얘기하셨잖아요?

○**증인 박영빈** 예.

○**이연희 위원** 그런데 공소장을 보면 재난안전실장에 대해서 이한울 주무관을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교육을 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하셨잖아요?

○**증인 박영빈** 그것도 주의의무 위반의 하나고……

○**이연희 위원** 그런데 지금 재난안전실장은 교육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뭘 도대체 수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게 신고를 받은 접수자가 보고·전파를 안 했는데 그 사람은 기소를 왜 안 한 거지요?

○**증인 박영빈** 지금 그 부분은, 이한울 주무관 같은 경우는 같은 과의 실장·과장·팀장을 같이 기소해서 지위 최하급자를……

○**이연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소를 했는데 기소한 이유 중의 하나가 교육을 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했는데 지금 증언하잖아요, 전반적으로 교육훈련 다 했다고. 그리고 본인도 교육훈련 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증인 박영빈** 재난안전실장하고 과장을 기소한 것은 교육뿐만 아니라 상황관리 전반에 걸쳐서 기소한 겁니다.

○**이연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고 물론 있는데 지금 그중의 사유 하나가 교육을 시키지 않았다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교육의무를 시키지 않았다는 그런 걸로 해서 기소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증언하시잖아요. 전반적으로 교육훈련 했고 본인도 훈련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증인 박영빈** 평상시의 교육은 이행과 관련해서 한 것이고요. 그 당시 재난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접수가 되면 어떻게 하라고 구체적인 지시가 누락됐다는 겁니다.

○**이연희 위원** 아니, 일곱 차례나 훈련을 했으면 그런 것을 다 전반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겸찰 공소장에 교육을 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를 하냐고요. 그리고 접수 신고를 받은 사람이 보고·전파를 안 했는데 그 사람은 또 어떻게 기소를 안 하냐고요. 이게 무슨 수사입니까?

○**증인 박영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은 평상시의 교육하고 훈련을 말하는 거고 당시 상황에서는 재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신고 전화가 들어올 것을 충분히 다 예견할 수 있고 그 부분에서 체계를 다시 한번 교육을 시키고 접수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교육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연희 위원** 아니, 훈련이 구체적인 상황을 가정해서 실전처럼 하지 그러면 훈련 따로 실전 따로 합니까?

○**증인 박영빈** 그러니까 이번 체계의 문제점은 평상시에는 교육도 하고 훈련도 하고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재난 상황에서 그 이행이 제대로 준수 안 된 게 이번 가장 큰 원인이고, 방금 진술했다시피 여기서도 교육을 받고 체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작동이 돼야 할 상황에서 작동이 안 된 겁니다.

○**이연희 위원** 아니, 훈련받았는데 그것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는데 기소를 안 한다 그게 말이 됩니까?

다음 질문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이한울 주무관, 지금 방재안전직이라고 하는 게 충북도에 몇 분이나 계세요?

○**증인 이한울**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여서일곱 명쯤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방재안전직의 직무는 어떤 것으로 한정돼요? 어떤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방재안전직입니까?

○**증인 이한울**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재난안전실에서 주로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한 번만 더 물겠습니다.

알고 있더라도 이렇게 지금 이야기했는데 알고 있더라 하면서 성흔수 주무관이 본인한테 이야기한 내용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증인 이한울** 전화가……

○**위원장 신정훈** 어떤 것을 알고나 있더라, 소위 말해서 청주시나 경찰에 다 알렸다는 사실은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내용을 알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증인 이한울** 그러니까 범람 위험이 있어서 청주시하고 경찰청에 연락을 했고 재난문자도 요청을 했다고 했습니다. 알고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그 알고 있으라는 말씀이 청주시하고 경찰청에 알렸다는……

○**위원장 신정훈** 무슨 내용을 알렸다고 해요?

○**증인 이한울** 그 당시 잘 들리지는 않았지만 범람 위험까지만 들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지금 증인은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은폐하거나 왜곡하고 있어요.

○**권칠승 위원** 그것 일부로 숨기지 말아요, 지금 다 드러났는데.

○**위원장 신정훈** 그렇게 답변하면 안 돼요.

○**증인 이한울** 왜곡하려거나 은폐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권칠승 위원** 그럴 이유가 엄청 많아요.

○**위원장 신정훈** 다시 들어가 앉아 주세요.

○**권칠승 위원** 잘못하면 큰일 나요, 지금 증인. 사실을 이야기해야 본인의 책임을 면할 수가 있어요.

○**증인 이한울**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권칠승 위원** 큰일 난다니까요, 사실대로 이야기 안 하면.

○**위원장 신정훈** 상식적으로 어울리지 않아요, 논리적으로도 어울리지 않아요.

○**권칠승 위원** 저게 사실이면 검찰들 다 난장판이에요.

○**위원장 신정훈** 자, 진행하겠습니다.

하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를 본인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물었던 거예요.

주호영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들어가 앉아 주세요.

○**주호영 위원** 저는 박영빈 전 청주검사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앉아 주세요.

이 사건 당시에 청주지검장을 하면서 수사본부장을 맡아 있었지요?

○**증인 박영빈** 예, 2024년 5월 16일……

○**주호영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맞다, 아니다’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증인 박영빈** 예, 그렇습니다.

○**주호영 위원** 지금은 인사발령으로 인천지검장으로 근무하고 있지요?

○**증인 박영빈** 예, 그렇습니다.

○**주호영 위원** 떠났지만 이 사건이 늘 언론에도 문제가 되고 국정조사까지 되고 있으니까 이 사건들을 모니터하고 있었지요?

○**증인 박영빈** 예, 그렇습니다.

○**주호영 위원** 그런데 통상 사건이 나면 검사장은 최종 결재를 하는데 수많은 사건들이 오니까 일일이 다 정확하게 자세히 파악은 못 하지만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나 인명피해가 많은 사건은 직접 관찰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수사본부장으로서 수사를 맡았었지요?

○**증인 박영빈** 예, 그렇습니다.

○**주호영 위원** 그리고 이 사건 주임검사도 사건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부장검사가 맡았었지요?

○**증인 박영빈** 예, 그렇습니다.

○**주호영 위원** 부작위에 의한 과실로 형사책임을 물으려면 이론상으로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을 주로 보지요?

○**증인 박영빈** 예.

○**주호영 위원** 그런 일을 일어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는가, 그다음에 노력하면 피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보는 거지요?

○**증인 박영빈** 예, 그렇습니다.

○**주호영 위원** 그래서 기소할 것인지 무혐의할 것인지도 그런 기준에 따라서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결론을 내기가 쉽지는 않지요?

○**증인 박영빈** 중대시민재해의 치사가 적용된 첫 사례가 법리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주호영 위원** 법리 검토를 많이 했다 함은 유사한 사례나 이런 사건들, 판례나 이런 것을 많이 검토했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증인 박영빈** 예, 그렇습니다.

○**주호영 위원** 불기소 이유를 보니까 그런 내용들로서 요지는 이 사건은 제방 둑이 터져서 생긴 것인데 지하도 자체에는 안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인원 배치라든지 그다음에 또 예산을 확보해서 소위 자동진입차단장치를 두려고 노력했던 그런 점에 비추어서 충북도 지사는 책임을 묻기 어렵다 그런 식으로 결론을 냈던 거지요?

○**증인 박영빈** 평상시의 안전 확보 의무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해서 훈련 등 이행을 했다는 취지입니다.

○**주호영 위원** 그래서 무혐의를 했던 것인데 항고가 돼서 고검에서 지금 다시 재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증인 박영빈 예, 상황을 놓친 부분은 없는지, 공판 과정에서 새로 드러난 사실은 없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호영 위원 그래서 이 사건 수사는 최소한 피의자 김영환에 대해서는 종결된 것이 아니지요?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한 재기를 할 수도 있고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면 기소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증인 박영빈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주호영 위원 그런데 최종 결론을 내릴 때 상황하고 지금 이후에 밝혀진 여러 상황이나 국정조사를 통해서 드러난 사항 중에 수사 당시에 예견하지 못했던 상황이라든지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것이 있습니까?

○증인 박영빈 그 부분은 고검에서 상황을 다 감안해서 검토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호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파악하거나 이런 것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도 나오셨고 여러 증인들도 나왔는데 우리가 수사 결론을 낼 때 미처 챙기지 못했던 것들이다, 새로운 사실이 발견됐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증인 박영빈 지금 관련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상황에 있어서 재판을 공소 유지하면서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주호영 위원 아니, 관련 사건은 지금 소위 피의자 김영환에 대해서는 재판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증인 박영빈 관련 충북도라든가 청주시라든가 건설청이라든가 지금 시공사에 대한 재판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호영 위원 그러면 법원의 사실 확정을 지켜보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다 이런 것이지요?

○증인 박영빈 예, 그 부분도 감안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위원 그런데 소위 과실에서 예견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은 추상적인 의무 위반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의무를 위반해야 가능하다고 돼 있지요?

○증인 박영빈 예, 그렇습니다.

○주호영 위원 만약에 추상적인 의무 위반까지 포함하면 충북도뿐만 아니라 중앙재해 대책본부장인 행안부장관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총리, 대통령까지도 모두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예방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추상적 의무까지를 과실의 범위로 확장하면 책임이 무한대로 확장되는 거지요?

○증인 박영빈 과실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주호영 위원 그래서 법률가의 경우는 어느 범위에서 부작위에 의한 과실 책임을 물을 것인지 판례라든지 구체적인 사정을 따라서 판단하지만 대단히 미묘하고 어려운 일이지요?

○증인 박영빈 예, 그렇습니다.

○주호영 위원 이 사건 수사 결론 낼 때 수사팀이 모두 몇 명이었습니까?

○증인 박영빈 처음 시작할 때는 검사 21명으로 했고……

○주호영 위원 아니, 수사는 그렇게 하는데 최종 기소할 것이냐……

처분 결정을 할 때는 몇 명이 관여를 한 겁니까?

○증인 박영빈 그 당시에는 검사장, 차장, 부장 그리고 검사 4명이 관여했습니다.

○**주호영 위원** 그것을 회의 형식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의견 올라오는 대로 결재만 한 겁니까, 다 모여서 결론을 낸 겁니까?

○**증인 박영빈** 중요 사건일 때는 수시로 토의하고 수시로 검토하고 결론을 냈습니다.

○**주호영 위원** 다 모여서 결론을 낸 것이다?

○**증인 박영빈** 예, 그렇습니다.

○**주호영 위원** 이때에 피의자 김영환이 국민의힘 소속인데 당시 국민의힘이 집권을 하고 있었는데 권력이나 상부로부터 여당 도지사니까 봐주라는 그런 청탁이나 이런 것을 직간접적으로 받은 일이 있습니까?

○**증인 박영빈** 전혀 없습니다.

○**주호영 위원** 양심에 따라 결정한 게 틀림없습니까?

○**증인 박영빈** 저희는 여나 야나 구별 없이 지자체장의 첫 사례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했을 뿐이지 그런 상황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주호영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윤건영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영 위원** 신문에 앞서서 증인 중에 이한울 증인과 참고인 중에 성흔수 참고인은 앞 열에 앉아 주시면 신문에 훨씬 용이할 것 같습니다.

제 질의는 도지사님, 청주시장님 그리고 두 분 참고인과 증인께 질의가 될 것입니다.

저는 참사 당일 날 아침에 감리단장과 행복청 주무관께서 이곳저곳으로 막 전화를 하고 참사의 징후들을 알리려고 했던 것에 주목을 했습니다. 법적 책임은 논외로 하더라도 그분들이 이렇게 행동을 했는데 왜 참사를 못 막았을까라는 부분들에 주목을 했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면)

우선 PPT 봐 주시면, 전날부터 충북도와 청주시는 비상근무를 했습니다. 실제로 한 65명 재난대책본부 인원들이 근무하고요. 자연재난과만 해도 18명이 출근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송참사가 일어났던 당일 날 새벽부터, 다음 PPT 한번 봐 주십시오.

여기 감리단장의 전화 부분은 제가 논외로 했습니다. 행복청 주무관, 지금 참고인으로 나오신 주무관은 이곳저곳에 막 전화를 합니다. 전화 내용은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미호천이 범람한다, 도로 통제해야 된다, 주민 대피해야 된다라고 해서 거의 2시간 동안 이곳저곳 전화 안 한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PPT를 봐 주시면요, 수신자가 있는데 전화를 받고 조치한 사람이 있고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빨간색이 조치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충북의 전화받은 사람 두 사람은 조치를 하지 않았는데도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청주시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전화를 받고 나름 조치를 했습니다. 오송읍에 전파도 하고 안전정책과에 보고도 했는데 기소가 됐습니다.

이게 왜일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검찰의 수사가 문제가 있나, 충북도에 대한 책임을 면책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가두리 조사를 한 것 아니야라는 의구심을 갖는 겁니다. 이 표를 보면 당연히 그런 의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다음 PPT 봐 주십시오.

청주시장님,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이게 성 주무관이 청주시로 전화했던 내용입니다. 6시 29분에 제방 범람한다, 교통통제 필요하다, 문자방송 송출해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상 이게 예고와도 같습니다. 6시 반에 이런 전화를 막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PPT 봐 주십시오.

7시 01분입니다.

성 주무관, 이렇게 전화하신 적 있지요, 청주시에?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성 주무관.

○참고인 성흔수 예.

○윤건영 위원 내용을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지금 즉시 주민대피 및 교통통제가 필요합니다. 대피 준비가 아니라 주민대피다라고 단언했습니다. 왜 청주시가 이때 안 움직였습니까?

청주시장님!

○증인 이범석 예, 사실 하천 유실된 제방……

○윤건영 위원 짧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증인 이범석 인근에도 이미 범람과 침수가 돼 있어서 6시 넘어서부터 오송읍 일원 주민대피를 선제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윤건영 위원 아니요, 교통통제를 왜 안 하셨냐고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주민대피, 교통통제, 대피 준비가 아니라 주민대피를 해야 돼라고 경고를 날린 것 아닙니까?

또 있습니다.

○증인 이범석 주민대피뿐만 아니라……

○윤건영 위원 잠시만요, 잠시만요. 시장님, 잠시만요.

○증인 이범석 오송읍 일원의 교통통제도 했습니다.

○윤건영 위원 다음 PPT 봐 주세요.

7시 19분이 되면 청주시의 또 다른 과에다가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성 주무관이 주민대피, 교통통제 필요하다, 지금 바로 조치해라라고 했는데 청주시는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이러니 참사가 벌어진 것 아닙니까?

○증인 이범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건영 위원 시장님, 질문한 거 아니에요.

다음 PPT 봐 주십시오.

이번에는 충북입니다.

성 주무관께 묻겠습니다. 6시 30분에, 똑같습니다, 청주시에게 알린 것처럼 주민대피 준비가 필요하고 통제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전화를 했지요?

성 주무관님, 맞습니까?

○참고인 성흔수 예, 제 기억에는 맞습니다.

○윤건영 위원 다음 PPT 넘겨 주십시오.

똑같습니다. 6시 38분에 자연재난과에 똑같은 상황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요.

그다음 PPT 넘겨 주십시오.

7시 2분에 제가 확보한 기록에 따르면 성 주무관은 청주시와 충북도에 공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는 대피 준비였지만 이제는 대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논란의 부분이 나옵니다. 충청북도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다시 전화 드렸다라는 게 성 주무관의 전화 통화 내용입니다.

성 주무관, 맞습니까?

○참고인 성흔수 예, 그때 사건 직후에 국조실 조사 전에 기억에 의해서 작성한 겁니다.

○윤건영 위원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옆에 계신 이한울 주무관께 여쭙겠습니다.

이런 내용의 전화를 받으신 게 맞습니까? 마이크 가까이 하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증인 이한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윤건영 위원 아니, 이런 내용의 전화를 받으신 게 맞냐고요.

○증인 이한울 아니요, 그런 내용……

○윤건영 위원 이런 내용 전화 받은 게 아닙니까?

○증인 이한울 예.

○윤건영 위원 그러면 어떤 내용의 전화를 받았습니까?

○증인 이한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범람 위험이 있어서 청주시와 경찰청에 연락했다고 했고 긴급재난문자도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알고 있어야 할 것 같다는 통화 내용이었습니다.

○윤건영 위원 아니, 이한울 주무관님, 지금 이야기한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PPT 안 보세요? 행복청 직원이 청주시 교통통제 필요함을 전파했다. 그리고 이제는 대피 준비였지만 대피해야 한다. 충청북도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다시 전화했다라고 했다라는 것, 그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증인 이한울 저는 통제나 대피라는 단어를 듣지 못했고요. 제가 15일 새벽부터 계속 사전 주민대피 실적을 취합을 해 왔었습니다. 사전 주민……

○윤건영 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대피나 이런 말들을 아예 못 들었다라는 겁니까?

○증인 이한울 예. 만약에……

○윤건영 위원 ‘예, 아니요’로만 짧게 이야기하세요.

○증인 이한울 예,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윤건영 위원 옆에 성 주무관, 마이크 앞으로 오세요.

○참고인 성흔수 예.

○윤건영 위원 대피 준비가 아니라 이제 대피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참고인 성흔수 저는, 제 기억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건영 위원 그러면 두 사람 중에 한 분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국회에 나와서. 누가 거짓말하는지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예요.

한 사람은 대피를 하라고 하고 통제를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못 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충청북도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이 말꼬리만 잡아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충청북도가 무슨 기초 상식을 아는 곳입니까? 이런

것 알고 있어야만 된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지 마세요. 도지사님도 지난번에 그러셨고 지금 주무관도 그러시는데 그럴 일이 아닌 거예요. 지금 두 분 중에 한 분은 명백하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 사람은 대피를 이야기했고 한 사람은 그런 얘기 못 들었다, 이걸로 인해서 참사가 발생한 거예요.

성 주무관께 여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참고인 성흔수 그때 감리단장하고 수시로 통화나 저희 카톡방에서 상황하고 사진 같은 걸 공유하면서 7시 전에는 대피 준비, 바로 대피할 수 있게 대피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전파를 청주시랑 충북도에 했고, 7시 이후에는 이제 너무 위험해서 대피를 바로 해야 된다. 그래서 대피 준비가 아닌 대피로 내용을 바꿔서 전파를 한 걸로 기억합니다.

○윤건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저 지점입니다. 성 주무관 옆에는 감리단장이 있었어요. 감리단장도 저와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비록 돌아가셨지만 두 분의 이야기는 동일합니다. 그러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청주 서원구 이광희입니다.

전 수사본부장인 청주지방검찰청의 박영빈 수사본부장님 나와 계신가요?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증인 박영빈 예.

○이광희 위원 사고가 나고서 며칠 만에 투입이 됐습니까? 검찰 수사가 시작된 날 기억하십니까?

○증인 박영빈 7월 15일 날 사고 나고 검찰 수사본부는 21일부터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21일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증인 박영빈 예.

○이광희 위원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경찰 수사가 해체되고 그리고 참여를 시작하신 겁니까?

○증인 박영빈 제가 그 당시에는 수사본부장은 아닌데 경위로 알기로는 국무조정실에서 수사 의뢰가 왔었고 그에 따라서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을 저희가 먼저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광희 위원 혹시 2024년 6월에 1차 발표하실 때 직접 발표하셨습니까?

○증인 박영빈 그때는 직접 발표는 안 하고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이광희 위원 보도자료를 냈습니까?

○증인 박영빈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 보도자료에서 당시에 충북에서는 왜 중대재해처벌 분야가 빠졌느냐,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왜 빠졌습니까?

○증인 박영빈 그 보도자료에 그 부분은 설명을 했습니다.

○이광희 위원 뭐라고 설명을 했지요?

○증인 박영빈 중대시민재해 치사 부분은 면밀한 법리 검토 및 지속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나중에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보도자료에 삽입을 했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리고 2025년 1월 9일 날 발표를 해서……

○증인 박영빈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 위원 사실은 저는 왜 하필이면 이 시점인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지난번에 질문을 했었기 때문에 차치하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두 번째는 핵심적인 게 이겁니다, 왜 검찰이 도지사를 불기소처분을 했는지. 그것도 그날 보도자료 발표한 것에는 두 장씩이나 내서 네 가지 분야에 대해서 건건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재해의 의구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네 가지인데요, 불기소 이유가.

넘겨 주시겠습니까?

네 가지의 불기소 사유를 하나씩 보면……

불기소 이유를 반박을 제가 하나씩 하자면 지하차도 점검 요건에 맞게 실시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위기 시 전혀 미대응이었고 이행에 대한 조치가 되지 않았었는데 이것도 왜 이렇게 판단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한꺼번에 질문을 드릴게요.

○증인 박영빈 예.

○이광희 위원 두 번째는 지하차도 자체 설계나 설치상 결함이 없다고 했는데 사실은 자동차단시설 설계도 되지 않았고 자동차단시설이 돈이 얼마 들지 않아요. 이게 매년 올라오는 안이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이런 건이 수도 없이 많지요. 필요했다면 지자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정도의 소액밖에 안 되는 비용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설치상 결함이 없었다.

그다음에 인적관리, 인력 확보에 예산 확보가 되었다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력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당일 날. 그리고 위험하다고 판단했지만 예산은 국비가 내려올 때까지 하겠다는 걸로 계속 묵혀 두고 있는, 수도 없이 많은 일 중의 하나였다는 것만으로도 불기소했다, 이건 도저히 지방자치의 도의원을 했었던 입장에서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지하차도 사전통제 기준 업무처리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업무처리 자체가 이행되지 않았으면 마련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판단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증인 박영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저희도 감안한 부분이고 그 부분도 지금 고검에서 포함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고검은 아직 가지 않았았고요. 지금 신고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유가족들에게서 아직 안 됐습니다.

자, 두 번째요.

그다음에 검찰 조사의 불기소처분서를 제가 꼼꼼히 따져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빨간 것을 봐 주시면 첫 번째 칸에서는 검찰이 불기소한 이유에는 지하차도는 범람이 잦고 미호천교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등등등 해서 차량 운전자들이 자발적 진입 회피 및 탈출이 어려운 구조임을 인지했다고 처분서에 적혀 있습니다, 인지하고 있었고.

두 번째는 자동진입차단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침수 위험 시 충청북도의 지하차도 수동 통제 업무의 적정한 수행이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중요하다라고도 판단을 했습니다.

○증인 박영빈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 집중호우가 예고된 상황에서도 비상근무를 실시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내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 불기소처분서에.

하천수가 흘러나와서 지하차도로 유입되고 있음에도 지하차도 사전통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았다. 이 얘기는 그 이후에도 계속 관리상 결함에 해당되고 검찰도 사전 예찰, 기상 정보 확인 및 전파, 미호천교 수위 확인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면 미호천교 수위가 계획홍수위에 도달해 통제 기준을 충족하는 06시 34분경부터 지하차도 차량 진입이 시작되는 08시 31분경까지 1시간 57분의 시간 동안 지하차도 통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증인 박영빈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런데 사실상 검찰 스스로도 이 사건에 대해서 지하차도 통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기 때문에 관리상 결함에 해당된다고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데 기소를 하지 않으셨어요. 결과는 무혐의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불기소처분서를 읽으면서 이것은 기소가 확실하다고 다들 느낄 수밖에 없는데 하필이면 불기소가 되는 바람에 의구심을 이렇게 갖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박영빈 그 부분은 중대시민재해 치사에 처벌이 가능한 피의자 신분 요건은 최고 경영자 즉 도지사 1명밖에.....

○이광희 위원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증인 박영빈 법상으로 도지사 1명밖에 없습니다.

○이광희 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관리적 결함.....

○증인 박영빈 그래서 도지사한테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 불이행으로.....

○이광희 위원 그래서 관리적 결함의 최종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중대재해처벌법상에는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관리상 결함이 있음에도 시설기관에 대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의 최고책임자가 책임이 없다는 것이 적절한 판단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해석의 여지가 있는 거지요. 지금 검사님하고 해석의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증인 박영빈 그 부분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래서 그 이행에 관한 조치와 관리상의 조치까지를 의무로 하고 있다. 이 중대재해처벌법상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고 있는 게 당연하고.

초동에 처음에 불기소 처분한 것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불기소 처분 이유서 보면 이게 그대로 기소장이다. 그래서 결국은 검찰의 봐주기 수사 아닌가?

○증인 박영빈 전혀 아닙니다. 저희도 그 부분이 어려운 판단이었고 중대시민재해 치사의 경우에는 최고 경영자인 지자체장을 포함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수장들에게 평소에 보건·안전 확보의무를 부과하여 체계를 구축하고, 거기서 말하는 이행이란 시행령에 보시면 직접 점검하거나 교육이나 보고를 받은 것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다만 이 체계는 갖춰졌는데……

○이광희 위원 그래서 그 체계 이행을 안 한 것에 대한 증빙도 있는데 그것은 이파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증인 박영빈 예, 알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수사가 덜 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증인 박영빈 그 부분은 고검의 판단에 따르겠고, 저희가 수사 과정에서 뭐를 일부러 감추거나 회피하거나 한 건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됐어요.

다음은 고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동진 위원 조희송 전 금강유역환경청장님 나와 계시지요?

우리가 오송참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인 분석도 많이 하고 많은 동료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는데 저는 하천의 제방 관리 측면에서 하천 점용에 대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원래는 사실 환경부장관한테 질의를 하면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출석을 하지 않은 관계로 부득이하게……

그 당시 하천 점용 허가권자셨지요?

○증인 조희송 예, 맞습니다.

○고동진 위원 금강유역환경청 전 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청장님, 이번 사고는 대웅적인 측면에서 충청북도가 잘못한 것이지만 일단 사고가 일어난 직접적인 계기는 미호천교 공사를 위해서 기존 제방을 헐고 임시로 지어진 둑이 무너졌다. 이것이 일반적인 이야기인데 여기에 동의를 하십니까?

○증인 조희송 예, 그것도 중요한 사고의 원인인 것은 맞습니다.

○고동진 위원 결과론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거고.

○증인 조희송 예, 그렇습니다.

○고동진 위원 물론 이 이외에 청주 그다음에 재난관리, 경찰청, 모두 다 연락이 오고 가고 그랬는데 아까 윤건영 위원님도 많이 지적을 하셨지만 이게 뭔가 연락은 다 주고받았으나 조치가 안 이루어진 그런 것도 또 사고가 있었습니다.

원래 하천법에 따르면 기존 제방을 철거하려고 할 경우에 발주청인 행복청이 추가로 점용허가를 받았어야 했는데 이것을 시공사가 무단으로 철거한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맞습니까?

○증인 조희송 예, 그렇습니다.

○고동진 위원 결국 환경청 직원 3명도 사업 초기 최초의 점용허가 이후에 현장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이유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증인 조희송 예, 그렇습니다.

○고동진 위원 저는 바로 이 현장조사가 제대로 안 된 게 또 하나의 문제의 핵심이자 본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환경부가 제방을 절개할 때는 전문가에게 현장조사를 의뢰하도록 행정규칙을 지난해 4월 개정을 했습니다만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행정규칙은 어떤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 보니까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령으로 관련 사항들을 반영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무엇보다 환경부의 개정 내용은 공사 발주청과 시공사가 환경청에 알리고 제방을 절개하려고 할 때는 관련 전문가한테 현장조사를 의뢰한다고 하는 내용인데 이번처럼 발주청과 시공사가 환경청에 알리지도 않고 절개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인 환경청이 이를 인지할 수 없는 일종의 한계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조희송 같은 생각입니다.

○고동진 위원 제가 지난 15일에 현장조사를 할 때 현재……

현재 청장이 송호석 청장이시지요?

○증인 조희송 맞습니다.

○고동진 위원 현재 청장에게 허가를 내 주든 실무자든 간부든 현장을 자세하게 봤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제가 질의를 그때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송호석 현재 청장이 답변하기를 ‘그런 부분은 그 당시 그렇게 행해졌으면 이렇게 비극적인 참사가 이어지지는 않지 않았을까 생각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장님도 동의하십니까?

○증인 조희송 예, 점용허가 하는, 그러니까 연장 허가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섬세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동진 위원 그때 송호석 청장의 추가적인 답변 내용 중에 ‘현장을 보러 사람들은 갔습니다, 실무자들이’. 그런데 현장에서 가이드하는 대로 이렇게 같이 다니다 보니 현재 사고가 났던 그 부분은 실무자가 보지를 못했다’라고 답을 했었어요. 맞습니까?

○증인 조희송 예, 저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동진 위원 그 내용을 듣고서 제가 굉장히 참 먹먹했는데, 저는 이렇게 대안을 제시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하천법을 개정해서 환경청이 발주청으로부터 최초의 하천 점용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그 신청 내용이 합당한지 제3의 전문가라고 하는 민간인들에게만 어떤 책임 회피식으로 맡기지 말고 관계 공무원이 구체적인 법적인 기준과 사항들을 직접 점검하도록 현장조사를 나가고, 제가 PPT를 저기 현재 것이 왼쪽이고 오른쪽으로 준비를 해 놨습니다.

또 최초 허가를 냈다고 하더라도 그게 끝이 아니라 공사 내용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또 안전 사항들이 준수되고 있는지 이렇게 사전에 정기적으로 현장조사할 수 있는 법적인 체계가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조희송** 하천 점용허가 절차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저희도 인식을 해서 하천 점용허가 세부 기준 개정을 위원님 말씀대로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상위 법령에 좀 더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동진 위원** 구체적으로 법령을 반영하는 방법이 7곳의 지역 환경청 공무원들이 직접 정기적으로 구체적으로 현장점검을 하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을 본 위원이 진행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조희송** 추진해 주시면 저희 내부적으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동진 위원** 그래서 7개 하천 현장점검이 필요한 데가 한강유역, 낙동강, 금강, 영산강, 원주지방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전북지방환경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안이 발의가 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인 조희송** 예, 알겠습니다.

○**고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다음은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승 위원** 권칠승입니다.

이한울 주무관 그리고 박영빈 지검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석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울 주무관님, 자연재난과에 21년 7월부터 2년간 근무 중이었지요, 사고 당시에?

○**증인 이한울** 예, 맞습니다.

○**권칠승 위원** 그렇지요?

그날 성 주무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상황 보고를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습니까?

○**증인 이한울** 세 번 받았고 누군가에게 보고는 드리지 못했습니다.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보고 같은 것 말로라도, 문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전혀 한 적이 없습니까?

○**증인 이한울** 예, 맞습니다.

○**권칠승 위원** 그다음에 자연재난과에 단톡방이 있지요?

○**증인 이한울**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권칠승 위원** 단톡방 있습니다. 기소장에도 나와요.

○**증인 이한울** 예,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 권칠승 위원** 그것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단톡방에 한 번도, 글도 안 써요? 서무 보면 단톡방을 엄청 자주 보잖아요.
- 증인 이한울** 예, 그래서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예, 있었습니다.
- 권칠승 위원** 점점 더 의심스러워요.  
있었잖아요?
- 증인 이한울** 예, 맞습니다.
- 권칠승 위원** 매일 몇 번씩 체크했을 것 아닙니까? 서무는 단톡방을 끼고 살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 증인 이한울** 단체 카톡방으로 자연재난과 부서 직원들 모두 보고 있는 것입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서무가 그것을 주로 관리하잖아요.
- 증인 이한울** 서무가 주로 관리하는……
- 권칠승 위원** 그런데 그것을…… 서무는 거기에 자주 들어가잖아요, 단톡방에?
- 증인 이한울** 서무가 관리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 권칠승 위원** 기억을 못 할 정도로 그래요, 그게? 답변이 진짜……  
그 단톡방에도 그런 내용을 올린 적이 없어요?
- 증인 이한울** 회의실 관련해서……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단톡방의 내용을 보고 성 주무관 연락받은 내용을 올렸어요,  
안 올렸어요?
- 증인 이한울** 따로 올린 것은 없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지요? 그러면 본인의 보고의무 해태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사고가 났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네요?
- 증인 이한울** 아니요, 제가 받은 성흔수 주사님의 세 번의 전화 통화는……
- 권칠승 위원** 좋습니다.  
그려면 그 사고 이후에 성 주무관하고 통화한 적 있습니까?
- 증인 이한울** 없습니다.
- 권칠승 위원** 전혀 없습니다?
- 증인 이한울** 예.
- 권칠승 위원** 이것도 통신 조회하면 다 나옵니다.
- 증인 이한울** 예.
- 권칠승 위원** 전혀 없어요?
- 증인 이한울** .....
- 권칠승 위원** 이 사건은 재조사가 있을 겁니다.
- 증인 이한울** 예.
- 권칠승 위원** 이 재조사를 통해 가지고 다른 사실이 밝혀지면 이한울 주무관은 아주  
아주 힘들어져요. 원래 있는 대로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게 본인의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 증인 이한울** 지금까지 계속 사실대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업무를 엄청나게 못 하는 사람이다 지금 이 이야기 하  
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 증인 이한울 제가 업무를 못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날 정신이.....
- 권칠승 위원 업무를 잘한 거예요?
- 증인 이한울 세 번의 전화 통화.....
- 권칠승 위원 충청북도에서 알고 있으라, 혼자 알고 있어라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 증인 이한울 그때 이제.....
- 권칠승 위원 됐어요.
- 지검장님, 청주시 담당 과장, 행복청 과장·주무관 전부 다 재난 상황을 인지하고 아무 조치 안 취했다는 이유로 기소를 했어요. 그렇지요?
- 증인 박영빈 예,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런데 왜 이한울 주무관은 기소를 안 했습니까?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이에요?
- 증인 박영빈 그 부분 판단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 증인 박영빈 그 요소도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앞으로 아마 공무원들 다 교육 거부할 겁니다, 그런 논리라면.
- 그다음에, 그렇다면 공소장 다른 페이지에 충북도로관리소장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면서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22년 7월 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것 6개월간입니다, 충북 자연재난과장으로 근무하였으므로 재난대비 및 대응업무 전반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그런데 이한울 주무관은 2년을 근무했어요, 그때 그 당시에.
- 업무를 잘 알고 있었다. 훨씬 더 잘 알고 있었던 사람 맞지요?
- 증인 박영빈 예,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런데 왜 불기소했지요?
- 증인 박영빈 불기소를 한 게 아니라 기소유예를 한 겁니다. 그 부분은.....
- 권칠승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왜 기소유예했지요?
- 증인 박영빈 청주시에서 재난안전실 포함해서 7명이 기소됐고, 주요 책임자들을 기소하였고 재난 상황에서.....
- 권칠승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다른 이유 말고. 왜 이한울 주무관은 기소를 안 했습니까? 기소유예했습니까?
- 증인 박영빈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했는데 그 부분은 이번 국정조사에서 밝혀진 상황을 참작해서 한번 다시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아니, 그동안에 몰랐을 리가 없잖아요.
- 증인 박영빈 주요.....
- 권칠승 위원 아까 이한울 주무관이 과에서 사용하는 단톡도 기억이 났다, 안 났다 하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답변하고 있잖아요. 전형적으로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 그 단톡을 사고 이후의 것도 다 보셨어요? 새벽 5시 조금 전에 들어갔던 내용에 대해서는 다 보셨잖아요. 기소장에 그게 다 나오잖아요.
- 증인 박영빈 예, 그 부분도.....
- 권칠승 위원 그 이후는요? 그 이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증인 박영빈** 이한울 주무관이 공소장에 적시는 명확히 ‘이한울’이라고 안 했는데 ‘주무관’이라고는 기재가 돼 있고 거기에 보면 세 번 전화 받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단톡 내용이 없잖아요, 그 이전 것만 있고. 왜 그 이후의 것은 다 뺐어요? 그 이후에 단톡에 아무 내용이 없습니까, 새벽 5시 이후에?

○**증인 박영빈** 그 이후의 단톡 상황은 제가 구체적으로 잘……

○**권칠승 위원** 그거를 수사를 안 한 거예요. 그걸 봐야 보고가 있었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증인 박영빈** 단톡방도 다 확인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칠승 위원** 그런데 왜 기소장에 아무 내용이 없어요?

○**증인 박영빈** 이한울 주무관이 전화 받은 상황까지는 공소장에 적시가 돼 있습니다.

○**권칠승 위원** 한번 보십시오.

그다음에 충청북도 재난안전실장께서 저번에 저하고 문답을 할 때 기소장 내용 중에, 공소장 내용 중에서 ‘신고가 들어오고 있는데도 조치하지 않았다’ 이 부분을 부인했어요. 부인한 이유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증인 박영빈** 그 부분은 직접적인 보고를 못 받았다는 주장이 있고요. 저희가 기소한 부분은……

○**권칠승 위원** 그렇습니다. 그 주장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지요.

○**증인 박영빈** 저희가 기소한 부분은 홍수경보가 발령됐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있고……

○**권칠승 위원** 공소장은 신고로 돼 있습니다. ‘신고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신고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보고 안 받고 어떻게 압니까? 그 보고를 전제로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 부분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 부분만 딱 부인을 하는 겁니다. 검찰에서 봐준 거 아닙니까?

○**증인 박영빈** 아닙니다. 봐줬으면 기소 자체를 안 했을 것입니다.

○**권칠승 위원** 가장 적은 범죄혐의로 기소를 한 겁니다. 이게 지금 다 보여요. 기소를 하면서 가장…… 보고를 받고도 제대로 조치를 안 했으면 큰 죄가 되는 것이고 보고를 못 받고 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보다 더 낮은 단계로 아마 조치가 될 겁니다, 이게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면 법원의 판결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 말이 틀렸어요?

○**증인 박영빈** 저희는 확인된 사실관계로 기소를 했고 그 부분은 공소유지 과정에서 집중하겠습니다.

○**권칠승 위원** 확인을 제대로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고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신고가 됐는데 제대로 조치를 안 했다 이건 검찰에서 어떻게 알았어요?

○**증인 박영빈** 재난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의무가 발생했을 시점에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기소를 했습니다.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요. 신고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안 했다는 거잖

아요. 그 신고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걸, 그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신고입니다, 신고. 신고가 들어오고 있는데도 제대로 조치를 안 했어요. 신고가 들어가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검찰이?

○**증인 박영빈** 그 부분은 통화.....

○**권칠승 위원** 보고가 있었다라는 걸 뭔가 정황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 아닙니까? 공소장에 그렇게 썼을 거 아닙니까? 모순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보고가 없었는데 어떻게 신고가 들어왔다는 걸 전제로 공소장을 쓸 수가 있습니까?

○**증인 박영빈** 신고만으로 기소한 건 아닙니다.

○**권칠승 위원** 다른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까? 제가 신고만으로 신고했다고 합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그 전제 조건이 내부 보고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보고를 안 했는데 신고가 있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그 위의 재난실장·과장·팀장 기소했잖아요?

○**증인 박영빈** 예, 충북도는 기소했습니다.

○**권칠승 위원** 그 기소한 이유 중의 한 개가 신고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조치를 안 했다는 거예요. 신고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보고를 안 했는데?

○**위원장 신정훈** 답변해 보세요.

○**권칠승 위원** 검찰은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거를?

○**위원장 신정훈** 말 돌리지 말고 답변 제대로 한번 해 보세요.

○**증인 박영빈** 공소장 내용 그대로입니다. 신고가 있었다는 거를 보고를 받아서 인지했다는 부분이 아니고 호우경보가 있었고 그 뒤에 카톡방에 재난, 계획홍수위가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를 안 했다는 겁니다.

○**권칠승 위원** 신고가 계속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위원장 신정훈** 그러면 신고를 빼야지요. 신고라는 이야기를 빼야지요.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공소장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권칠승 위원**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증인 박영빈** 그 부분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유지를 하겠습니다.

---

○**윤건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예, 하세요.

○**윤건영 위원**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조금 전 질의에서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님께서 자연재난과의 카톡방, 단톡방이 있었냐라고 물었고 이한울 증인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자연재난과의 단톡방 관련된 자료를 달라고 몇 차례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제출을 안 해 주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증인이 있다고 진술을 했으니 자연재난과의 참사 당일 전후의 단톡방 내용들을 제출해 주실 걸 위원장님께 요청합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저기 이어서, 기소유예 처분을 하셨는데 이한울 주무관의 기소유예 처분서 그 자료를 다음 오후 질의 전까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서범수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께서 이 회의의 사회권을 갖고 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개별 위원님께서 질문하시고 난 뒤에 또 추가적으로 자꾸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모습이 이게 맞지는 않지 않

느냐. 위원장님도 나중에 질의권, 질의 시간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같이 해 주시면 되는데 자꾸 추가적으로…… 저 사회권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제가 회의 진행에 도움이 되는, 사회자로서 할 만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서범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자꾸 발언을 하시면 언제까지 이게 계속 될 겁니까?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도 공식적으로 질의권을, 시간을 받아서 공식적으로 질문을 하시라고요.

○위원장 신정훈 제가 사회자로서 지금 질문과 답변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허점이 보이는 발언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서범수 위원 그러니까 그걸 모아서 나중에 정식적으로 질의 시간에 하시라고요.

○위원장 신정훈 이 회의가 국정조사이기 때문에 조사의 목적인 진실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라니까요.

○서범수 위원 하시라고요. 제가 위원장님께 질의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질의 시간에, 질의 시간을 받아서 공식적으로 하시라고요.

○위원장 신정훈 이 정도의 사회권을 가지고…… 그만하세요. 참조하겠습니다.

도대체 사회자의 기본적인 진행……

○서범수 위원 아니, 사회권은 인정한다니까요, 사회권은.

○위원장 신정훈 사회권에 해당되는 거라니까요. 사회권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정도는.

○윤건영 위원 사회권 범주 내입니다.

○서범수 위원 왜 그게 사회권 범주 내입니까?

○용혜인 위원 새로운 걸 물어본 게 아니라 위원이 물어본 거에 대해 답변하라고 한 거잖아요.

○위원장 신정훈 지금 중인이 답변을 회피하거나 왜곡하거나 논리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바로잡는 겁니다.

○서범수 위원 그걸 모아서 공식적으로 질의를 하시라고요, 질의 시간에.

○위원장 신정훈 질의할 겁니다.

○서범수 위원 하세요.

○위원장 신정훈 사회도 볼 거고.

○서범수 위원 사회 보시라니까요.

○윤건영 위원 진행 과정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용혜인 위원 아니, 새로운 질문을 하신 게 아니잖아요, 위원장님이.

○위원장 신정훈 검사장이라는 사람이 이 자리에서 답변하면서 모순된 답변을 하고 있잖아요.

○윤건영 위원 사회자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용혜인 위원 질문한 거 똑바로 답변하라고 한 건데 그게 그렇게 문제입니까?

○서범수 위원 왜 그게 사회권 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윤건영 위원 충분히 할 수 있지요.

○서범수 위원 제가 질의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윤건영 위원 진실을 밝히자는 거잖아요, 진실을. 그러면 사회자가 잘 봐야지요, 사회

를. 잘 보고 있는데 왜 그래요?

○서범수 위원 아니,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왜 자꾸 추가적으로 하느냐고요, 위원장님이라고. 공식적인 질의 시간을 받아서 하면 되잖아요.

○윤건영 위원 위원장이라서가 아니라 사회자니까 그런 거잖아요.

○용혜인 위원 새로운 질의를 하신 게 아니잖아요.

○채현일 위원 다른 상임위에서도 다 그렇게 합니다.

○서범수 위원 뭘 상임위에서 그렇게 합니까? 내가 이런 거 처음 봐요, 나도.

○용혜인 위원 질의하는 위원이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똑바로 답변하라고 한마디 하신 거잖아요.

○위원장 신정훈 다음은 박수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민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유가족 지원에 대해서……

○위원장 신정훈 잠깐만요. 아까 두 분이 요청한 자료, 관련 기관에서는 바로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민 위원 박수민 위원입니다.

유가족 지원에 대해서 제가 점검한 거 충북도지사님과 청주시장님께 동시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유가족 장례 지원은 잘 지원된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는 유가족들로부터 큰 이견 제기가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후원물품, 의연금, 보상금 지급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가족 만났을 때 큰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신과 치료비였던 것 같은데 병원 치료비 지원도 지원이 됐고 이 부분에서도 큰 얘기는 없었습니다. 희생자 시민분향소가 충북도하고 청주시에서 두 개 다, 두 군데서 다 진행이 된 것 같고 여기까지는 잘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 남는 것이 정신과 치료보다도 심리상담이 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됐고 또 동시에 심리상담 같은 경우 절차가 복잡해서 이게 좀 어렵다 그런 얘기가 유가족에게 나와서 제가 좀 짚어 보니까 결국 투 플러스 원으로, 심리상담이 있고 정신과 치료비 지원이 있는데 정신과 치료비 지원은 아까 말씀대로 잘 됐어요. 그런데 심리상담 지원은 복지부 사업이지만 청주시가 접수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고 복지부가 직접 접수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충북도가 과정을 돋고 이런 두 가지가 있었는데 두 가지에서 보니까 절차가 좀 부담스럽다 해서 간소화한 부분이 기준에 이 사업의 설계가 정신과 치료기록이 있어야 신청해서 받는 건데 치료기록이 없기 때문에 재해확인서 내는 걸로 간소화는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여전히 좀 부족한 게 이미 유가족과 생존자로, 피해자로 다 규정이 돼 있는 분들은 그냥 가서, 그냥 찾아가서 서명만 하고 받고 오면 되고 접수라는 그 의미 자체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미 접수는 돼 있는 거고 찾아가서 하게 하면 되는 건데 제가 볼 때 그 부분 좀 아쉬웠고요.

동시에 치료비 지원과 다른 게 상담 지원은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저는 조금 우리가 한발 더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게, 아마 그렇게 됐을 거예요. 저희가 예산 사업을 설계할 때 치료비 지원은 전액 지원을 하고 심리상담은 자부담이 있고, 아마 사

업의 설계가 그랬는데 재해 같은 경우는 이게 해당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아직도 해소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돌아가서 빨리 체크하셔서 자부담을 시가 내든 도가 내든 해서 자부담 없이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담당 부서가 있고 담당 절차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분들은 갑자기 재난을 당한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청주시가 처음에 아이디어를 잘 냈는데 그게 품질관리가 안 됐다고 보입니다. 전담 직원을 배치해서 유가족 장례 지원을 했는데 그 전담 직원들에 대해서 유가족이 느끼는 거는 감사받는 거로 느꼈다, 난 도움받는 거로 느끼지 않았다, 이거는 도움을 주고자 했던 의도와 결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계속 접촉을 하면서 트라우마센터를 가게 안내해 주고 자부담의 문제가 있으면 고쳐 주고 또 찾아가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상담사분과 시간을 조율해서 그분들을 찾아가시게 하고…… 저는 이런 정성이 좀 부족했다는 게, 제가 짚어 보니까 쭉 절차를 하시면서 그 부분이 부족했고 이런 부분은 청주시와 오송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한발 더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갑자기 황망한 사건을 겪었는데 이런 절차가 있으니까 당신이 접수해서 가라, 이게 가능한 얘기겠습니까?

기왕에 전담 직원을 배치를 하셨던 바가 있고 그분들이 이러한 상황, 저희가 저희 의원실의 대단한 노력이 있었던 게 아니고 이번 국정조사를 계기로 저희 의원실에서 한번 짚어 본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왔거든요.

제가 보니까 청주시와의 관계는 지금 좋지 않아요, 유가족과의 관계는. 청주시가 재난을 일으킨 사람도 아닌데 왜 사이가 벌어졌을까. 그분들의 마음을 관리 못 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돌아가서 그 자부담의 부분 그다음에 그분들이 지금 그런 상담을 통해서, 전담 직원을 통해서 결국 마음을 회복하고 생활을 회복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 같이 걸어 줄 수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또 어떤 선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선까지는. 저는 저희가 이런 재난에 대응해서 장례 지원하고 하는 매뉴얼 이런 건 다 했다고 봅니다. 보는데, 이 부분은 한발 더 나가야 된다.

제가 규정을 하면, 처벌은 많아요. 제가 보니까 처벌 대상자는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게 정확했는지 안 했는지까지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지만 처벌은 광범위한데 치유는 지금 광범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가족분들이 청주시라든지 굉장히 적대적인 느낌을 갖고 계신데 지금이라도 마주 앉아야 한다. 그래서 그동안 서운하셨던 점이 뭔지 또 소홀하셨던 점이 뭔지, 저희가 찾아낸 거거든요. 여기 자부담이 웬 말입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해소해야 되고 돌아가셔서 좀 잘챙겨 주시고.

그다음에 저는 거듭 얘기하지만 이런 재난이 정치로 활용되는 거 철저히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치유, 회복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짜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그 부분이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요.

행복청 나와 계신가요, 행복청?

○**증인 이상래** 좀 특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찾으시는지.

○**박수민 위원** 행복청의 도로사업 담당하셨던……

이상래 전 청장님.

○**증인 이상래** 도로사업 담당자는 지금 과장은 출석이 안 돼 있고요. 성훈수 주무관이

그 팀에 있었고 현재 광역도로과장은 나와 있습니다.

○**박수민 위원** 광역도로과장 한번 나와 주세요.

○**증인 이상래** 증인 신청이 된 사람이 아니라서……

○**박수민 위원** 그러면 청장님의 잠깐만 앞자리로 와 주십시오.

○**증인 이상래** 예, 그러시지요.

○**박수민 위원** 시간이 짧으니까 답변 주실 수 있으면 주고 아니면 서면으로 주십시오.

제가 보니까 임시제방을 두 번 설치했더라고요, 두 회에 걸쳐서. 첫해에 했다가 허물고 또 홍수철이 오니까 두 번째 해에 또 세우고 그리고 사고가 났어요. 이 지점 대단히 아쉽습니다. 임시제방은 불안한 구조물이고, 그러면 첫해에 허물었을 때 빨리 도로 공사가 완료가 됐으면 둘째 해에는 임시제방에 의존하는 일이 없었고 사고가 안 났을 것인데 왜 임시제방을 두 회에 걸쳐서 설치했어야 하는지 공사 기간 면에서 아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면도 좋고 지금 답변도 좋고 답변 주십시오.

○**증인 이상래** 제가 볼 때는 공사라는 게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고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걸로 아는데 정확한 것은 파악을 해서 부처에서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다음은 박정현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대전 대덕구 박정현 위원입니다.

지난 9월 15일 날 우리가 오송참사 국조 현장조사를 했는데요. 그때 희생자 유가족분들과 생존자 1명도 우리가 만났는데 그 증언을 들으면서 참담하기 짹이 없었고 정말 국회의원으로서 몸 둘 바를 모를 죄송함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생존자 중의 1명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김영환 충북지사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는 2차 가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책임을 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김영환 충북지사는 이 말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이제 고법에 가서 조사를 받으시겠지만 정말 윤리적 책임이 아니라 법적 책임을 진다는 자세, 충북도지사로서의 충북 시민들의 생명을 지킨다는 그런 자세로 수사를 받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 7월 24일 부산 초량제1지하차도 사건이 있었고요. 2023년 7월 15일 충북 궁평 제2지하차도 사건을 한번 비교를 해 봤어요. 그런데 굉장히 유사한 사건인데 한 사건은 어쨌든 최종 책임자가 책임을 졌고 충북 궁평제2지하차도 사건은 최고 책임자가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빈 전 청주지검장 나와 주십시오.

화면 띄워졌나요? 화면 좀 띄워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면)

부산지검에서 발표를 했지요. 초량지하차도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증인 박영빈** 예, 봤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게 유사한 사건이기 때문에 참고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는 사실은 굉장히 다르게 나타난 것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재해 준비에 대해서 초량제1지하차도도 재해 준비는 다 됐어요. 저기 보면 지하차도 침수 대비 매뉴얼도 마련했고 도로기전설비 유지관리계획도 마련했고 여름철 재난대비 재난 상황 대응계획도 마련을 했는데 동구청 지휘부와 실무 담당자들은 조치를 하지 않았고 구청장이 휴가를 가서 그사이에 대리한 부구청장은 호우 관련한 어떤 지시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소가 됐지요?

○증인 박영빈 예, 기소됐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궁평제2차도 관련 내용 보시지요.

수사 보도자료인데요. 지난번에 이해식 위원님께서 불기소처분서를 갖고 이 문제점에 대해서 다 지적을 하셨는데요. 일단 우선 검찰의 말이 맞다고 치고 설명을 좀 해 보겠습니다.

궁평제2지하차도 사고 원인도 검찰 보고에 의하면 자체 물리적 결함이 없고 도로관리사업소 등 지하차도 사전통제 인력이 상당 규모 확보돼 있었고 집중호우 시 지하차도 사전통제 매뉴얼이 마련돼 있었고 상반기 훈련 실시를 했다, 초량이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재해예방대책은 마련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증인 박영빈 예.

○박정현 위원 그런데 초량은 재해예방대책은 마련했지만 재해 당시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동구청 부구청장은 기소를 했는데 실제로 궁평제2차도도 보면 예방적 업무는 다 했어요. 그런데 막상 재해가 발생했을 당시에 첫 관문이었던 이한울 주무관이 제대로 이것에 대해서 보고를 했는지 보고를 하지 않았는지 지금 명확하지 않은데 그랬다는 것이고.

그런데 이런 집중호우 상황에서 미호천뿐만 아니라 충북도가 책임져야 될 궁평제2지하차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충북도지사가 아무런 지휘를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가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불기소를 한 겁니까? 왜 초량이랑 다른 겁니까?

○증인 박영빈 초량의 경우에는 그때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기 전의 상황이고 부구청장은 업과사로 기소돼서 최종적으로 무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셨네요. 초량의 경우는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적용이 됐지요?

○증인 박영빈 예.

○박정현 위원 그런데 지금 궁평의 경우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 아닙니까?

○증인 박영빈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왜 초량이랑, 오히려 결과가 더 낫게 나온 거지요? 실제 중대시민재해에 보면 공중이용시설·대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으로 인해서 시민 등 불특정 다수에게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법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충북도에서는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처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국회의 입법 취지를 검찰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검찰공화국

이고 검찰이 죄가 있다고 하면 있고 없다고 하면 없다라고 해서 지금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궁평에서도 이런 상황이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증인 박영빈 저희 수사팀은 법리의 검토를 통해서 충실히 해석했는데……

○박정현 위원 법리에 충실했다고 보기 어렵잖아요.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의 법리상 맞지 않지 않습니까?

○증인 박영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고청에서……

○박정현 위원 그런데 무슨 법리에 충실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증인 박영빈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포함하여 항고청에서 검토 중에 있으므로 제가 답변드리기는 곤란……

○박정현 위원 그런 식으로 회피하시면 안 되지요.

○증인 박영빈 저희 수사팀 1차 판단은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1차 판단에서 이게 올라갔어야지요. 기소를 하셨어야지요. 재심에서 또 다시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수사를 제대로 해서 기소를 하셨어야지요. 그게 검찰이 해야 될 책무 아니었습니까?

답변 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용혜인 위원 위원장님, 저 자료 요구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예.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용혜인 위원 기본소득당 용혜인입니다.

지난 현장조사 당시에 저희가 상황실 둘러보면서 충북에 요구했었던 재대본의 참석자 명단과 회의 당시의 보고자료, 영상회의록 유무와 있다면 제출해 줄 것 등등에 대해서 하나도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한울 증인이 참석자 명단 정도 자기가 준비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었고 자연재난과장도 당시에 상황실에서 소방은 왔고 경찰은 안 왔고 이런 참가자들을 줄줄줄 훑었는데요. 이 회의에 대해서 전혀 제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했을 때 저한테 이거 2쪽짜리 참석자 이름도 없는 결과보고서 하나 달랑 보냈고요. 심지어는 이것과 관련돼서 여기에 제출되어 있는 자료의 전화번호로 계속해서 통화를 시도했으나 어제 서너 번의 전화 통화를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도 통화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거 현장조사에서 직접 자료제출 요구했던 사안이고 다 알고 있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도와 소통하면서 자료제출해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의원실의 전화를 회피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6시 20분부터 7시 40분 사이가 미호천교 범람 위험을 인지하고 교통통제로 참사를 예방할 수 있었던 골든타임이기 때문에 이 재대본 회의에서 미호천교 범람 위험이 전파되었는가를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질의를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충북은 계속해서 보고되지 않았다 같은 이상한, 납득하기 어려운 말만 하면서 제대로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은폐에 대한 시도だ라고 규정할 수

밖에 없고요.

오늘 오후 회의 시작하기 전까지 지난 현장조사에서 요구했었던 재대본의 참석자 명단 그리고 회의 당시의 보고자료와 결과자료 그리고 영상회의록 유무와 있다면 제출해 줄 것을 위원장님께서 조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오늘 오전 신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내기 전에 아까 윤건영 위원님, 이연희 위원님 그리고 용혜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충북도와 청주지검에서는 오후 회의가 시작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2시 30분에 속개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건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신문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용혜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혜인 위원 시간 멈춰 주시고, 이한울 증인 잠시 나와 주세요.

증인, 6시 31분부터 미호천 범람 위험 있다, 주민대피, 교통통제 필요하다라는 행복청 전화 세 차례 받고 아무런 보고도 전파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계속 오늘 진술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증인 이한울 지금 말씀하신 거랑 제가 기억하는 전화 통화 내용은 좀 다릅니다. 세 번의 전화 통화 내용을……

○용혜인 위원 보고도 전파도 안 했다 맞습니까?

○증인 이한울 예, 맞습니다.

○용혜인 위원 재난 상황 발생 시에 자연재난과의 임무가 뭡니까? 어떤 역할을 하지요?

○증인 이한울 자연재난이 발생하면 기상 상황 기준에 따라서 재대본을 가동합니다.

○용혜인 위원 그렇지요? 재대본 가동을 하지요. 그 재대본 가동 왜 합니까? 재난 상황의 전파와 보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그를 통해서 재대로 된 상황 판단을 해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재난 상황의 전파와 보고가 당시에 이한울 증인의 임무였습니다.

매뉴얼 보시면요, 넘겨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면)

자연재난과가 비상 1단계부터 상황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지사, 행정부지사, 재난안전실장에게 긴급한 보고가 필요하면 수시로 그리고 상황근무자가 즉시 보고하라 이게 재난안전의 담당자인 증인이 아마도 수도 없이 읽었을 현장조치 매뉴얼의 내용입니다. 정부 풍수해 위기관리 표준매뉴얼부터 여러 지자체의 비상대응계획까지 다 똑같아요. 중대본과 재대본이 가동되면 팀장, 과장, 국장은 물론이고 필요하면 소관기관의 장한테까지 직접 재난 상황을 전파하고 보고하는 것이 기본적인 업무의 프로세스입니다.

다.

그런데 이게 어느 날, 오늘처럼 맑은 날에 갑자기 제방이 터지고 무너진 게 아니라 재대본 비상 3단계까지 격상된 상황이었고요, 참사 당시에 자연재난과가 비상 동원이 되고 있었어요. 재대본 회의도 6시 20분부터 실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재난 상황에서는 기상 특보든 신고 전화든 어떤 정보든 업데이트되는 대로 즉각적으로 전파하고 보고하는 게 중인이 하는 업무의 원칙입니다. 그게 자연재난과가 수도 없이 해 왔던 기본적인 업무예요. 그것 하라고 자연재난과가 있는 겁니다. 그것 하라고 비상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난 상황에 대한 모든 정보가 수합되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보고도 전파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이 자연재난과는 상황관리 총괄 업무를 하는 부서고 재난 상황에 대한 모든 정보가 수합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전날 17시에 홍수주의보 발령, 참사 당일에 4시 10분 홍수경보 발령 그리고 행복청의 상황 전파와 전화까지 다 자연재난과로 간 거고 중인이 전화를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보고도 전파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건 재난안전공무원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직무유기애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파면 수준의 징계는 물론이고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다시 재수사받아야 하는 사안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증인 이한울** 제가 당시 받았던 전화 내용은요……

**○용혜인 위원** 전화 받았던 것에 대해서 위로 보고와 전파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참사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하지 않았고 그것을 해야 되는 일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본인은 충북도지사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와 별개로 그 업무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무유기애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처벌받아야 하는 겁니다. 보고를 했는데 조치를 하지 않았다와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증인이 져야 되는 책임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위원들이 증인한테 제대로 솔직하게 답변해라, 거짓말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증인이 하고 있는 진술들, 방금 한 진술들까지 위증의 가능성에 굉장히 높다고 판단하고요. 이에 관해서 수사기관의 수사와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회 차원의 위증 고발을 검토해 주실 것을 양당 간사님들께 요청드립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지난주에 현장조사 당시에 정진훈 충북 자연재난과장이 참사 당일에 재대본 회의에 소방은 들어왔고 경찰은 안 들어왔다, 참석자 명단 제출하겠다, 참석 여부 확인 받아서 관리한다고 윤건영 간사님 질의에 답변했습니다. 당시의 자연재난과장이 아니고 지금 자연재난과장이기 때문에 당시 재대본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고요. 이런 사람이 경찰과 소방의 참석 여부를 알고 있다는 건 당연히 참석자 명단이 존재하고 그것을 지금 현 자연재난과장이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충북이요 일주일 동안 저희 의원실에서 전화했는데 전화 안 받고 자료제출 거부하다가 제가 오늘 이 국정조사 자리에서 요구를 하니까 점심때 들어가서 전화를 했더니 담당자가 자리에 없대요. 점심 먹으러 갔나 보지요, 청문회가 진행 중인데?

그러다가 전화 연결이 돼서 ‘최근 회의랑 착각해서 말한 거다’ ‘윤건영 위원한테 저렇게 이야기한 것과 별개로 참석자 명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 위원

들을 현장에서 기만하고 그 순간만 모면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행위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고서야 이런 비상식적인 행동을 베젓이 조사 과정에서 자행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영빈 증인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잠시 시간 멈춰 주세요.

증인, 혹시 수사 과정에서 참사 당일에 재대본 회의 참석자 명단, 보고자료, 영상회의록 다 확보하셨습니까?

○증인 박영빈 제가 확인한 건 없습니다.

○용혜인 위원 확인 안 하셨습니까? 그러면 아주 기본적인 대응에 대해서도 확인 안하고 수사를 마무리하셨다는 거네요?

○증인 박영빈 그 부분은 수사팀에서 했을 수는 있어도 제가 그 부분을 직접 확인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용혜인 위원 수사기관에서 확보했습니까, 이 내용들?

○증인 박영빈 재대본 회의 참석자는 있을 겁니다.

○용혜인 위원 충북에서는 참석자가 없대요, 참석자 명단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충북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겠지요, 지금 국회에?

○증인 박영빈 회의를 했으면 참석자는 있을 겁니다.

○용혜인 위원 충북이 검찰에도 제출한 자료를 국조특위에는 은폐하려고 허위 보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국회 행안위 차원에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 재대본 회의가 왜 중요한지는 알고 계실 겁니다. 미호강 범람 위험을 충북도지사가 보고를 받았는지, 중대재해처벌법상의 경영책임자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 단서이기 때문인데요. 이런 자료를 수사 과정에서 당연히 확보하셨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확보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지요?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증인 박영빈 예.

○용혜인 위원 그런데 이것을 확인했다면 보고받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셨겠네요?

○증인 박영빈 예, 보고체계는 확인했고 보고 여부도 확인했습니다.

○용혜인 위원 보고 안 됐다라고 확인하신 거예요?

○증인 박영빈 충북도지사까지는 보고가 안 됐습니다.

○용혜인 위원 그러면 어디까지 보고가 되었습니까?

○증인 박영빈 이한울 주무관에서 멈췄고 그 후에 자연재난실장이나 과장, 팀장에게는 보고가 안 됐습니다.

○용혜인 위원 저는 이한울 증인의 증언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만 이한울 증인의 증언이 사실이고 증인의 증언이 사실이라고 생각하면 이한울 증인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기소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람이 몇 명이 사망한 참사인데?

○증인 박영빈 그 부분을 저희가 기소유예로 했던 부분이 위의 상급자들을 처벌하는

점 그리고 하급자의 지위에 있는 점도 감안했는데 그 부분은……

○용혜인 위원 참사, 재난 상황에 대한 보고와 전파가 기본적인 업무고 그게 가동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상자가 난 겁니다.

○증인 박영빈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용혜인 위원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고 유예하고 넘어갔다는 것에 대해서 희생자들과 유가족들과 생존자들이 납득할 수 있겠어요?

○증인 박영빈 그 부분의 판단은 수사팀에 전달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혜인 위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이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건영 용혜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달희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이달희 위원 오늘 청문회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입니다.

본 위원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직접 원인은 하천 제방 붕괴라고 생각합니다. 미호천 제방 붕괴를 막지 못한 담당자들의 업무 그리고 시스템 매뉴얼의 보강에 대해서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시간 좀 멈춰 주시고요.

조희송 전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장님, 그 앞자리로 지사님 옆에 좀 앉아 주시고. 주식회사 이산의 이현상 대표님, 저 자리 가서 좀 앉아 주시겠어요?

조희송 전 청장님, 미호천 하천 점용 허가는 어디에서 합니까?

○증인 조희송 하천 점용 허가 이번 건에 대해서는 최초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했고요. 두 번째까지 그렇게 했고, 세 번째 하천 점용 연장 허가는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했습니다.

○이달희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PPT 보시면 구 제방이 노란색이고 빨간 실선이 신 제방 공사입니다. 그렇지요?

○증인 조희송 예, 맞습니다.

○이달희 위원 2021년 충북선 오송-청주 간 미호천교 교량공사와 관련하여 하천 점용 허가 변경 신청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증인 조희송 예, 그렇습니다.

○이달희 위원 허가신청 서류를 보면, 한번 보시지요. PPT 보시면 기존 제방 시설 일부 변경 내용으로 오른쪽에 보면 기존 제방 선형 조정과 제방 높이 하향 조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증인 조희송 예, 그렇습니다.

○이달희 위원 그런데 현재 환경부 주장은 충북선 미호철교 공사는 하천 점용 허가 시에 제방 관련 부분이 명시되어 있고 참사가 발생했던, 아까 말씀드렸지요. 철교 하나, 대교 하나 두 개 다 공사를 했는데 철교에는 명시가 되어 있고 참사가 발생했던 미호대교

공사에는 점용 허가에 제방에 대한, 절개에 대한 그런 부분이 누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증인 조희송 예, 그렇습니다.

○이달희 위원 현장에서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당시 감리를 맡았던 이산의 이현상 사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증인 이현상 예.

○이달희 위원 충북선 미호철교 공사를 했던 시공사와 달리 금호건설은 하천 점용 허가 신청 시에 제방 절개 부분을 명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증인 이현상 위원님, 저희가 감리나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실시설계도서를 관리청으로부터 받아서 시공과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교량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도로 점용 허가를 받고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하게 됩니다. 도로구역 결정고시에는 도로구역 안에 들어가는 행위들, 예를 들어서 하천을 점용한다든지 산림을 점용한다든지 농지를 점용하는 거는 발주청과 실시설계 설계사가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인허가 사항을 의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실시설계 도면을 받았을 당시에, 저희가 최근에 또 검토를 해 본 결과 기존 제방이 신설 교량보다 높았습니다. 제방 절개가 없이는 공사 자체가 불가능했고요. 또 실시설계 도면에는 제방 절개와 기타 등등이 포함이 돼 있었고 대전청과 행복청은 그것에 대해서 협의를 한 것으로 저희는 받았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신설 교량의 교각이 즉 기둥을 기존 제방 위에, 기존 제방 가운데에 설치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도면을 보시면 기둥을 설치하고 나서 하상까지 정리하는 것으로 실시설계 도면에 되어 있었습니다.

○이달희 위원 도면에 절개가 나와 있지요?

○증인 이현상 예, 흙깎기와 내역도 다 있고요.

○이달희 위원 그런데 도면의 설계도를 보면 대표님처럼 전문가들은 ‘아, 하상에 이런 절개를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비가 오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아야 되지요?

○증인 이현상 절개가 된 상태에서 임시제방의 필요성을 느껴서 실정보고를 통해서 행복청과 또 금강유역청의 협의를 통해서……

○이달희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철교공사 설계도에는 그게 아까 보신 것처럼 정확하게 한글로 누가 봐도 전문성이 없는 공직자……

지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공직자들 인사이동도 많고 거기에 관련된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 설계도만 딱 보면 알 수 있는 전문가만 그것을 보지 않습니까?

○증인 이현상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의 부분에 포스코건설이 시공하고 있던 철교는 거기도 제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방이 원 설계도면하고 다르게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동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이동을 하다 보니까……

○이달희 위원 그래서 변경할 때 설계도면에 정확하게 선형 변경을 하고 하상을 높여야 된다고 이런 여러 가지가 아까 보신 것처럼 정확하게 적시가 되어 있었는데 미호대교 도로 공사할 때는 그게 그냥 설계도면 던져 들어가 있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것

입니다. 철교공사에는 정확하게 적시되어 있어서 누가 봐도 ‘아, 이게 제방에 대해서 이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걸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대교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미숙했다는 겁니다. 청장님 맞습니까?

○증인 조희송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달희 위원 현장에 가서 들은 얘기가, 정확하게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공직자들이 그동안 여섯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이 담당 공무원들이. 순환 보직이 있거나 그러면 이를 계속 관리해 가야 되는데 그러면 첫 번째 단추부터 잘 끼워야 된다는 거지요. 허가할 때 정확하게 적시가 돼서 그 누가 봐도 인수인계할 때 정확하게 되어 있는 설계도면에 적시가 명확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인수 인계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해야 이런 사고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청장님, 혹시 하천 관리 환경청에서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증인 조희송 금강유역환경청 말씀이신가요?

○이달희 위원 예.

○증인 조희송 2024……

○이달희 위원 금강유역 아니라도 하천 관리를 하려면 이 허가 내는 전문 공직자가 전문성이 있습니까? 한글로 안 적혀 있어도 설계도면만 봐도 이거를 다 알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지금 허가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아니지요?

○증인 조희송 물론 이제……

○이달희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안전관리는 공직자들 순환근무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설계도에 의한 허가가 돼야 되고 두 번째, 전문성이 떨어지면 전문성 보강을 위한, 환경청이 하천 관리 업무를 맡아 갔으면 공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를 배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건영 이달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제주 서귀포시의 위성곤 위원입니다.

이번 오송참사는 한편으로 보면 침수 위험에 대한 명백한, 사전에 명백하게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 대처하지 않은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북도는 재난시스템 및 매뉴얼을 만들고 예산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궁평지하2차도가 침수에 위험하고 취약하다는 점을 명백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살펴보면 궁평2지하차도가 미호강과 병천천 합류 지점 인근에 위치하여 범람 시 침수 위험이 높은 곳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충북도 스스로 침수 취약 지하차도로 선정·분류하고 있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또한 충북도는 궁평2차도의 구조적 취약성과 침수 위험성을 근거로 해서 2020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행안부에 자동진입차단시설 설치를 위한 특별교부세를 요청을 했습니다.

2023년 신청서에는 잦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우려가 있으며 과거 범람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명시하여 스스로 위험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 6월 행안부로부터 7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았습니다.

또한 충북도는 2023년 여름철 재난 대비 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계획에 따르면 궁평2지하차도는 침수 우려 취약도로로 지정하며 수시 확인 및 순찰 강화 등 집중 관리를 하겠다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2023 재난안전관리계획을 통해 충북도는 침수 취약시설에 대해 자동차단시설 설치계획이 필요하다고도 명시를 했습니다.

도지사님, 이번에 저희 국정조사단이 충북도를 방문해서 재난상황실을 방문했습니다. 재난상황실에 CCTV가 없더라고요. 그렇지요?

○증인 김영환 재난상황실에서도 CCTV가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지하차도를 볼 수 있는 CCTV가 없어요.

○증인 김영환 지하차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충청북도 전역의 시군구의 그런 거를 볼 수는 있는데 그렇게 지금 많으니까 그거를, 사백몇 개나……

○위성곤 위원 볼 수가 없지요? 아니, 볼 수가 없잖아요.

지하차도 CCTV를 볼 수가 없었어요, 저희들의 현장 확인 결과.

○증인 김영환 그 차도는 볼 수가 없지요, 거기서는. 재대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위성곤 위원 재대본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방문한 곳이 상황실 아니에요?

○증인 김영환 거기는 CCTV는 있는데 궁평차도 같은 데가 수백 개가 되니까 거기에는 없다고……

○위성곤 위원 볼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증인 김영환 말씀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볼 수 없지요?

○증인 김영환 거기에서 궁평차도는 볼 수 없습니다.

○위성곤 위원 볼 수 없지요?

○증인 김영환 예.

○위성곤 위원 그것 왜 그렇게 관리하셨어요?

○증인 김영환 그거는 너무 많은 곳이, 충청북도 전역이 그런 곳이 수백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볼 수는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위성곤 위원 저희가 자료를 다른 시도로부터 상황실 관련되어진 상황을 다 받아 봤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전부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사가 지난 지 2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시설 개선을 안 하고 있어요. 그것은 중요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것을 지키기 위한 재난 대비의 태세 이런 것에 대해서 지사의 인식이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증인 김영환 이 체계를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재난안전실장이 조금 얘기하면 안 되

겠습니까?

○**위성곤 위원** 체계가 아니에요. 잠깐만요. 체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없잖아요. 그렇지요, CCTV가?

○**증인 김영환** 중요 부위는 있는데 그 전역을 그렇게 한곳에서 보시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위성곤 위원** 그곳에 사고 난 것이 그렇게 인식하고 계셔서 이번 사고가 났다고 저는 주장하는 거예요. 충북도가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사님의 사고처럼 사고했기 때문에 결국 이 사고가 발생했다.

상황실 관리를 보겠습니다. 이 한울 주무관이 이러저러한 판단들을 했다고 합니다. 재난·안전관리를 하는 그 긴급한 순간에 공직자들이 그러한 태도로 일을 했어요. 누구 책임입니까? 개인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충북도의 책임입니까, 지사를 떠나서? 시민들은 충북도에 책임을 묻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상황실 관리 엉망이었다, 동의하십니까?

○**증인 김영환** 제가 여기에서 일일이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위성곤 위원** 아니, 제 얘기에 동의하시냐고요.

○**증인 김영환** 동의하지 않습니다.

○**위성곤 위원** 동의하지 않아요?

○**증인 김영환** 예.

○**위성곤 위원** 그런 주무관을 그 자리에 두고도, 그런 상황을 대처하게 하고도 그것이 잘못이 없다? 그거 지도자로서 실질적으로……

○**증인 김영환** 잘못이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위성곤 위원** 잘못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증인 김영환** 아니, 그 재대본이 그렇게 엉망진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위성곤 위원** 엉망진창이잖아요. 행복청의……

○**증인 김영환** 위원님의 그 말씀을 제가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성곤 위원** 잠깐만요. 제 이야기를 들으세요.

행복청의 주무관이 네 차례에 걸쳐서 중요한 사안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달을 상부에 단 하나도 보고하지 않은 것 지휘·감독 책임 아닙니까? 아니에요?

○**증인 김영환** 제가 이거를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좋은데 필요치 않다고 또 그렇게 말씀하실 것 아닙니까?

○**위성곤 위원** 설명 듣고 싶지 않습니다.

행복청장님……

○**증인 김영환** 그러니까 수만 쪽의 자료와 수만 쪽의 판결문과 또……

○**위성곤 위원** 충북도지사께서는 부끄러움을 모르세요.

○**증인 김영환** 아니, 부끄럽습니다. 부끄럽고……

○**위성곤 위원** 지도자로서 상황 지도를 하나도 하지 않았잖아요.

○**증인 김영환** 제가 그런……

○**위성곤 위원** 도대체 무엇을 하신 거예요, 그 시간 동안? 도민들과 국민들을, 지사께 묻는 것입니다.

○증인 김영환 최선을 다했지만 위원님이 그렇게 짧은 시간에.....

○위성곤 위원 그 시간에 지사가 지휘·감독하지 아니하고 도대체 무얼 했는가, 무얼 준비했는가, 그런 직원들을 왜 거기에 배치하고 일을 했는가, 거기에 있는 재난안전관리과장·팀장, 재난대책본부의 본부원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 이 지휘·통솔이 제대로 됐는가. 안 됐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국민들께 사과를 해야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것을 하지 못한 책임에 대해서.

○증인 김영환 책임도 사과하고 또 도의적·정치적 책임이 있다고 수없이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위성곤 위원 최소한의 개선도 안 했잖아요, 2년이 지났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CCTV를 재난상황실에서 다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췄는데 충북도는 그것도 갖추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많은 분이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될 거잖아요!

○증인 김영환 제가 좀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면.....

○위성곤 위원 말씀하세요.

○증인 김영환 재난안전본부도 있고 도로공사도 있고 여러 곳에서 CCTV를 분산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청의 한곳에.....

○위성곤 위원 그래서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는데 그게 그대로 유지돼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윤건영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 김영환 한곳에 1200km가 넘고 또 400개, 500개의 재난·중대재해, 재난에 관련된 업소를 한 군데서 볼 수는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지 그것을 볼 수.....

○위성곤 위원 다른 시도는 다 보고 있다고 말씀하는데.

○증인 김영환 그거 이제 사실을 알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다 받았어요, 서면으로.

○위원장대리 윤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 박영빈 증인 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증인, 지금 현직 지검장이신데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그때 오송참사 때 경찰관들 기소 너무 많이 하신 것 아닙니까?

45명 중에 경찰관이 14명이거든요. 그중에 참사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상과실치사상은 4명이고 10명이 허위공문서작성이거든요.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박영빈 경찰관 기소 부분은 제가 청주에 오기 전에 이미 이루어진 부분.....

○이상식 위원 아니, 그러면 이루어진.....

그거 평가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거 사실 별건이지 않습니까? 물론 뭐 허위공문서작

성은.....

○증인 박영빈 직접적인 관련자들도 있고 거기에 이제 그.....

○이상식 위원 4명만 있고, 4명이 업무상과실치사상이고 10명은 허위공문서작성이라니까요. 균형이 맞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증인 박영빈 예, 그 부분 기소가 돼서 재판 중에 있습니다.

○이상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기소한 거를 묻는데 또 재판받은 거를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좋습니다.

저는 이게 왜 이렇게 경찰만 너무 과대하게 기소가 됐나 한번 보니까요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관계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PPT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면)

이게 사건이 7월 15일 날 발생을 했는데 7월 17일 날 재난대책회의를 합니다. 이때 윤 대통령이, 윤석열이 경찰을 강하게 질책합니다. 저번 기관보고에서 당시 윤희근 경찰청장도 그거를 인정을 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존경하는 야당 위원 한 분이 수사 가이드라인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저런 게 수사 가이드라인이라고 보거든요. 저게 그다음에 절차 하나 하나 빛의 속도로 움직입니다.

당일 날 오전에 회의하고 질책을 하자마자 오후에 총리실 감찰단에서 20명이 현지로 내려갑니다. 제가 총리실에서 민정실장으로 근무를 했는데 총리실은 원래 어떤 사안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내려가 가지고 감찰을 했고.

그다음에 맨 처음에는 충북청 수사부장이 본부장이 돼서 수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며칠 있다가는 서울청 광역수사단에서, 그러니까 충북청에서 자기 소속기관으로 하면 공정성을 잃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것까지 이해가 되는데 그다음에 또 총리실에서 감찰을 해 가지고 한 4일 만에 여섯 명 경찰관을 맨 먼저 검찰에 고발하는 것을 기화로 검찰이 이제 수사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저런 것을 봤을 때 윤석열이 그때 질책을 강하게 했는 데는 무슨 이유가 있지 않을까. 본인도 알 거예요.

아니, 경찰이 무슨 일차적인 책임이 있습니까? 일차적인 책임은 제방 붕괴하고 교통통제 못한 것에 있는데 그렇다면 그 책임은 다른 기관에 있고 경찰이 뭐 부차적인 책임은 질 수 있습니다.

지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박영빈 저희는 당시에 국무조정실에서 수사 의뢰가 왔고, 경찰관에 대한 범죄에 대한 수사개시권이 있어 가지고 수사를 개시했고, 그 뒤에 저희가 압수수색을 먼저 진행한 부분이 있어서 법에 의해서 그 뒤에 수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자세한 경위는 제가 말하기, 알 수가 없습니다.

○이상식 위원 당시에 우리 경찰관들이 강하게 반발을 했거든요. 순찰차의 블랙박스 다 스스로 공개하고 하면서 그렇게 했고, 제가 듣기로는 거기에 지금 증인이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흘러나온 이야기로는 검찰이 현장 경찰관을 상대로 굉장히 고압적인 수사를 했다고 듣고 있거든요.

○증인 박영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한 거나 보고를 받은 바는 없습니다.

○이상식 위원 보고를 할 리가 없고 제가 보기에는 증인도 지금 현직의 신분에 있기 때문에 뭐 답변하기가 상당히 좀 애매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저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거를 보니까 누구를 봐주기 위해서 수사 방향을 정하고 누군가를 관심을 돌려 가지고 진짜 잘못한 사람들은 봐주고 애매하고 애꿎은 현장에 나가 있는 경찰관들만 뒤집어쓴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비슷한 사건이 또 있었거든요.

증인, 채 해병 사건이라고 들어보셨지요, 채 해병 사건?

○증인 박영빈 예.

(윤건영 간사, 신정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식 위원 그 사건에서 윤석열이 격노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경찰을 강하게 질책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여기에 주목하는 부분이 유사한 게 수사 주체가 계속 바뀝니다. 맨 처음에는 충북청 그다음에 서울청 그다음에 검찰.

채 해병 사건에는 어땠습니까? 맨 처음에 해병대수사단 그다음에 경북청, 경찰청 그다음에 다시 군검찰 이렇게 바뀌는 과정에 윤석열의 격노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지금 이 사건에도 분명히 저는, 물론 증거를 찾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강제수사를 할 수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이렇게 상상을 하면 뭐든지 상상 이상의 것이 되는 게 윤석열 정권이었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서 충분히 합리적인 추론을 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증인, 노승일 충북경찰청장 그때 기소하셨거든요. 그런데 충북청장은 어떤 이유로 기소를 하신 겁니까? 본인이 이야기하기로는……

○증인 박영빈 김교태 청장……

○이상식 위원 예, 김교태 청장.

○증인 박영빈 재난상황실을 실제 운영하지 않았음에도 그 당시에 재난상황실을 선제적으로 운영한 것처럼 허위 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혐의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식 위원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저는 부하들의 행위에 대해서 저희 책임을 겼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똑같은 논리가 충북지사에게도 적용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박영빈 그 부분은 지금 재판 중에 있는 사항이라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식 위원 증인, 지검장님, 제가 지금 재판 중에 있다고 답변 못 하는 것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고요. 검찰 고위 간부로서 본인의 소신을 한번 말씀해 보시라 이겁니다.

○증인 박영빈 허위 문서인 것을 인식하고도 국회에 제출하라 그랬다면 당연히 범의가 인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식 위원 오케이했다고 본인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상적으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누군가 봐주기 위해서 그랬다고 생각을 하는데 존경하는 채현일 위원께서는 지금 이동욱 행정부지사를 이야기하고 저는 저번 기관보고 때는 이상래 행복청장을 좀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그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저도 법

집행기관 출신이기 때문에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책임이 없어지거나 진실이 가려지거나 하지 않다. 제가 보기엔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질의는 다시 하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이상식 위원님이 ‘우리 경찰’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속기록에 삭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식 위원** 그것은 제 말버릇입니다.

○**박덕흠 위원** 속기록에는 삭제……

○**위원장 신정훈** 다음은 모경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경종 위원** 질의에 앞서서 이상래 전 행복청장님하고 조회송 전 금강유역환경청장님 마이크 앞으로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인천 서구병 검단에서 온 모경종입니다.

앞서 많은 질의가 이루어지면서, 신문이 이루어지면서 누가 잘못했는지 이런 걸 떠나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국정조사에 임하시는지를 국민들께서 보고 계신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래 전 행복청장님!

○**증인 이상래** 예.

○**모경종 위원** 행복청은 이번 교량공사, 그러니까 다리 공사를 위해서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하천 점용 허가를 득해서 한 거지요, 당연하지만?

○**증인 이상래** 예, 맞습니다.

○**모경종 위원** 그 과정에서 행복청은 금강청에다가 기존 제방을 철거한다 이 사실을 알렸습니까?

○**증인 이상래** 그 문제는 제가 취임하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고요.

○**모경종 위원** 알고 있는 대로 대답해 주십시오.

○**증인 이상래** 문서에는 명확히 그런 게 없다 그러지만 사전 협의가 많이 이루어졌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모경종 위원** 어쨌든 공문으로 알리지 않았다는 게 사실이지요?

○**증인 이상래**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난감합니다.

○**모경종 위원** 지금 화면을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 보면 이게 행복청 공문인데요. 여기에 보면 그 어디에도 하천 제방을 없앤다, 기존 제방을 철거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행복청은 시공회사가 2021년 11월, 그러니까 약 2년 전에 하천 제방 약 40m를 불법으로 철거한 사실은 알고 계셨나요?

○**증인 이상래** 제방을요?

○**모경종 위원** 예.

○**증인 이상래** 불법으로 철거했다고 인식을 못 한 걸로 들었습니다, 저는.

○**모경종 위원** 전혀 인식을 못 했다?

○**증인 이상래** 예.

○**모경종 위원** 그러면 다음 공문 보시지요. 2022년 9월 5일, 여기를 보면 노란색으로 제가 칠해 놨는데 ‘임시 제방 축조’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 사실을 인지를 한 건데 이 이후에 제방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또는 부실 제방인지 아닌지도 파악을 못 하고 있었다는 소리네요?

○**증인 이상래** 제가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 여러 차례 답변을 드렸는데요. 발주청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시 감독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모경종 위원** 그런 사족은 안 다셔도 되고요.

○**증인 이상래** 아니, 법률에 그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모경종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발주청이니까 그런 논쟁으로부터 자유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증인 이상래** 건설기술진흥법의 취지가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모경종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증인 이상래** 예.

○**모경종 위원** 행복청이 이 사실을 인지했든 안 했든 간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일단은 발주청이라는 그 책임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요. 관리 감독 책임이 부실했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로 옆의 미호철교, 한마디로 철도가 지나는 미호철교 충북선을 보면 여기에서는 ‘하천 제체 안정 및 공사기간 단축을 위한 교량 가시설 및 기존 제방시설 일부 변경’이라고 명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결국은 공공기관은 공문으로 서로 대화를 하는 것이지 서로 구두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국가철도공단에서 내놓은 이 공문에는 엄연하게 들어가 있는, 바로 옆에 있는 지역인데도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공문에 적혀 있지 않다는 것은 결국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복청은 재난관리 주무기관이 아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법상 발주청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대답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조희송 전 금강청장님, 2022년 1월 그러니까 사고가 나기 한 1년여 전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하천관리 업무를 이관받으셨지요?

○**증인 조희송** 맞습니다.

○**모경종 위원** 금강청은 이런 지역에서 이런 공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위험 사실을 인지했습니까, 못 했습니까?

○**증인 조희송** 제방이 절개되었다는 사실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모경종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방 절개 이전에 이 지역이 홍수취약지구인 것은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까?

○**증인 조희송** 그게 제방이 훼손되지 않았으면 홍수에 취약한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모경종 위원** 그 기준은, 그 근거는 무엇이지요?

○**증인 조희송** 그러니까 계획홍수위보다도 기준, 사고가 난 제방이 강외2제인 데요. 여

유고라든지 그 당시 계획홍수위를 커버하고 충분히 남을 수준의 그런 제방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고 비가 왔을 때도 다른 곳은 문제가 없었고 이번에 절개하고 임시제방 축조한 곳 그쪽에서 문제가 생겼고요. 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모경종 위원** 충북도지사님, 미호강 사고가 난 이 지역은 홍수가 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고는 충북도에서 파악하고 있으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특교세 신청도 시도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증인 김영환** 거기 침수지역하고 제방 붕괴 또는 범람, 월류하고는 전혀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만든 이 제방은 한 번도 넘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미호천 근방의 임시제방 부분을 500m로 되어 있는 것을 병 모가지로 350m로 줄인.....

○**모경종 위원** 그러니까 지사님.....

○**증인 김영환** 이 병 모가지 부분에서 이것 절개를 하고 그리고 그것이 진행됨으로써 문제가 된 거지.....

○**모경종 위원** 그건 제가 알겠습니다.

○**증인 김영환** 제방 자체가 한 번도 넘친 적이 없고요. 그런 면에서 침수지역이라고 우리가 정한 적이 없는데 이번 사고 나고 난 이후인 9월 22일에 침수위험도로로 지정을 했습니다.

○**모경종 위원** 아니, 아니요. 그 전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청주시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증인 이범석** 예.

○**모경종 위원** 그 지역이 월류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혀 파악을 못 했었나요, 그 전에는?

○**증인 이범석**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제방이 범람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놓지 침수는 가끔 있었던 지역입니다.

○**모경종 위원** 이렇게 무책임한 대답들을 국민들이 듣고 계십니다.

제가 한 가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제방이 있지요? 제방이 있었지요, 물론 그걸 잘라냈지만? 거기 제방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두 물줄기가 합쳐지는 합수구역이기 때문에 제방을 설치해 놓고 그동안 관리해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거기가 침수 위험이 전혀 없고 그동안에 뭐, 일제시대 이런 걸 운운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야기드리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청주시가 됐건 충북도가 됐건 예전에 아무 일도 없었으니까 문제가 없다가 아니라 더욱더 선제적으로 그리고 그 지역에 제방이 있는 이유 자체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어야지요.

○**증인 김영환** 제가.....

○**모경종 위원** 행복청이나 하천관리청인 금강청 사이에 제방 철거 같은 일을 벌이는데도 몰랐고 그 전에도 아무 문제가 없었으니 우리는 책임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태도는 정말 문제가 많은 겁니다.

제가 다음 카카오맵, 카카오지도 들어가 보면 그 지역에 대해서 지금도 예전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인이 봐도, 아무런 지식이 없는 사람이 봐도 문제가 있는데 그 지역

의 행정을 책임지시는 분들이 그렇게 무책임한 태도로 대답하시면 어떡합니까?

이따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다음은 이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권 위원 행안위의 오송참사 국정조사를 쭉 보면서 이번 오송참사는 자연재해의 사전 예방적 그리고 또 사후적인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 사회적인 인재가 같이 복합된 복합참사라는 게 아마 우리 여야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해야 될 조치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조금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책임자를 적발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쪽으로만 너무 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게 제도적이거나 구조적 문제들이 뭔지를 찾고 대비책을 마련하는 게, 그래야만 다시 똑같은 동일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데 국회의 분위기가 너무 책임자를 적발하고 처벌하는 데만 맞춰진 것 같다라는 아쉬움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는 국회의원을 하기 전에 일본에서 유학도 하고 일본에서 또 정부 공무원으로 일을 해 봤기 때문에…… 일본은 태풍이나 지진, 쓰나미, 폭염, 폭우, 우리보다 훨씬 많은 자연재해가 닥쳐오는데 우리와 같은 식으로 해법을 찾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에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그다음에 이태원참사나 세월호, 이런 많은 사회적 참사를 겪어 왔지만 똑같은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너무 사람의 문제에만 천착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처벌만 따지다 보니까 재발이 되는 양상이 좀 있다라는 게 제가 어느 정도 비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정리를 해서……

○이해식 위원 발언을……

○이성권 위원 아니, 책을 낸 게 있어요. 다음에 위원님한테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책임자 적발과 처벌하지 말자는 의미가 아니고 복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는 거고요.

○이해식 위원 국가 간 평가나 이런 건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성권 위원 아니요.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적인……

○이해식 위원 국민들에 대한, 국민성이라든지 그런 평가는 하시지 않는 게……

○이성권 위원 제 질의 시간입니다. 제 질의 시간이고, 제가 우리 사회적인 분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식 위원 그걸 뭐 위원님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요.

○이성권 위원 아니, 잠깐…… 저하고 지금 질의응답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이한울 주무관님 잠깐만 나오시지요.

주무관님은 자연재난과에 근무하는 직원 맞지요?

○증인 이한울 그 당시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이성권 위원 그렇지요. 직렬이 뭐지요?

○증인 이한울 그때 당시에 방재 8급이었습니다.

○이성권 위원 방재안전직렬이지요. 그렇지요?

○증인 이한울 예.

○이성권 위원 그리고 지금 이한울 주무관에 대해서 책임을 따지는 부분이 많고 저도

공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초동에 있어서 많은 메시지나 전화를 받았는데 전파하지 않은 부분들은 이 직렬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으로 봤을 때 충실하게 자기의 직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평가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기관에서 진위 여부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질 수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요?

○증인 이한율 예.

○이성권 위원 들어가시지요.

그래서 개인에 대한 부분들은 수사기관에서 진실과 관련된 부분들을 충분히 찾아낼 것이고 또 법적 책임들은 당사자들이 질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사님, 방재안전직렬 공무원 관련된 제도가 언제 도입됐는지 아세요?

○증인 김영환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성권 위원 2013년도에 도입이 됐습니다.

지금 충북도에 재난안전실이 있지요?

○증인 김영환 예.

○이성권 위원 직원들이 몇 명인지 아세요?

○증인 김영환 30명 정도…… 아닌가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성권 위원 지사님, 본인이 관리하고 있는 재난안전실의 직원이 몇 명인지를 모른다는 게 그것도 좀 답답한데요.

○증인 김영환 자꾸 변화를 하고 또……

○이성권 위원 재난안전과에 30명이 있고 사회재난과에 23명, 자연재난과에 25명 해서 전체 78명이 있습니다.

○증인 김영환 계속 늘어나고 있고 보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성권 위원 78명인데 이 78명 중에서 재난안전 직렬의 공무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증인 김영환 7~8명쯤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성권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김영환 8명 되는 걸로 지금……

○이성권 위원 7~8명입니다. 그렇지요?

○증인 김영환 예.

○이성권 위원 전체 충북도의 공무원 숫자가 1953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 중에서 안전 직렬이 0.3%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재난안전직 공무원 일인당 충북도의 몇 개 읍면동을 커버하고 계신지 아세요?

○증인 김영환 정확하게는 잘……

○이성권 위원 21개 읍면동을 커버하고 인구로 보면 22만 명의 충북도민을 한 명이 혼자서 감당을 해 내야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절한 인원이라고 보십니까?

○증인 김영환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낍니다.

○이성권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PPT 한번 봐 주시면 충북도지사께서 보완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이게 충북

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 PPT에는 지금 안 나옵니다만 전국에 있는 지방직 공무원 중에서 방재안전직 공무원은 914명에 불과합니다. 전체 지방직 공무원 31만 2000명 중에서 마찬가지로 충북도처럼 0.3%에 불과하거든요. 지금 사회적재난이, 자연재난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그 정도로 인원의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표에 보시면 지난 5년 사이에 지방직 방재안전 공무원 숫자가 224명이 증원되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서울·경기·인천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단체 중에서 5년 동안 단 한 명도 증원되지 않은 지자체도 있거든요. 결국은 한 사람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제도적으로 봤을 때 이런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인적인 구조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지도 한번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시점에 온 것 아닌가 이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고요.

아까 서울·경기·인천에 집중이 됐다 했는데 여기 보시면 비수도권이 수도권에 비해서 면적이 9배나 많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인력이 편중돼 있기 때문에 비수도권의 재난 대응과 관련된 인력이 부족한 점도 행안위 차원에서 살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겠고요.

그다음 페이지 PPT를 보시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 난 다음에 재난 안전과 관련된, 방재와 관련된 강조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보면 ‘안전 담당 공무원 책임·권한 모두’, 그러니까 책임과 권한을 모두 강화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만큼의 권한 다음으로 책임을 져야 될 부분들에 대한 부담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 페이지 한번 봐 보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기 보면 전체……

제가 그냥 여기에서 끊겠습니다.

다시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중간할 것 같아 가지고.

### ○위원장 신정훈 1차 질의를 전체적으로 마쳤는데요.

저도 1차 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보는 관점에 대한 차이 때문에 그런지 적발과 처벌을 중심으로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있다 하는 지적에 대해서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지금 이 재난을 얼른 보면 제방 붕괴가 가장 큰 일차적인 어떤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것은 다들 공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방 관리의 책임에 대한 추궁은 상당히 많이 됐고 또 거기에 대한 사법적인 처벌도 충분히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가장 안타까운 게 그것의 책임이 누구냐라고 이걸 떠나더라도 제방 붕괴 이후에 사후 대책에 대한 아쉬움이 아주 커요. 일차적으로 화재가 발생한다 해 갖고 다 타 죽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던 그런 과정이 있었다면 이차적인 대응 역시, 대단히 큰 문제다 이런 측면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김영환 지사께서는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충분히 실시간 통제되고 있었다, 아니면 침수가 시작된 지 단 7분밖에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사실 대처하기

가 불가항력적이었다, 그리고 그런 신고 내용 그러니까 범람이라든가 대피, 교통통제에 대한 필요성을 담당 공무원에게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알고나 있으라고 했다, 왜 그 신고를 받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가 마치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신고가 와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대처를 했다면, 전파가 되고 대피가 되고 교통통제가 됐다면 이런 사고가 나지 않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혹에 대해서 우리가 묻는 거예요. 지사님이 그 문제에 대한 아쉬움도 없어, 제가 보기에는.

그 문제가 좀 더 바르게 전파되고 대비됐다면 이런 사고, 희생이 없지 않았겠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 계획이세요? 이야기는 간단히 해 주세요. 제가 질문 좀, 해야 될 이야기가 있으니까.

○증인 김영환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선 저에게 책임이 없다고 한 적이 없고 또 수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풍수해가 있을 때 우리가 통제하지 않았을까 또는……

○위원장 신정훈 안타깝게 생각하시지요?

○증인 김영환 안타까운 정도가 아니라 한 번도 잊어 본 적이 없지요.

○위원장 신정훈 저는 그 모습이 처음부터 죽 보였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증인 김영환 지금도 그렇고 그런 생각입니다만……

○위원장 신정훈 인정하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이한울과 성흔수 주무관 좀 나와 보세요.

먼저 성흔수 주무관 답변석에 와 보세요.

그 부분을 본인이 진술한 대로 지금 범람의 우려, 대피의 필요성 또 교통통제의 필요성을 분명히 이야기하셨지요?

○참고인 성흔수 예, 청주시 감리단장하고 상황 공유를 하면서 청주시의 동일한 내용으로 충북도에 전파를 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충북도에?

○참고인 성흔수 예.

○위원장 신정훈 자신 있게 이야기하세요.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참고인 성흔수 7시 이전하고 이후에 나뉘어서 이전에는 수위가 올라오니까 바로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게 그리고 교통통제가 필요한 상황을 청주시에도 알리고 있고 도청에도 알려 드린다고 했고 7시 이후에는 아까 전의 대피 준비가 아니라 이제 대피를 해야 된다, 교통통제가 필요하다라고 청주시에 방송이나 앰프, 문자 이런 걸 요청하고 있고 도청도 알아야 된다고 전화를 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그 내용을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어떻게 이야기하셨어요? 똑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셨지요?

○참고인 성흔수 자료를 그렇게 냈고 수사기관에 답변한 취지도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그러면 이한울 주무관 앞으로 좀 나와 보세요.

지금 성흔수 주무관이 이야기하는 그 상황을 여전히 청주시나 경찰에 알렸다 이 내용만 알고 기억이 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어떤 내용을 청주시에다가 알렸다, 이

이야기는 지금 계속 자기는 들은 바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려 7분 동안의 통화 시간이라고 하면 충분히 내용을 숙지하거나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여건인데 왜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계속 기억이 없는 것처럼, 안 들은 것처럼 이야기했어요?

○**증인 이한울** 제가 그 당시 기억하기로는 범람 위험이 있어서 청주시하고 경찰청에 연락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재난문자도 요청했다고 했고 알고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일반적으로 공유성 내용의 전화가 오면 보통 시군 담당자한테 연락해서 말씀을 드려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청주시와 경찰청에 말씀을 하셨다고 했……

○**위원장 신정훈** 저도 자치단체장을 해 봤지만 도의 담당자 그러니까 방재안전직이라고 하는 것은 특수한 직렬이거든요. 그 업무에 특화돼 있는 직렬이라고.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방재안전직을 이렇게 설명해요.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라서 전방위적인 재난안전 업무를 집행하는 담당자를 재난안전직이라고 해요. 시험과목도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증인 이한울** 예.

○**위원장 신정훈** 그런데 청주시에 알렸으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 아무것도 아무한테도 아무 역할도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증인 이한울**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위원장 신정훈** 그러면 어떤 일을 했어요?

○**증인 이한울** 경찰청이랑 청주시라는 초동으로 현장 대응할 수 있는 기관에 연락을 했다고 해서 저는 그쪽에서 대응이 되는 줄 알았고 특이사항이 생기면 상황전파 메신저나 재난통신망으로 전파가 될 줄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아니, 본인이 무슨 역할을 했냐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 그걸 다 지금 인정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이런 강이 범람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침수의 우려가 있다, 대피의 필요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청주시에다 전파를 했으니까 자기는 알고나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더라도 그 상황을 듣고 아무 역할도 안 했다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지금. 국민들이 다 이해가 안 가요.

좋습니다. 그러면 경찰에도 그렇게 진술했어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그렇게 진술했어요?

○**증인 이한울** 예, 검찰 조사에서 그렇게 진술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두 분의 진술이 이렇게 엇갈리는데 경찰에서 그러면 대질신문했어요, 안 했어요?

○**증인 이한울** 대질신문은 따로 없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두 분 들어가세요.

지검장님, 잠깐만 좀……

명백하게 엇갈리는 진술이 있는데 최종 결론은 어떻게 낸 거예요? 최소한 이런 정도 되게 되면 재난의 발생, 경로 과정에서 중요한 진술의 어떤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결론 냈어요? 왜 대질신문도 없이 이렇게 결론 내 버린 거예요?

○**증인 박영빈** 성흔수 주무관은 분명히 침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린 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알린 것 맞습니까?

○**증인 박영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그러면 이한울 주무관이 제대로 지금 진술을 안 하고 있는 거네요?

○증인 박영빈 본인 진술은 지금 진술한 이 진술이, 저희 조사에서도 그렇게 진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성흔수 주무관은 범람 우려가 있고 지금 무너지고 있으니까 대피해야 된다, 지금 당장 대피해야 된다, 교통 통제해야 된다 이렇게 직접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전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한울 주무관, 그것도 방재안전직이라고 하는 전문 특수 직렬이에요. 이걸 전달하는 그것도 소위 말해서 이 직렬에 채용된 자가 무려, 8급이니까 충분히 숙지할 만한 그런 경력이 있는데 왜 이렇게 처리했냐 이 말이에요. 왜 그리고 검찰에서는 그렇게 결론을 내 버렸냐고.

○증인 박영빈 이한울 주무관에 대해서 입건했고 혐의는 인정이 되고 다만 그 부분에 대한 판단에서 다른 공무원들, 상위 책임자들을 기소하는 입장에서 이한울 주무관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하도록 수사팀에 전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대단히 미흡해 보입니다. 이 사건에 위원님들이 계속 그렇게 추궁하고 있는, 지금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 중의 하나가 검찰이 명백한 진술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것 아니냐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증인 박영빈 성흔수 주무관이나 이한울 주무관 충분히 조사를 했고 성흔수 주무관의 경우에는 여러 차례 조사도 마쳤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추후 더 조사하시겠다고 그랬으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시간상 들어가세요.

이연희 위원님.

○이연희 위원 아까 낮에, 오전에 이한울 주무관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제출을 안 했거든요. 자료제출 요청을 강력히 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정훈 지검장님, 기소유예……

그냥 답변석에 앉으세요.

자료제출을 왜 안 하세요?

○증인 박영빈 제가 지금 청주지검에서 그 자료를 제출할 권한이 있는 위치에 있지 않고 청주지검 수사팀에 전달을 했고 대검에 전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대검 답변이 뭐냐를 묻는 거예요, 제가.

○증인 박영빈 지금 대검에서 검토 중에……

○위원장 신정훈 자료제출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증인 박영빈 검토 중에 있는데 제가 들은 것으로는 현재까지 불기소장이 제출된 전례가 없고……

○위원장 신정훈 무슨 소리 하세요, 지금?

○증인 박영빈 제가 들은 바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이 국정조사 상황에서 그것을 제출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국회법이라든가 관련법에 의해서 반드시 제출해야 됩니다. 다시 한 번 조치해 주시고 그 답변을 다시 보고해 주세요.

○증인 박영빈 저는 전달을 할 수 있을 뿐이지 제가 그것을 결정할 위치에 있지는 않

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우리 사무처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지금 대검찰청에 촉구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님 되셨지요?

○이연희 위원 예.

○위원장 신정훈 혹시 윤건영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

○윤건영 위원 자료 안 왔습니다. 자료 없답니다.

○위원장 신정훈 우리 용혜인 위원님은……

○용혜인 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조사에서의 답변과 다르게 자료가 없답니다. 재대본 회의 참가자들의 명단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엉망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다시 확인해 가지고 우리 행정실에서는 위원님들이 제출한 자료가 오지 않는 이유에 대한 법적 근거라든가 그런 상황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신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입니다.

먼저 이해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 위원 이해식 위원입니다.

박준규 실장님, 박준규 증인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위원장 신정훈 잠깐만요. 5분 질의로 돌아오면 원래 순서대로 오는 것인데……

○이해식 위원 먼저 하라 그러시지요.

○박덕흠 위원 먼저 하세요.

○이해식 위원 박 위원님 먼저 하세요.

○위원장 신정훈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원래는 5분 질의가 되면……

○박덕흠 위원 아니, 아까 행정실장님께서 먼저 하라고 얘기를……

○위원장 신정훈 박덕흠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흠 위원 성흔수…… 오늘은 참고인이네, 증인이 아니라. 좀 앞에 앉아 주시고.

검사장님, 지사님 옆에 좀 잠깐 앉아 주시지요. 나오지 말고 거기 옆에 앉으세요.

그리고 우리 이한울 주무관님 잠깐 나오세요.

PPT 좀 띄워 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면)

검사장님, 지금 저기 내용을 보면 ‘임시제방은 충분히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축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위에 보면 아까 제가 ‘단절에 따른 협의사항 검토결과 회신’ 저 내용 보이십니까?

저 내용을 보면 이 제방을 단절한다는 거로 볼 수뿐이 없지 않나요, 제목이, 회신 내용이?

○증인 박영빈 21년 가을에 기존에 있던 제방은 이미 절개가 돼 가지고 훼손이 된 상황이고 그 뒤에는 우기 때마다 임시제방을 임의로 세웠다가 붙였다가 했던 상황입니다.

○박덕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거는 마지막에 온 공문이기 때문에, ‘미호천(미호강 제방도로) 단절에 따른 협의사항 검토결과 회신’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임시제방은 충분히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축조 이 내용을 보면 절개를 하기 위한 단절을 했다는 얘기로 볼 수뿐이 없잖아요?

○증인 박영빈 제방을……

○박덕흠 위원 그다음에 PPT 다시 띄워 보세요.

우리 도종환 위원께서 ‘환경부가 제방을 허물고 임시제방을 쌓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셨어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환경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환경부에서는 이걸 알고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게 아마……

○증인 박영빈 주무기관은 환경부가 아니라 금강유역환경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러니까 환경부가, 그 산하기관이니까. 그래서 이게 좀 의문스러운 점이 있고.

그다음에 성흔수 주무관님, 지금 몇 급입니까, 급수로는?

○참고인 성흔수 6급입니다.

○박덕흠 위원 6급.

그런데 토목직이지요?

○참고인 성흔수 예, 맞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리고 감독이었고요, 거기?

○참고인 성흔수 예.

○박덕흠 위원 상황 전파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황설 근무자가 아니라 감독을 하고 있었던 거지요?

○참고인 성흔수 예, 오송……

○박덕흠 위원 그 현장에 좀 나가 봤습니까? 이 사고 터지기 전에 현장에 몇 번 가 봤어요?

○참고인 성흔수 현장에 한 네다섯 번 정도 갔던 걸로……

○박덕흠 위원 네다섯 번 갔지요? 가면 거기 절개가 돼 있는 걸 봤을 거 아닙니까?

○참고인 성흔수 예.

○박덕흠 위원 봤어요, 안 봤어요?

○참고인 성흔수 그때 4월 말……

○박덕흠 위원 그러면 지금 감리단은 우리 성 주무관이 관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참고인 성흔수 예, 맞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 공사 구간을, 지금 절개가 돼 있어서 공사를 시공 중인 걸 알았고 그다음에 관리 유지·보수를 그러면 결국은 행복청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주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공사 구간을 청주시에서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토목직으로서? 맞잖아요?

○참고인 성흔수 예, 절개된 부분을 알았고 협의를 하고 그 이후로 계속 쌓으라고 지시하고 독촉했는데 결론적으로 제대로 그것을 쌓지 못한 것을……

○박덕흠 위원 그런데 쌓으라고 한 자체는 유지·보수 관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청주시는 이제 이관받아서 하지만 공사 구간이 생기면 그 구간을 관리 감독하는 것은 시공사나 발주처에서 사실 하는 게 맞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감리단장한테 전화를 최초 받았지요?

○참고인 성흔수 예.

○박덕흠 위원 최초 받아 가지고 제일 먼저 어디로 연락했습니까?

○참고인 성흔수 도청에 전화한 걸로……

○박덕흠 위원 도청에? 그런데 행복청에는, 위의 상급자한테는 언제 연락했습니까?

○참고인 성흔수 행복청에는 내부 카톡방이 있었고……

○박덕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였느냐고요.

○참고인 성흔수 처음에 저희 바로 위의 사무관한테는 전화 시도를 했다가 통화를 안 받아서 한 7시경인가 6시 50분경에 최초 통화가 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러니까 그쪽 행복청에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7시경에 알려 줬다, 유선을 통해서?

○참고인 성흔수 예, 통화 기록은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리고 26분에는 나머지 충북도나 청주시, 경찰 이렇게 연락을 했다는 얘기지요?

○참고인 성흔수 예.

○박덕흠 위원 그러면 우선 주무부서가 행복청 아닙니까? 행복청에 이렇게 늦게 연락이 되면 어떻게 해요? 거기는 체계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뭐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도나 청주시 같은 데는 재깍재깍 전화를 받는데 행복청에서 발주한, 그쪽에다 대고는 연락이 이렇게 30분 정도 늦어지면 그것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참고인 성흔수 일단은 제가 바로 위 사무관한테 통화를 했는데 통화가 안 됐고 그 뒤로……

○박덕흠 위원 아니, 행복청에 상황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참고인 성흔수 상황설은 제가 출근하면서 먼저 이 보고보다도 전파를 빨리해서 침수로 인한 피해를 막아야 되겠다고, 피해를 최소화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해서 관계기관에 먼저 통화를 한 것이고 출근을 해서 근무자가 있어서 거기도 알렸고 자료도 중간중간 전송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다음은 이해식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 위원 이해식 위원입니다.

박준규 증인 앞으로 나와 주세요.

시간 끊어 주시고,

증인께서는 지난 기관보고 때 주민대피와 교통통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신고를 도에서 접수를 했는데 그것을 참사 이후에 알게 됐다,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증인 박준규 예, 그렇습니다.

○이해식 위원 언제입니까? 8시 40분에서 9시 사이라고 대답했습니다.

- 증인 박준규** 그때 당시 시간을 제가 특정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기억에.....
- 이해식 위원** 그 정도입니까?
- 증인 박준규** 예?
- 이해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쯤이에요? 저녁 8시나 9시.....
- 증인 박준규** 9시가 넘어서.....
- 이해식 위원** 9시 넘어서? 넘어서 누구로부터?
- 증인 박준규**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 이해식 위원** 누구로부터? 제 묻는 말에 답변하세요. 누구로부터 보고를 받았어요?
- 증인 박준규** 제가 그때 당시에 관련 부서에서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이해식 위원** 누구로부터? 누구로부터?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얘기했잖아요. 왜 여기서는 얘기 안 하는 거예요?
- 증인 박준규** 관련 부서에서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이해식 위원** 검찰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왜 여기는 얘기를 안 하세요? 답변 거부하세요? 증감법 위반이에요.
- 증인 박준규** 아니, 지금 답변하고 있는데 무슨 답변을.....
- 이해식 위원**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빨리 말씀하세요, 지금 시간 가니까.
- 증인 박준규** 그때 관련 부서에서 받았습니다.
- 이해식 위원** 들어가세요.
- 위원장 신정훈** 증인!
- 증인 박준규** 예.
- 위원장 신정훈** 관련 부서를 이야기를 그때 물어보니까 그때는 당황해서 잘 기억이 안 난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하세요. 관련 부서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 증인 박준규** 관련 부서인 자연재난과의 팀장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모 팀장.
- 위원장 신정훈** 팀장 누굽니까?
- 이해식 위원** 그렇게 무책임하고 정말.....
- 위원장 신정훈** 팀장 누구예요?
- 증인 박준규** 여기서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관련 팀장입니다.
- 용혜인 위원** 팀장 이름은 왜 안 밝혀요?
- 증인 박준규** 개인적인 이름이기 때문에 제가.....
- 용혜인 위원** 그게 무슨 개인이에요? 공직에서 공직을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일에 대해서지.
- 증인 박준규** 그리고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왜 있습니까?
- 용혜인 위원** 왜 와 계세요?
- 증인 박준규** 국정의 증인으로 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그런데 질문하신 분하고 여러 분이 한 번에 이렇게 하시면 어디다 답변을 해야 됩니까?
- 위원장 신정훈** 증인! 지금 이 자리에서.....
- 증인 박준규** 아니, 여러 분이 지금 질문을 하셨잖아요.
- 위원장 신정훈** 증인, 잠깐만요.
- 이해식 위원** 이건 증언의 거부로 고발해야 돼요.

○위원장 신정훈 이전에도 그 자리에서 관련 부서라고 했는데……

○증인 박준규 제가 관련 부서……

○위원장 신정훈 듣고!

○증인 박준규 대책팀장으로부터 보고받았……

○위원장 신정훈 들어 보세요! 내가 이야기하잖아요.

이전에 그 자리에서 관련 부서 누구냐고 물으니까 당황해서 생각이 안 난다고 계속 그래서 오늘 지금 다시 묻는 거예요. 그런데 또 관련 부서라고 그래요. 누구냐고 묻는 것이 뭐가 잘못됐어요? 거기에 항변할 이야기가 어디가 있어요?

○증인 박준규 자연재난과의 관련 팀장으로부터 답변받았다고 오늘은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그것이 여러 차례 물은 후에 지금 답변하는 거예요.

○증인 박준규 지난번에는 기억이 없어서 답변을 못 드렸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정말 이 답변 태도 아주 유감이에요. 속기록 한번 보세요. 몇 번 차에 물어도 계속 관련 부서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증인 박준규 지난번에는 진짜 기억이 없어서 답변을 못 드렸고요……

○위원장 신정훈 오늘도 그랬단 말이에요.

○증인 박준규 오늘은 그 관련 부서인 자연재난과 팀장으로부터 보고받았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답변 중지하세요.

앞으로는 본인이 알고 있는 거, 이 자리에서 그거 가지고 불리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습니다.

이해식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이해식 위원 들어가십시오.

이한울 주무관 앞으로 나와 주세요.

도청의 재난안전실장께서 적어도 그런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도로사업소에 지하차도 점검을 좀 잘해라 이런 얘기만 했어도 이 참사는 터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한울 주무관, 지금 성흔수 주무관으로부터 받았던 그런 취지의 내용을 참사 전에는 전파하지는 않았는데 참사가 발생하고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그런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얘기를 했지요?

○증인 이한울 지금……

○이해식 위원 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고 지금 실장이 말씀하셨어요. 참사 이후에 그런 연락이 있었다, 그런 신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팀장한테 보고했습니까?

○증인 이한울 아니요, 팀장님께 보고드리지는 않았었습니다.

○이해식 위원 아, 그래요?

○증인 이한울 예.

○이해식 위원 그러면 팀장의 보고는 어떤 거였나요? 우리 주무관님하고 관계없는 거다 그런 얘기네요. 맞아요?

○증인 이한울 팀장님의 실장님한테 보고했다는 사실은 저는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식 위원 그러니까 그 뒤에도 몰랐고 검찰에 가서 수사받을 때까지 아무한테도 얘기한 적이 없는 거네요?

○**증인 이한울** 제가 세 번 전화 통화 내용 받은 거에 대해서……

○**이해식 위원** 예.

○**증인 이한울** 예.

○**이해식 위원** 그렇습니까?

○**증인 이한울** 예.

○**이해식 위원** 들어가세요.

이것은 이 단계에서는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잠깐 시간 끊어 주시고요.

성흔수 참고인 나와 주세요.

참고인께서는 도에 전화를 할 때, 아까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왜 재난상황실에 연락은 안 하셨어요? 재난상황실에 연락하게 되면 거기에는 NDMS도 있고 PS-LTE도 있고 CCTV 또 녹취도 되고 그래서 전파를 바로 할 수가 있을 텐데 왜 상황실은 연락을 안 하고 과에 연락하게 됐지요? 청주시도 마찬가지던데 재난과에 근무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참고인 성흔수** 예, 맞습니다.

○**이해식 위원** 직원들을 잘 알고 그리고 또 우리 주무관은 제방 절개에 대해서 너무 잘 아니까, 아까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미호강이 범람하면 본인 책임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이것을 상황실에 전파하기보다는 주무관한테 직접 과로 연락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제 말이?

○**참고인 성흔수**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홈페이지를 검색해서 도청하고 청주시에 연락을 계속 많이 해야 되겠다고 해서 했고요.

○**이해식 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우리 이한울 주무관하고 7분에서 8분 동안 굉장히 길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세 차례 이상. 세 차례 내지는 네 차례. 그런데 그렇게 길게 얘기할 사안일까? 왜 그랬을까?

한번 정확하게 솔직하게 답변해 보세요.

○**참고인 성흔수** 일단 전화를 해서 감리단장한테 수위가 지금 차오르고 있고 주민대피 준비가 필요하고 차량이 강내라든지 이런 데가 침수돼서 교통통제가 필요하다는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통화할 때는 그 중간에 제가……

○**이해식 위원** 이한울 주무관은 그냥 알고만 있으라 그랬다는 얘기인데 왜 전파가 안 됐지요? 이한울 주무관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참고인 성흔수**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을 어떻게 드려야 할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해식 위원** 이한울 주무관을 개인적으로 잘 알고 계시지요?

○**참고인 성흔수** 도청에서 직원으로 인사 정도는 했고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누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이해식 위원** 과에 같이 근무한 적이 있지요?

○**참고인 성흔수** 과에 같이 근무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식 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참고인 성흔수** 예, 아마 제가 자연재난과에 있을 때는 다른 과에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훈** 다음은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승 위원** 경기 화성의 권칠승입니다.

방금 재난과 팀장이 당시 위급한 상황을 재난실장에게 보고했다, 그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한울 증인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박영빈 지검장님, 수사하셨으니까 아시겠네요. 그 팀장은 그 내용을 어디에서 들었답니까?

○**증인 박영빈** 제가 보고받은 것은 재난 상황이 있기 전의 연락 체계에 대해서 받았고 그 후에 어떻게 인지했는지는 제가 보고받은 기억은 없습니다.

○**권칠승 위원** 아니, 그러면 실장이 검찰에 가서 진술했다는 것하고 앞뒤가 안 맞잖아요. 수사를 했으니까, 물어보고 했으니까 진술을 했을 것 아닙니까?

○**증인 박영빈** 그 부분은 피신이라든가 진술조서에 적시가 돼 있을 건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확인이 안 된 상황입니다.

○**권칠승 위원** 그러면 그 팀장이 그 내용을 어디에서 전해 들었는지는 조사를 안 했다 이 말입니까? 그 결정적 내용을 안 물어보셨네요.

○**증인 박영빈** 그것은 이미 상황이 발생한 후에.....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 팀장이 그 내용을 어디서 들었느냐, 누군가에 의해서 보고를 받았거나 전화를 받았거나 경로가 있으니까 알았을 것 아닙니까? 그 경로가 뭔지 안 물어보신 거지요? 수사를 안 하신 거지요?

○**증인 박영빈** 재난이 이미 발생한 이후의 상황 보고는 제가 지금 기억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권칠승 위원** 안 물어보신 거예요.

○**증인 박영빈**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칠승 위원**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증인 박영빈** 예, 그리하겠습니다.

○**권칠승 위원** 이 팀장이 어디에서 그 내용을 습득했는지.

○**증인 박영빈** 수사청에 확인하겠습니다.

○**권칠승 위원** 성흔수 참고인, 이한울 주무관과 사고 이후에 통화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참고인 성흔수** 아마 제가 그때 핸드폰으로 연락을 해서 당일인지 그다음 날에 전화가 왔는데 이미 사건이 일어난 후로 전화를 제가 받지는 않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권칠승 위원** 이한울 증인이 성흔수 참고인한테 전화를 했습니까?

○**참고인 성흔수** 아마 제 번호로 제가 전파를 했기 때문에.....

○**권칠승 위원** 알겠습니다.

평소에 개인적으로 통화를 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인가요?

○참고인 성흔수 아닙니다.

○권칠승 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한울 증인에게 물을게요.

사고 당일 날 참사 이전 미호천교 일대에 이미 홍수경보가 발령되었고 미호천교 지점 수위가 계획홍수위에 임박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까?

○증인 이한울 경보 알람이 NDMS로 떴다는 것은 그 이후에 알았었습니다.

○권칠승 위원 이후에요?

○증인 이한울 예, 그날 이제……

○권칠승 위원 그러면 그게 재난과 단톡에 올라 있었지요?

○증인 이한울 잘 모르겠습니다.

○권칠승 위원 그게 공소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과 서무가 과 단톡에 올라와 있던 내용을 몰랐다? 그것을 누가 믿어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이 참사 전체의 그림을 이렇게 봅니다. 이한울 주무관이 성 주무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저는 보고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사고 이후에 관련자들이 법적 책임을 다 면탈하거나 혹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한울 주무관이 전화로 인지한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고 그것을 실행한 거예요.

결국에 검찰이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고 모든 책임을 져야 할 이한울 주무관에 대해서는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이해할 수 없는 핑계를 대면서 기소유예 처분해서 책임을 면탈시켜 줬어요.

그와 동시에 충청북도 자연재해실장, 과장, 팀장 등 이 공무원들은 자신들 업무 해태로 당일 날 들어온 그 신고들을 보고받지 않았다 이것을 방패로 지금 내세우고 있어요.

만약에 이게 사실로 인정된다면 법적 책임이 훨씬 낫아질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런 효과를 기대하고 노력했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지하차도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 미흡 책임은 도로관리사업소가 지게 됐어요.

김영환 지사는 불기소되었고 충청북도 재난안전실장, 과장, 팀장은 재대본 구성 미흡, 재난교육·전파교육 미흡 이런 아주 가벼운 혐의로 기소가 됐어요. 이한울 주무관은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고 결과적으로 충청북도 관계자들은 모두 법적 책임과 관련해서 큰 이득을 보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쉽게 가늠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이 그랬다면 지금 여기서 보이고 있는 의문들이 하나도 의문스럽지 않아요.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새벽부터 자연재난과 직원들이 모여 있는 단톡에 홍수경보가 뜨고 있었어요. 긴급 상황이고 새벽부터 도지사가 재난대책회의를 하고 있는데 참사 당시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재난 부서에 2년이나 근무했고 그것도 방재안전직 직원이 제일 생생하고 위급한 정보를 알리지 않았다? 지금 그 말을 믿으라는 겁니까?

또 그것만이 아닙니다. 구체적 교육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하급 직원에게 책임을 안 묻는다는 것, 이 검찰의 결정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까? 이것은 수사 결론을 내려 놓고 짜 맞춘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저는 그런 의혹이 자꾸 듭니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혜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혜인 위원 시간 멈춰 주시고 박영빈 증인 앞으로 나와 주세요.

먼저 중처법의 제9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문구의 의미부터 확인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1호는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이라는 말은 인력과 예산·점검에 국한되지 않고 안전관리체계의 구축에 필수적인 사항을 포괄하는 예시적 용법으로 쓰인 것 맞지요?

○증인 박영빈 예, 그렇습니다.

○용혜인 위원 그다음, 그 이행에 관한 조치는 실제로 재난위기 상황에서 재난 예방을 위한 조치가 구축된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맞춰서 이행되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의미합니다. 맞습니까?

○증인 박영빈 예, 직접 점검하거나 보고를 통해서 확인하는 조치입니다.

○용혜인 위원 이행에 관한 조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여기서 국어를 쓰는, 한국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의 상식에 비추어 보면 체계를 구축할 의무에 뒤이어서 이행에 관한 조치라는 문구를 추가한 것은 이 이행이 예방에 관한 조치만을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체계를 구축하고 그 체계가 재난위기 상황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까지를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겠지요?

○증인 박영빈 실제 상황에서의 이행까지 포함하는지는 법리 검토상 저희 평상시에.....

○용혜인 위원 그게 포함이 안 되면 이 법을 국회에서 왜 만듭니까?

구체적인 질문 드릴게요.

재난안전실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검찰 공소장을 보면 충북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에 따라 재대본 내에 상황관리총괄반과 12개의 협업기능반의 구성 및 운영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관리총괄반은 실질적으로 가동 불능의 상태였고 특히 교통통제업무를 담당하는 사회질서유지반은 미편성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사회질서유지반의 미편성은 재난예방인력에 관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서 검찰의 판단은 왜 달랐습니까?

○증인 박영빈 저희는 궁평지하차도가 공중이용시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중해서 평상시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대해서 검토한 것이지 충북도의 전체적인 재난을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

○용혜인 위원 아니요, 그날 대응의 과정뿐만 아니라 재난안전대책본부…… 이 참사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잖아요. 제가 이 사고와 무관한 다른 사안을 갖고 와서 질문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검찰은 결국에는 이것에 대해서 검토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구축에 대해서 구축되지 않은 것들을 검토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는 거예요.

다음, 충북 도로과 공무원들에 대한 공소장을 보면 2023년에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를 위한 도로 분야 풍수해 종합대책 수립 임무를 방기했다라고 공소장에 써 있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도 공소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구축의무가 불이행된 상태이거나 혹은 구축된 안전관리체계의 이행에 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저것 둘 중에 어딘가 하나에는 속하는 것 아닙니까?

○**증인 박영빈** 저희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구성과 입법 취지하고 업무상 과실치사가 실제 재해 상황에서의, 구체적 주의의무 위반 이것을 구분해서 적시했습니다.

○**용혜인 위원** 또 보겠습니다.

충북 도로과가 도로관리사업소에 지하차도 통제 및 등급화 기준 설정을 요청하고 2020년 8월경에 도로관리사업소는 궁평2지하차도 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이 통제기준이 충북 도로과에 접수되어서 자연재난과에 공유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행동 매뉴얼에는 이 통제기준이 반영되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은 필수적인 안전관리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것이거나 그것도 아니면 이행에 관한 조치의무가 불이행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증인 박영빈** 저희는 통제기준하고 그 통제기준이 충족되었을 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매뉴얼이나 지침이 설정돼 있다고 판단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상황은 지금 고검에서 전면 재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혜인 위원** 제가 그러면, 이 통제기준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매뉴얼을 저도 확인했는데 그것을 보지 않았다는 것은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지금.

(영상자료를 보면)

PPT 한번 보시면 충북 공무원에 대해서 적용한 형법상 업무상 과실에는 김영환 지사의 중처법상의 경영책임자의 의무 불이행으로 봐야 하는 사항들이 수두룩 빽빽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검찰이 김영환 지사는 아예 기소하지 않는 것이다, 않기로 작정한 것이다라고 하는 의구심이 바로 이 포인트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공무원들에 대한 업무상 과실, 충북 공무원들에 대한 업무상 과실 혐의에 대한 공소장 내용을 보면 경영책임자의 의무 불이행으로 나와야 하는 것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소장에도 다 적혀 있는데 도지사만 쏙 빼고 나머지만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기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영환 지사만 빼 준 것 아니냐라고 하는 국민적 불신이 나오는 겁니다. 유가족들이 느끼는 트라우마도 당연히 치유되기가 어렵고요.

저는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장님 이하 국정조사위원분들께 국정조사결과보고서에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무혐의 면소에 대한 검찰청의 재검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요청

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기소유예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처분을 받은 실무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재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내용도 포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현일 위원 잠깐 시간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인뉴스 김남균 기자님, 잠깐 이 앞으로 나와 주세요.

그리고 이동옥 부지사님, 여기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아까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민정비서관실 업무가 지자체 의견수렴이라고 했지요?

○증인 이동옥 꼭 그것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채현일 위원 지자체 민원 창구 역할도 했고 그 당시……

○증인 이동옥 그거는 굉장히 작은 부분이었습니다.

○채현일 위원 오송참사 유가족이나 피해자 측에서 이런 관련 민원 같은 것 민정비서관실로 들어온 적 있나요?

○증인 이동옥 전혀 없습니다.

○채현일 위원 아니, 충북에서 가장 주요한 현안이고……

○증인 이동옥 저희들은, 생각해 보면 민정비서관실이 참사가 발생하고 나서 한 10개월 정도 한참 지나고 나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아마 그 부분은……

○채현일 위원 아니, 충북의 가장 큰 현안이고 본인이 근무를 했던 지역의……

○증인 이동옥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시민사회수석실이나 다른 데서 취급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 보고 있습니다.

○채현일 위원 작년 5월 7일부터 올해 3월 6일까지 민정비서관으로 있을 때 김영환 지사를 만나거나 연락한 적 있나요?

○증인 이동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 기억에는 김영환 지사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채현일 위원 그러면 대통령실을 김영환 지사가 자주 방문했는데 그 당시 비공개로 왔는데 그때마다 민정비서관을 만났다라고 그러는데 그것 맞나요?

○증인 이동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실은 김영환 도지사가 대통령을 만나러 왔다는 사실도 잘 모릅니다.

○채현일 위원 대통령실에 왔을 때 한 번 만난 적 없어요?

○증인 이동옥 없습니다. 제 기억에……

○채현일 위원 서울에 왔을 때도요?

○증인 이동옥 예, 없습니다.

○채현일 위원 김남균 기자님, 내정자가 교체가 됐잖아요.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지요, 그 당시에 12월 달에 나온 그 상황을 설명해 주고, 지역 정가에서는 어떤 얘기가 돌았나요?

○참고인 김남균 일단은 지역언론 기자들 사이에서는 원래 1순위 후보자가 김광용 씨

인가 그분이 있었고 여기 이동옥 부지사가 2순위였다, 그런데 1순위·2순위가 바뀌어서 임명이 돼서 좀 이례적이다, 그래서 당시에 기자들 사이에서는 윤심이 개입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채현일 위원** 불기소 처분이 금년 1월 달 있고 나서 두 달 만에 2월 달에, 제청은 2월 4일 날 도지사가 하고요. 불기소를 한 바로 얼마 후에 김영환 지사가 본인은 불기소 결정된다고 말하고 다니고 그 불기소 결정은 이동옥 당시 민정비서관이었다 그런 얘기 혹시 들은 적 있으세요?

○**참고인 김남균** 일단 그 전자의 부분들은 저도 전언으로 들은 부분들은 있고요. 그 배경이 이동옥 현 부지사다 그런 얘기들은 제가 직접 전언으로는 듣지 못했습니다. 다만 지역에서 이동옥 부지사가 예측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지 않았고 기자들 사이에서 이분에 대해서 충분히 많은 지식을 갖고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었던 걸로 봐서는 인사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이었다고 보는 겁니다.

○**채현일 위원** 그러니까 불기소 처분이 된 게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실에 있는 민정비서관의 역할이 있지 않았나라는, 지역 정가에서 돌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나요?

○**참고인 김남균** 일단 그랬습니다. 김영환 지사가 취임 이후에 여러 가지 경찰 수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여러 건들이 있었는데 다 불기소 처분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구심이 기자들 사이에서 많이 있었지요.

○**채현일 위원** 부지사님은 내정된다는 사실을 누구한테 들었나요?

○**증인 이동옥** 저는 사실 12월 달의 초중순 같은데 12월 초에 행안부 인사기획관실에서, 행안부에서 연락이 와서 후보자가 될 것 같다……

○**채현일 위원** 12월 언제요?

○**증인 이동옥** 12월 아마 초중순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채현일 위원** 그 당시에는 김광용 땡니까, 그 당시 내정자 얘기가 이미 정가에서 언론 보도가 났는데 본인한테 연락이 왔다고요?

○**증인 이동옥** 예, 그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 이름도 이미 2022년부터 여러 번 부지사후보가 돼 있었고요. 그 기사가, 내정 기사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제가 어떻게 판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행안부에서 12월에 연락이 와서 후보로 하려고 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나 이런 의견이 왔습니다.

○**채현일 위원** 이거 내정되기 전후로 김영환 지사님하고 통화한 적 있나요?

○**증인 이동옥** 내정되고 나서 통화되고 이런 것보다도 제 기억에는 아마 12월 말인가 한번 전화를 하셨던 것 같아서, 혹시 부지사로 추천을 했으니 고향 와서 열심히……

○**채현일 위원** 12월 말예요?

○**증인 이동옥** 제가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마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고향 와서 한번 열심히 일해 봐라, 충북에서 후보자로, 복수로 보통 추천을 하는데 저를 한번 추천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채현일 위원** 잠깐만요. 김남균 기자님 나오셔 가지고 한 가지 여쭤볼게요.

참사 당일 날 도지사 행적에 대해서 의문이 많았잖아요. 오송 사고 소식을 듣고 나서 현장에 안 가고 괴산, 그러니까 본인의 땅이 있고 배우자가 아들이 거주하는 괴산 침수와 폭우 걱정하는 SNS 남기고 그런 상황에서 갔다는 일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괴

산으로 이동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참고인 김남균 일단 그날, 사고가 발생한 2023년 7월 15일 아침 7시 30분에 김영환 지사의 부인 전은주 여사께서 SNS에 아들, 괴산에 거주하고 있는 아드님의 집이 침수됐다면서 걱정하는 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김영환 지사께서는 7시 40분에 도청 정문을 출발한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는 환복을 하기 위해서 2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자택으로 와서 10시까지 머물렀고요. 그다음에 8시 한 55분경에는 지금 홍수 피해가 예상되고 있으니까 도지사로서 잘 수습을 하겠다라는 SNS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최초 취재했을 때는 9시 40분에 그때 당시의 비서실장으로부터 이 사고 소식을 전해 들었다라고 저는 취재를 통해서 확인을 했었고요. 그거는 다 그다음 날, 사고가 있었던 16일까지 확인했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9시 40분이면 이미 그런 사고 소식이 있었던 부분들이고 제가 그날 당일 오후 2시에 사고 현장에 있었던 상황판의 사진을 입수했었는데 그때는 09시 45분까지 심정지 1명에 구조 10명이라고 정확하게 적혀 있었거든요. 그런 걸로 보면 사망자가 발생을 했다라고 충분히 추정을 할 수 있었던 상태에서 괴산으로 갔다라고 추정이 가능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때 당일 날 저는 청주에 있지 않고 서울에서 내려오는 길이었는데 11시경에 제보자로부터 747 버스를 포함해서 시내버스가 잠겼고 많은 사상자가,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을 거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보도가 되지 않는다, 뭔가 이상하다라는 제보를 통해서 이런 사실들을 최초 접수했었고 그다음에 그때 당일 잠겨 있었던 747 버스, 사망자가 7명 발생했었던 그 버스 기사들 사이에서는 이미 9시경에 침수 사실이 전파가 됐고 회사에 문의를 하고 연락을 하고 그다음에 보통 오전 조 시내버스 기사들이 11시에 교대가 됩니다. 그런데 11시에 끝나자마자 동료가 잠겨 있는 그곳으로 시내버스 기사들이 11시 반 정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해서 이 사고 상황을 청취했고 그러면 시내버스 기사들 사이에서는 이미 여기에 대량 사상자가 있을 거다라는 부분들이 전파가 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현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위원장 신정훈 답변을 좀 정리해 주시지요.

○참고인 김남균 그렇게 보면 저는 그날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오전 10시, 11시경 정도면 도의 관계자들도 현장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을 거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오송으로 가지 않고 괴산으로 갔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땅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렇게까지는 연결시키고 싶지는 않지만 다만 적절하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마무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서범수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서범수 위원 서범수입니다.

부지사님, 잠시만요. 자리에 앉아서 일단 하십시오.

부지사님을 둘러싼 의혹 제기, 음모론을 보면서 어떻게 지금 민주당에서 의혹 제기하는 방법이 이렇게 한결같이 똑같느냐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지역에서 훌러가는 소리를 팩트 확인 없이 여기서 지역언론인을 불러서 지역

언론인의 입으로 이런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반복적으로 부풀게 만들고 또 증폭시키는 이 방법이 과연 맞느냐.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기를 하려면, 의혹을 받았으면 확인부터 하시고 검증하고 여기서 그것하고 관련되는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냥 불러서 이렇게 하는 게 음모론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이동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위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서범수 위원 들어가시고요.

박준규 전 재난안전실장님, 잠시 나와 주시겠습니까?

당일 아침에 재해대책본부 운영하셨지요? 그 전날 밤부터 운영했지요?

○증인 박준규 예, 전날……

○서범수 위원 밤부터 했고 당일 아침에도 운영을 했지요?

○증인 박준규 예, 8시 반부터 했습니다.

○서범수 위원 8시 반부터?

○증인 박준규 6시 20분에도 하고 8시 30분에도 하고.

○서범수 위원 전체적인 운영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재해대책본부의?

○증인 박준규 계속 말씀드렸지만 본부장이신 지사님입니다.

○서범수 위원 아니, 운영하는 책임자가 재난실장 아닙니까?

○증인 박준규 예, 총괄……

○서범수 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 이야기 나오는 게 행복청에서 도에 통보를 했는데 주무관은 재난실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보고를 안 했다는 거지요?

○증인 박준규 예, 그렇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러면 이런 시스템 말고 다른 시스템으로 재난재해대책본부에 신고를 한다든지 보고할 시스템 안 만들어져 있습니까?

○증인 박준규 인터넷 홈페이지 같은 데도 민원 게시할 수 있고 전화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런데도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러면? 지금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시스템이 돼 있는데?

○증인 박준규 죄송한데 무엇을 몰랐다는 말씀을……

○서범수 위원 아니, 지금 침수되고 범람되고 하는 상황들을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 아닙니까?

○증인 박준규 계속 말씀드리지만 행복청에 전화 온 것 접수는 됐는데 그 사항이 담당자 선에서……

○서범수 위원 이 시스템 말고 다른 시스템으로는 그 내용을 알 수 없느냐고요. 그러면 한 사람만 문제가 생기면, 예를 들면 이한울 주무관께서 혹시 그날 휴가를 갔다든지 아니면 다른 데 가서 연락이 안 되면……

○증인 박준규 이 상황은 지금 NDMS나 당직실 운영하는 행정관청의 당직실, 각종 부서의 전화……

○서범수 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그다음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잠시 나오시지요.

그날 참사 당일 CCTV 상황 파악하셨다고 그러셨지요? 그렇지요? 물이 범람하는 모습이라든지 궁평2지하차도에 강물 유입하는 광경……

○증인 이석식 제가 직접…… 직원들이 했습니다.

○서법수 위원 그래서 무슨 조치했습니까?

○증인 이석식 일단은 상황 파악하고 현장에 즉시 출동하고요.

○서법수 위원 현장 출동하는 게 얼마나 걸려요?

○증인 이석식 한 25분에서 30분, 35분 정도 걸립니다.

○서법수 위원 아니, 제일 빨리 출동할 수 있는 경찰에는 왜 통보 안 했어요, 그날도 내가 이야기했는데? 왜 그거는 안 했어요?

○증인 이석식 직원들한테 물어봤더니요 경황이 없어 가지고 못했다는……

○서법수 위원 경황이 없다는 것은, 그게 FM이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으면 바로 112 신고, 3분 안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도로관리사업소에도 가 봤자 25분, 30분 걸리고 바로 인근에 있는 경찰에 신고를 해 버리면, 통보를 하면 바로 1~2분 안에 조치가 되잖아요.

○증인 이석식 예, 그건 맞습니다.

○서법수 위원 그걸 왜 안 해요?

그다음에 경찰청 112치안상황관 나오셨나요?

○경찰청치안상황관리관 곽병우 예.

○서법수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당일 07시부터 경찰의 신고 접수 및 조치사항 간단하게 설명하십시오.

○경찰청치안상황관리관 곽병우 07시 04분에 미호천교가 넘치려고 한다, 오송 주민들 대피시켜야 할 것 같다는 신고가 있었고……

○서법수 위원 그건 주민 대피 필요 신고, 그렇지요?

○경찰청치안상황관리관 곽병우 예.

○서법수 위원 그다음에 일반 신고 들어왔고?

○경찰청치안상황관리관 곽병우 예, 그다음에 07시 11분에 신고가 있었습니다. 도로침수차량이 빠져 있다는 신고였습니다. 07시 46분에 차량이 역주행한다는 신고가 있었고 07시 57분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있었습니다.

○서법수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58분에 실제로 2차 112 신고 들어와서 감리단에서 궁평지하차도 통제 필요신고 들어왔고 이게 착각을 해서 궁평1교차로를 도착했고, 그렇지요?

○경찰청치안상황관리관 곽병우 착각을 한 것은 아니고 신고를 현장 경찰관들이 인지를 하지 못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서법수 위원 그러면 치안상황관리관이 보기에 경찰의 잘못이 무엇이라고 봅니까?

○경찰청치안상황관리관 곽병우 그 당시에 오송파출소 직원들은 3건의 신고를, 도로침수 등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교통통제 등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07시 58분 신고에 대해서는 현장출동 경찰관들이 자기들이 인지를 하지 못했다, 못했기 때문에 현장출동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범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장 경찰관부터 최고지휘관까지 14명이 기소되고 재판 중이란 말이지요.

박 검사장님, 아까 말씀하시기를 현장이 아닌 책임자 위주로 수사를 했다고 했거든요. 거기에 치중했다는데 왜 경찰은 일선 직원부터 지방청장까지, 최고지휘관까지 전부 입건 시켜서 기소해서 재판 다 합니까? 제일 만만한 게 경찰입니까?

○증인 박영빈 그 부분은 제가 오기 전에 이미 기소가 돼서 진행된 사항이라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서범수 위원 우리가 고인의 경건한 추모, 유가족 충분히 배려하고 케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게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분노와 절망을 그런 분위기에 얹혀서 정말 책임질 사람이 아닌 일선 현장의 공무원 등 관계자들이 희생양이 되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사장님, 다시 이런 부분 잘 검토를 해 주세요.

○증인 박영빈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다음은 이연희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이연희 위원 검사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고 그다음에 홍명기 과장님.

PPT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제방이 붕괴되었다고 다 사람이 죽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죽어서도 안 됩니다.

다음 PPT 봐 주시지요.

같은 시기에, 그날 전국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다음날 7월 16일 새벽에 논산의 논산천 제방이 붕괴됩니다. 그리고 예산의 삽교천 제방이 붕괴됩니다. 피해가 막대했습니다. 그런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주민 대피를 잘해서 주민이 다 대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재산피해는 막대했지만.

검사장님, 지금 수사 과정에서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것이 좀 수사가 이상하지요? 아까 제가 질의했을 때 재난안전실장은 전반적인 직원들에 대해서 재난훈련을 했다 이렇게 했고 이한울 주무관도 일곱 차례에 걸쳐서 훈련을 받았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훈련을 받지 않았다는, 교육을 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를 했고 그리고 재난 대응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신고 접수와 보고, 전파 관련해서 이한울 주무관은 수사 받기 전까지 어떠한 내용도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재난안전실장은 당일 날 저녁에 팀장한테 보고받았다. 그리고 홍명기 과장님도 저번의 제 질의에 당일 날 오후 9시경에 알고나 있으라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다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그 얘기는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증인 홍명기 정상준 주무관님한테……

○이연희 위원 정상준 주무관한테 들었어요?

○증인 홍명기 예, 9시에 중대본 회의 끝나고 나서……

○이연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따가 다시 추후에 물어보겠습니다.

다음 PPT 띄워 주십시오.

김영환 지사 불기소이유서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대량 호우가 예고된 상황에서 사전 통제업무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은 것은 관리상 결함에 해당한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증인 박영빈 예, 그렇습니다.

○이연희 위원 관리상 결함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증인 박영빈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구조나 시설 이외에, 그러니까 그 위험요소를 안고 있는 부분에 대한 통제를 말합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안전문제에 있어서 재난 대응과 관련해서 공무원의 주의의무, 과실과 관련한 혐의 그리고 재난 대응 관련한 여러 가지 주의의무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통제가 안 됐다 그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다음 PPT 띄워 주십시오.

저게 충북도 재난 대응 매뉴얼에 나와 있는 정후 감지, 초기단계의 대응지침입니다. 풍수해 발생 정후 확인 시 신속한 보고·전파, 정후 발생 상황에 따라서 취약시설·지역 긴급 대응조치 실시, 초기 상황판단회의 개최해야 된다, 지역대책본부 비상근무 실시해야 된다,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의 비상연락망 점검하고 풍수해 피해 발생 대비 홍보 강화하고, 이런 것 하나도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PPT 보시지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선행 원인은 제방 붕괴예요. 제방 붕괴와 관련해서 제방 관리 책임을 들어서 청주시장은 기소했어요. 그런데 재난 대응과 관련해서 교통통제를 담당해야 될 궁평2지하차도 관리청인 충북도지사는 불기소를 했어요. 그래서 비교를 해 봤어요.

그다음 PPT 보여 주세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인력 확보의무, 여기 보면 청주시는 국가하천 담당자가 3명이고 중대재해 담당인력이 1명에 불과하다. 그래서 청주시는 필요한 인력을 구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아까도 여러 위원님 얘기했지만 충북도 재난안전과에 재난전문인력 3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충북도는 청주시보다 면적이 9배나 더 넓어요. 똑같은 것 아닙니까?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0.3%밖에 안 돼요, 재난전문인력이.

그리고 청주시장은 제방 훼손 사실을 이 사고 발생까지 인지조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못 했다 이렇게 기소 이유에 썼는데 충북도지사 역시 마찬가지로 참사 발생 4시간 이후인 12시 48분까지 인지조차 못 해요. 똑같은 사안인데 청주시장한테는 실질적이고 작동 가능 여부를 따져서 기소를 했고 충북도지사한테는 형식적인 기준을 가지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처음 수사 단계부터 무슨 얘기가 돌았느냐 하면 충북도를 봐주기 위한 수사다 이런 얘기가 돌았고 지금 충북도와 관련된 기소된 사람들은 다 무죄용 기소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증인 박영빈 그렇지 않습니다.

○이연희 위원 아니, 지금 제가 비교를 해 주잖아요. 어떻게 청주시장은 같은 사안에서 기소를 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증인 박영빈 지금 무죄가 날 거라고 단정을 하시는 겁니까?

○이연희 위원 아니, 그렇게 기소를 했는데 무죄가 나지요.

지금 재난안전실장은 훈련을 시켰는데도 훈련을 안 했다는 이유로, 교육을 안 했다는 이유로 기소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 다 무죄 나는 것 아니에요?

○**증인 박영빈** 지금 주의의무 위반으로 기소가 되어 있고 청주시의 경우에는 구조적인 물리적인 결함이 이미 노정이 돼 있고 그거를 확인하거나 점검할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이연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충북도하고 그 사항이 똑같잖아요.

○**증인 박영빈** 청주시는 이미 제방 유지관리 주체로서 제방이 이미 훼손된.....

○**이연희 위원** 사고 원인과 관련해서 제방의 원인과 관련해서 청주시장을 기소한 것은 맞는데 제방이 무너진다고 제가 전제했잖아요. 다 사람이 죽어야 됩니까? 그러면 재난 대응과 관련해서 미흡한 것이 직접적 원인이잖아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충북 도는 봄주기 수사를 한 거잖아요, 충북도지사는 기소도 안 하고.

○**증인 박영빈** 저희의 1차 판단은 중대재해처벌법의 해석을 그렇게 해서 법리 적용을 한 것이고.....

○**이연희 위원** 중대재해처벌법은 제가 지금 비교를 해 드렸잖아요.

○**증인 박영빈** 지금 위원님 말씀도 유념해 가지고 항고청에서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이파가 다시 더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동진 위원** 많은 위원님들께서 사고 원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유가족분들에 대한 심리치료 관련해서 김영환 지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충청북도는 그동안 유가족에게 트라우마 극복과 심리치료 지원에 최선을 다하시고 있고 정신과 치료 금액 지원도 불편함 없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신 바 있지요?

○**증인 김영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동진 위원** 유가족들께서는 충청북도의 이런 지원에 만족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김영환** 저희들의 어떤 조치도 유가족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로가 될 수는 있지만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동진 위원** 9월 15일 날 그 현장에서 지사님이나 공직자분들은 나가신 상태에서 유가족분들 우리가 말씀을 들을 기회도 있었고 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현재 정신과 치료가 5분 상담 후에 약 처방에 그쳐서 만족도가 낮고 정신과 치료 기록이 남는 것에 대한 어떤 거부감 또한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유가족분들은 민간 심리상담센터 이용 등을 포함한 유가족 전담 심리치료 지원제도 마련을 중앙정부에 세 차례에 걸쳐서 요청을 했는데 정작 충청북도는 유가족 전담 심리치료 지원제도 마련에 소극적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김영환** 제가 면담 과정에서 그것을 마련해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트라우마 센터를 두 군데를 지정해서 했는데 하나가 세종 이렇게 외지에 있고 불편도 있고 또 실질적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동진 위원** 지금 충청북도가 유가족분들의 요구를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전달하거나 제도 마련을 선제적으로 하시지를 않고 이야기를 듣고 움직이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유가족분들한테 아마 안내하셨던 바가 있나 봐요.

지사님, 이 사업은 전 국민 대상이라고 그래서 신청자도 굉장히 많고 절차도 복잡하다고 합니다. 이게 참사 유가족만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판단을 할 때. 그러니까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유가족 전담 심리치료 지원제도를 마련하기에는 전문상담기관이나 인력, 예산 확보 등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하기 힘든 일이라면 더욱더 중앙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제도 마련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충청북도가 먼저 제안을 제시하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김영환** 지금 정부에 그런 제안을 했고 정부에서도 행안부에 이런 트라우마를 지원하는 조직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건의에 의해서 그렇게 됐지만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동진 위원** 조속하게 충청북도가 중앙정부하고 협력해서 전담 지원제도 마련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립니다.

○**증인 김영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동진 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지난주 월요일 날 유가족 간담회에서 도청에 추모비 건립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하루 만에 5000만 원 예산이 삭감됐다고 얘기 들었어요. 아쉬움이 크실 것 같은데, 그동안 추모 조형물 설치 필요성을 도의회에 여러 번 피력하신 적이 있지요?

○**증인 김영환** 예.

○**고동진 위원** 그런데 9월 11일 날 최종 부결됐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도의원들이 도민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장소에 이견을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직접 보고를 다 받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증인 김영환** 예.

○**고동진 위원** 유가족 간담회 이후에 도의회 거기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 지사님이 직접 도의회를 설득하지 못한 그리고 예산이 삭감되고, 이거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은 어떻게 이거를 대처를 하시려고……

○**증인 김영환**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서 도 공무원들과, 관례가 되기 때문에 추모비를 도청에 세우는 문제에 대해서는 반발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거를 해서 이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다면 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마는 도의회에서 일단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재원을 마련해서, 제가 특조금을 통해서 청주시하고 협의하든 해서 이거는 기필코 우리 위원님들께 약속드리지만 추모비를 건립해 드리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고동진 위원** 그런데 추모 조형물 설치 관련해서는 도의회하고 직접 논의를 한 적이 없다라고 도지사님이 직접……

○**증인 김영환** 개인적으로는 논의를 했지만 조형물도 고충처리위원회와 유가족과 또 우리 도의회 관계자들이 모여서 장소를 선정했고요. 조형물의 모양도 다 우리가 결정했는데 문제는 도의회하고의 소통이 조금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해결되리라고 생각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방식으로라도 이거는 꼭 약속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동진 위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 이외에도 추모 현판 설치도 주민 반대로 지연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희생자 추모는 물론이고 유가족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라도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걸 약속을 하셨잖아요, 우리 도지사님이. 부디 좀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해당 사업들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증인 김영환** 꼭 그렇게 약속드리겠습니다.

○**고동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훈** 다음은 윤건영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영 위원** 신문에 앞서서 청주시의 최원근 안전정책과장님 앞단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저는 이번 질의에서 오송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 한번 토론해 보려고 합니다.

현장에 있었던 CCTV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점검했더라면 완벽하게 막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피해로 할 수 있었던 건 아닐까라는 고민입니다.

PPT를 봐 주시면요.

(영상자료를 보면)

오송참사와 관련된 현장의 CCTV는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호강 근처에 청주시에서 관할하는 CCTV가 있고 또 하나는 궁평지하차도 내부에 있는 충북도에서 관할하는 CCTV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맞지요? 미호천교 주변에 CCTV 하나 있는 거 맞지요, 과장님?

○**증인 최원근** 예, 맞습니다.

○**윤건영 위원** 다음 PPT 봐 주십시오.

그런데 홍수경보가 4시 10분에 있고요. 6시 34분에 계획홍수위 도달한다는 금강홍수통제소의 경보가 있고 행복청에서 차량통제 요청을 하는 때까지 저 CCTV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과장님, 혹시 점검한 거 있습니까?

○**증인 최원근** 저는 온지 한 2주 만에 근무했기 때문에 저거는 그 당시 몰랐고요……

○**윤건영 위원** 아니, 저 시간에 저 CCTV를 점검한 적이 있느냐고요.

○**증인 최원근**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안에 한 대가 있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예·경보 담당자 직원이 있

습니다, 별도 관리하는 직원이. 수시로 금강홍수통제소에서 통보가 오지 않습니까, 홍수 주의보라든지 경보가? 그거를 떠나서 수위계가 저희 안전과에 계측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위계가 어느 정도 올라오면 자동으로 주민대피에 대한 안내를 발송하게 돼 있습니다.

○윤건영 위원 아니, 저 시간에 CCTV를 점검한 적이 있나고요.

○증인 최원근 그거는 이상은 없었습니다.

○윤건영 위원 저 시간에 점검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걸로 자료제출을 받았습니다, 과장님.

○증인 최원근 사전에는 해서 이상은 없었습니다.

○윤건영 위원 사전이 아니라요 지금 홍수가 난다, 계획홍수위에 도달한다라는 경보를 들었는데도 해당 CCTV를 점검한 적이 없다고요.

과장님, 다음 PPT 봐 주십시오.

○증인 최원근 점검은 했어도 저기는……

○윤건영 위원 점검을 했어도…… 여기 보세요.

○증인 최원근 안내는, 방송은 나갔습니다.

○윤건영 위원 6시 29분에 미호강의 수위 상승을 알립니다, 행복청에서 하천과로. 그런데 청주시에서는 수곡 우수저류시설이라는 곳을 CCTV로 모니터링을 합니다. 미호강 쪽은 CCTV 모니터링을 아예 하지를 않아요. 왜 그랬습니까?

다음 PPT 봐 주십시오.

이게 해당 CCTV입니다. 원쪽이 도로 방향을 주시하고 있는 건데요, 오른쪽으로 조금만 틀면 미호천변의 월류 상황을 볼 수 있었던 CCTV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벽 4시부터 계속 홍수경보가 나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CCTV를 제대로 점검을 안 해요. 만약에 이 미호천 방향으로 사전에 미리 틀었더라면, 홍수가 난다고 경고하고 행복청에서 청주시로 그런 수많은 전화가 왔을 때 누군가 단 한 번이라도 봤더라면 오송참사가 이렇게 크게 일어났을까요?

○증인 최원근 위원님, 담당자가 예·경보 수위는 수위 관측용이기 때문에 그 수위에서 호우가 발생이 되면 그 수위를 관측합니다. 이거는 지금……

○윤건영 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이 CCTV를 보면 미호천이 월류하는 게 보인다니깐요. 보이지 않겠습니까?

○증인 최원근 그건 그런데 월류는 안 보입니다. 임시제방은 저도 확인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봤는데 둘려 본 게 이렇게 한 번 돌아가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 상관만 보입니다. 미호천교 하부에 임시제방이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윤건영 위원 과장님, 보세요. 왼쪽 게 과장님 말하는 도로 방향을 주시하는 CCTV고요, 오른쪽 게 7시 31분에 갑자기 미호천 방향으로 CCTV 방향을 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홍수경보가 있고 차량통제를 하고 주민대피 명령이 내려와요. 그러면 도로 방향을 주시할 게 아니라 미호천 방향으로 틀어서 누군가는 점검을 했었어야지요. 이걸 안 했다니까요.

○증인 최원근 그거는 우리 담당자가 수시로 확인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윤건영 위원 담당자도 수시로 확인을 안 했다고요, 과장님. 이 이전 자료를 저희가

받아 봤는데 확인한 적이 없어요.

○**증인 최원근** 아니, 돌려 본 거는 없는데 미호천 시스템이라는 거는 호우가 상승되면 수위계에서 올립니다.

○**윤건영 위원** 과장님, 지금 계속 하천의 수위만 이야기하는데요 이 CCTV를 통해서 당시 상황을 점검할 수 있었다고요. 점검을 적극적으로 하냐 소극적으로 하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

○**증인 최원근**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윤건영 위원** 홍수경보가 났는데 미호천 방향으로 보지 않은 게 잘한 겁니까? 주민 통제하고 교통 통제하라는데 CCTV 제대로 안 본 게 잘한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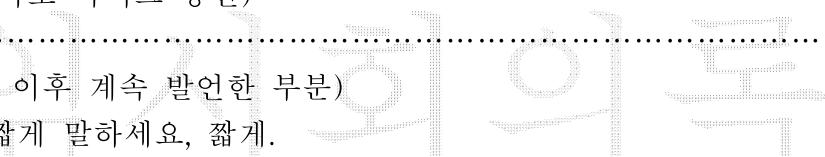
다음 PPT 봐 주십시오.

김영환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김영환 증인은 기관보고에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CC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물이 1mm도 차지 않고 있다는 걸 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증언하셨습니다. 이 말 사실인가요?

○**증인 김영환** 제가 봤다는 것이 아니라 도로관리사업소의 CCTV를 보고 있었다 그런 말씀을 나중에 이걸 돌려 보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윤건영 위원** 짧게 말하세요, 짧게.

○**증인 김영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방 붕괴로 인해서 해머워터가 도달한 시간이 7분인데 그 전에는.....

○**윤건영 위원** 아니, CCTV를 봤냐고요. 우리가 보고 있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증인 김영환** 그러니까 그 뒤에 우리가 이 사고가 난 뒤에 그 CCTV를 보니 그 시간 대에.....

○**윤건영 위원** 제가 다시 물을게요.

우리가 CCTV를 봤는데 그때 지사님 보셨어요?

○**증인 김영환** 제가 봤지요. 그 뒤에 보지요.

○**위원장 신정훈** 사고 나고 나서?

○**증인 김영환** 사고 나서 본 겁니다.

○**윤건영 위원** 위증을 하고 계신 겁니다. 저한테는.....

○**증인 김영환** 아니, 제가 어떻게 위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윤건영 위원** PPT를 보세요. ‘우리가 CC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물이 1mm도 차지 않고 있다는 걸 보고 있었습니다’라고 지사님이 저한테 이야기하신 거예요.

1분만 더 주십시오.

○**증인 김영환** 글쎄, 말씀을 그렇게 이해를 하셔서 그런데 제가 대통령 계신 자리에서도, 오송에 오셨을 때 대통령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침수에 의한 물은 맑은 물이고 제방 붕괴로 인한 것은.....

---

- 윤건영 위원 아니요, 지금 CCTV를 보고 있는지를 제가 물어봤잖아요.
- 증인 김영환 그러니까 그 뒤에……
- 윤건영 위원 지사님은 CCTV를 보셨다고 하셨어요.
- 증인 김영환 그럼 봤지요. 여러 번 봤지요. 수도 없이 봤지요. 그러나……
- 용혜인 위원 아니, 그 순간에 보고 계셨냐고요.
- 증인 김영환 그 순간에는 볼 수가 없지요.
- 윤건영 위원 그렇게 봤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지금.
- 증인 김영환 아니, 4시간이나 그런 상황이 발생됐는지를 몰랐던 제가 어떻게 그 시간에 CCTV를 볼 수 있습니까?
- 윤건영 위원 아니, 지사님이 이야기한 걸 제가 PPT에 올려놨잖아요.
- 증인 김영환 그러니까 그거는……
- 윤건영 위원 거짓말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 증인 김영환 아이, 거짓말 아닙니다.
- 윤건영 위원 위증하신 거라고요.
- 증인 김영환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 윤건영 위원 위원장님, 1분만 더 주십시오.
- 위원장 신정훈 진행되고 있어요.
- 윤건영 위원 다음 PPT.

지금 도지사가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요. 충북도 상황실에는 청주시 CCTV가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도지사님? ‘예, 아니요’로만 답하십시오.

청주시 CCTV,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미호천 CCTV가 연결돼 있지 않습니다. 알고 계세요?

- 증인 김영환 위원님, 10초만 얘기하겠습니다.
- 윤건영 위원 아니, 알고 계시냐고요.
- 증인 김영환 그 CCTV가 아니고……
- 윤건영 위원 제가 다음 질문 할 거예요.
- 증인 김영환 청주시 CCTV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 윤건영 위원 당연하지요. 충북도에 있는 궁평지하차도 CCTV는 당일 날 충북 상황실과 연결이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일 날은 충북도 상황실에서는 CCTV를 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지사님은 계속 우리가 실시간으로 CCTV를 봤다고 이 청문회장에서 또는 기관보고장에서 거짓말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 증인 김영환 아니, 윤건영 위원님, 지금 우리 궁평차도에는 6개의 CCTV가 있습니다.
- 윤건영 위원 제가 적어 놨잖아요. 6개 CCTV가 있는데……
- 증인 김영환 6개의 TV를 봤다는 말씀이지 청주시의 CCTV를 제가 봤다고 말한 적이 없지요. 그걸 볼 필요가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윤건영 위원 아니, 말장난을 계속하고 계신데요.

○증인 김영환 미호강은.....

○윤건영 위원 도지사는 위증을 하신 거예요. 저희가 상임위 차원에서 고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님.

○증인 김영환 위증도 좋은데 미호강은 이번까지 범람한 적도 없고 월류한 적도 없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CCTV는.....

○윤건영 위원 도지사님, 제가 묻는 말에 답변을 하세요. 계속 이상한 말로 빠져나가시고 계신데.....

○증인 김영환 궁평차도에 세종시와.....

○윤건영 위원 도지사님, 묻는 말에 답변하세요.

CCTV를 실시간으로 보고 계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제가 밝혀낸 거로는 도지사님이나 또는 도에 있는 상황실에서도 CCTV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당일 날.

○증인 김영환 당일 날이 아니고 당일 날 오후부터 우리가 그 상황, 거기 안에 차가 몇 대가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경찰은 물론이고 모두 다 CCTV를 봤습니다.

.....

○위원장 신정훈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증인 김영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신정훈 지금 김영환 증인은 지속적으로 말을 섞어요. 지금 우리가 묻는 것은 뭐냐면 지사님이..... 증인께서 ‘우리는 실시간으로 다 보고 있었고 1cm의 물이라도 다 확인하고 있었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다시 ‘내가 직접 본 건 아니다’라고 바꿨어요. 내가 직접 안 봤으면 다른 재난관리 부서에서 현장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 이런 주장으로 들려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궁평지하차도 지하의 침수 상황을 사고가 터지고 나서야 한참 후에 확인하는 차원에서 CCTV를 봤다는 이야기지, 그때 당시에 제대로 대응했느냐 여부를 지금 따지고 있는 질문에 왜 답변을 그렇게 막 섞어 가지고 변명하시고 그러십니까?

중요한 것은 충북도가.....

○증인 김영환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장 신정훈 그 현재 상황을 제대로 장악하고 있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도지사가 봤느냐 이걸.....

○증인 김영환 안타깝게도 제가 궁평차도에 물이.....

○위원장 신정훈 제 말 들으세요.

도지사가 보지 않았다는 것을 탓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증인 김영환 볼 수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그러니까요. 그런데 본인은 그렇게 발언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수정하셨으니까 인정할게요.

두 번째는 재난관리 부서에서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증인 김영환 도로관리사업소에 1명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7시 35분에 현장으로 출동한 것입니다. 거기는, 궁평차도에는 6개의 CCTV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돼서 세종시

에서 오는 것, 청주에서 가는 것들이 다 잡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사고가 일어나고 어떻게 해서 차가 거기에 했는지를 알게 되는데 그것을 본 것은 제가 본 것이 아니라 도로 관리사업소에서의 CCTV가 채집이 돼 있고, 그것은 검찰에 가 있고 경찰에 가 있고……

○위원장 신정훈 그만하세요.

증인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박정현 위원 본인이 보셨다고 지난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증인 김영환 맞습니다.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무슨 오해를 해요?

○윤건영 위원 오해가 아니라 거짓말을 이야기한 거예요. 위증으로 고발합니다.

○증인 김영환 아니, 제가 그……

○박정현 위원 국정조사장에서 오해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용혜인 위원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거짓말하고 저렇게 물으면 저렇게 거짓말하고.

○위원장 신정훈 기록이 남아 있으니까요 충분히 그 말씀에 대한 오해 여부하고 진위 여부는 또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장이, 실제 상황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었느냐 여부가 저희들에게 남는 여전한 아쉬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관리되고 있었다 할지라도 증인께서는 7분 내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이었다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 지금 질문하시는 위원님들은 그렇지 않은 정황들을 또 역으로 같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함께 참고해서 좀 더 절제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모경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경종 위원 이한울 주무관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나오는 동안에 조희송 전 금강유역환경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앞에 앉으시지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신정훈 위원장, 서범수 간사와 사회교대)

PPT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면)

이 자료는 금강환경유역청의 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에 따른 기술검토라는 제목으로 만든 공문입니다.

빨간색 박스에 보면 기존 제방을 철거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당시 금강청에서는 이 부분 확인을 현장에서 했습니까, 못 했습니까?

○증인 조희송 그 당시 담당 직원이 현장 출장을 나갔고요. 허가 기간 연장에 관한 신청이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보지는 않고 남은 공사 물량 그다음에 공사 진척 상황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연장 신청한 기간이 적정한 건지 그걸……

○모경종 위원 정확히.

○증인 조희송 예.

○모경종 위원 그러면 이게 무슨 공사에 대한 하천점용허가였습니까? 무슨 공사지요?

○증인 조희송 도로 확장 공사……

○모경종 위원 도로 확장이지요? 그러면 어떤 도로입니까? 지금 보이는 이 도로입니까,

아니면 다리처럼 보이는 저 도로 확장입니까? 후자지요?

○증인 조희송 제가 정확하게 저 사진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 임시제방 철거하고……

○모경종 위원 제가 알려 드릴게요.

지금 보이는 저 빨간색 박스에 있는 부분.

다음 사진, 제가 말씀드린 것 띄워 주세요.

이게 2023년 7월입니다. 사고가 나기 직전인 것 같은데요. 지금 파란색으로 가운데 있는 부분 옆에 제방 자체가 아예 없어져 있는 상황 보이시지요, 금강청장님? 보이시나요?

○증인 조희송 예.

○모경종 위원 다시 PPT.

아까 그 사진을 보면 결국에는 공사를 하는 지점이 어디냐인 겁니다. 공사기간 연장을 갔는데 공사하는 지점을 안 보고 도대체 어디를 본 겁니까?

이한울 주무관께 여쭙겠습니다.

언제부터 자연재난과에 근무하셨지요?

○증인 이한울 21년도 7월부터 근무했습니다.

○모경종 위원 그러면 2023년에 이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졌는데 2022년, 1년 전만 거슬러 올라가 보면 1년 전에도 청주나 충북지역에 많은 비가 내려서 여러 가지 많이 소란스러웠을 것 같은데 기억나시는 것 있으세요?

○증인 이한울 따로 기억나는 것은 없습니다.

○모경종 위원 어쨌든 매년 홍수 또는 폭우, 호우피해에 대해서 많은 일들을 하시기는 하셨나요?

○증인 이한울 재대본이 가동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회의장 준비라든지 여러 일을 해 왔었습니다.

○모경종 위원 그럼요. 그게 본인의 역할이시잖아요. 그렇지요?

2022년 7월·8월만 찾아봐도 해당 지역에, 충북지역이나 청주 무심천이나 미호천 관련해서 호우피해가 너무나도 심하다, 그다음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돼서 홍수가 위험하다라는 여러 가지 기사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통 성흔수 주무관님처럼 행복청에 있는 직원이 직접 전화를 해서 어떤 무언가 정보를 전달한 적도 있나요?

○증인 이한울 아니요,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모경종 위원 없지요? 보통 없고 2023년 7월 이 안타까운 사고 이때 처음 이런 전화를 받아 보셨지요, 다른 기관으로부터?

○증인 이한울 이번 전화는 그렇습니다.

○모경종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되게 이례적인 상황이네요? 그렇잖아요?

당시 7시 58분까지 성흔수 주무관이 전화를 하셨다고 하는데 7시 어간에는 도청에서 긴급상황회의가 이루어지고 있던 건 알고 있으셨어요, 재난안전대책회의?

○증인 이한울 예, 회의가 두 번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모경종 위원 그 말인즉슨 현재 충북도에서도 재난안전대책회의를 해야 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고 자연재난과의 주무관으로서, 그 주무부서로서 일을 열심히, 온 촉각을 곤

두세워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증인 이한울** 그렇게 업무에 임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모경종 위원** 그렇지요. 그런 상황에서 행복청의 주무관으로부터, 아까 네 번째는 못 받으셨다고 하시니까 세 번이나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러면 평소에 행복청 광역도로과에서 보고를 하는 보고 주관인이세요? 보고 계통이세요? 아니지요?

○**증인 이한울** 아닙니다.

○**모경종 위원** 보고 계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세 번이나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도 그 내용을 주무관님 혼자서 알고만 계셨던 겁니까?

○**증인 이한울** 예, 그 당시에 그렇습니다.

○**모경종 위원** 행복청에서 전화가 왔다고 당시 팀장에게도 안 알렸습니까?

○**증인 이한울** 예, 그렇습니다.

○**모경종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당부 말씀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비슷한 세대인 것 같기도 하고, 주무관님께서 많은 것을 짊어지고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자리는 주무관님을 추궁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주무관님이 잘못했으니까 책임져야 되는데 왜 책임 안 졌어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자체를 밝히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이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더 진실 자체에 다가가 보자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지금 대답 안 하셔도 또는 대답을 왜곡하셔도 제가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직 기회는 이번 국정조사 기간 동안 남아 있습니다. 그 안에 마음을 바꾸시고 진실에 더 다가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범수** 모경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들어가시지요.

다음은 박수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민 위원** 제가 금번 국정조사를 하면서 처벌은 많고 치유는 없다 했는데 이 예방도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고민스러워서 생각을 해 보는데 저희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도 이번에 국정조사에서 논의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제가 보니까 처벌의 범위가 넓어지고 높아지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의 기본 설계인데 그러다 보니까 책임 소재가 오히려 불분명해지고 법적으로 처벌이 높아지니까 이게 그 법적인 처벌을 감안해서 사후 대응 사항이 굉장히 모호해지는, 저는 현재 그런 거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당 위원님들이 지금 굉장히 진실규명에 노력하시는 데 저는 그 부분 존중합니다. 대단히 존중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진실이 규명돼야 되고 치유가 되어야 하고 예방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지금 법의 기본 열개가 그것을 촉진하고 도와주는지 저는 국정조사를 진행하면서 상당히 회의감이 드는데 청주시장님, 지금 기소되셨지요?

○증인 이범석 예.

○박수민 위원 기소된 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한다 답변을 주셨던 게 있습니다. 맞습니까?

○증인 이범석 예.

○박수민 위원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되십니까?

○증인 이범석 중대재해처벌법상 공공시설의 포괄적 지배·운영·관리주체의 경영상 책임자가 돼야 되는데 지금 하천공사구간에 대해서는 두 가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금강유역청에서 하천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이 사업은 우리가 그동안 미호강 유지·관리했지만 하천 공사가 시작됨으로 인해서 관리 책임은 금강유역청으로 넘어가는 거고 완공된 시설을 준공 고시한 날부터 다시 유지·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하천법 규정이나 그리고 사업시행계획 고시에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청주시가 포괄적 지배·관리·운영주체가 될 수도 없고 그리고 그 공사구간 한 군데에 도로확장 공사가 있는데 이 공사는 금강유역청의 점용허가로 행복도시건설청에서 발주를 한 공사입니다.

따라서 하천법의 점용허가청인 하천관리청인 금강유역청이 지도·점검할 의무가 있고 발주청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청주시가 하천 공사 구간에 대한 포괄적 지배·관리·운영주체가 될 수 없는 사안입니다.

○박수민 위원 제가 요약을 해 보면, 지금 제가 유가족께 들었으니까. 사후관리를 잘못해서 청주시와 청주시장님과 유가족의 사이가 나빠질 수는 있고 그거는 제가 확인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임시제방에서 터진 것 그다음에 교통통제를 못한 것 두 개에서 터진 건데 그 둘 중에, 교통통제나 임시제방 관리에 청주시장님 책임 있으세요?

○증인 이범석 포괄적 지배·운영·관리주체 대상이 없습니다.

○박수민 위원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의 모순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지금 충북지사님을 향해서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들이 가고 있는데 충북지사님이 당연히 재난과 안전은 최고의 책임을, 최고의 주의를 기울여셔야 되는데 또 저희가 모든 책임을 다 하면 대한민국에 제일 높은 사람은 대통령이에요.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 해외에서도 보고 결국은 현장에서 국민들을 가장 안전하게 지키는 거는 현장 책임자입니다.

그러니까 현장 책임자에게 권한을 안줬다든지, 예산을 안줬다든지, 교육의 기회를 안줬다든지 그 현장 책임자를 관리를 안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충북도지사님의 책임이 있다면 엄정히 쳐야 됩니다.

그런데 현장 상황이 터지면 현장의 전문가를 명확히 해서 그 부분이 분화가 돼 있어야지, 전담이 돼 있어야지 국민이 안전한 것이지 높은 사람만 계속 추적해서 처단한다고 했을 때 이것이 해결이 되겠느냐. 결국은 변호사, 법률 쪽만 비용을 벌 수 있는 것이고 이게 상처를 더 키우고 치유와 예방은 이거는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저는 이런 견해를 느낍니다.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증인 김영환** 제가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말씀드리는데 제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또는 무슨 기소를 피하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마는 이것은 중대재해시민법의 첫 번째 사례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포괄적으로 되거나 예측 가능하지 않거나 인과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광역에 이 책임을 묻게 될 경우에는 저뿐만이 아니라, 저는 이걸로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장관님들이 또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또 급기야는 대통령까지 이것을 포괄적으로 묻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번 사태를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중대재해시민법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행안위가 많이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 개인적인 무슨 요청을 드리거나 도움을 받을 생각이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면에서 제가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습니다.

미호강은 넘치지 않았습니다. 범람하지 않았습니다. 월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임시 제방이 아닙니다. 임시 불법 제방인데 임시 불법 제방은 대법원 판결에 훗더미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뚫었고, 뚫어서 그것이 덮치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시간을 몇 초, 몇 분을 가지고 그거를 통제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거를 또 면피하려고 그렇게 들리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 드리고.

○**위원장대리 서범수** 죄송한데 좀 정리하시지요.

○**증인 김영환** 예.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좀 잘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민 위원** 3분 안 하겠습니다. 1분만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범수** 예.

○**박수민 위원**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향후에 예방을 위해서 이 사건에서 비롯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꼭 논의 좀 했으면 합니다.

저는 진실이 가려지는 것 반대합니다. 책임 있는 사람이 책임을 면하는 것 안 됩니다.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이 그것을 촉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고 현장의 책임자에게 확고한 권한과 책임과 예산을 주는 법적 개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도지사와 시장은 당연히 모든 정치적 책임을 가지고 있고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습니다. 거기에 성실히 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하나의 일에만 매진했을 때는 다른 일은 또 구멍이 뚫리게 돼 있는 것입니다. 종합 행정을 다루는 것이 시장과 도지사입니다. 저는 이 현실을 생생히 전달드리고요. 이견해를 이번에 국정조사에서 꼭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범수** 박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희 위원 청주 서원구의 이광희입니다.

저는 참사 이후에 지난 시기 동안 사회적 참사를 대처하는 충청북도와 청주시 그리고 정부의 일관된 2차 가해행위와 모멸행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저기에 보시면 분향소를, 저는 도의원을 8년을 했었습니다. 청주시청 대회의실보다 저렇게 좁은 분향소를 쓰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우리는 늘 분향소를 만들면 대회의실에 통상적으로 했지 저런 식으로 만들…… 저렇게 했어요.

그리고 현수막 문구에 보시면 ‘사고 사망자’로 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가서 내가. 그래서 ‘참사 희생자’로 제가 했다는 게 아니라 유가족들이 항의해 가지고 참사 희생자로 바꿨습니다.

그다음 것 보시면요.

49재 있기 전에 23년 7월 21일 동아일보에 오송 현장에 갔다고 상황 바뀐 거는 없다고 충북지사는 말씀하셨습니다. 저때 저 전후 해 가지고 한 번 희생자 가족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세 번을 만나셨다고 하는데 저때 한 번 만나고 그리고 그다음 해 탄핵이 이루어 진 이후에 12월 달에 만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만난 거는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으로 바뀌고 나서 오송참사 현장 가셨을 때 또 갑니다. 이렇게 세 번 가셨습니다.

그리고 49재 날 새벽에 시민분향소를 기습 철거를 합니다. 그리고 기습 철거한 것도 모자라서 여기에 철거를 막고 항의하던 그 활동가를 기소합니다. 검찰이 기소를 해서 법원에서 50만 원 정도로 그냥 약식기소로 처리를 하려고 하니까 검찰에서는 다시 재항고를 해서 현재 항고 중입니다.

그리고 23년 10월 달에 그대로 분향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김건희 씨가 청주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조롱하듯이 청주 동물원을 방문해서 먹이를 주고 옵니다. 그리고 이곳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하지도 않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러한 상황에서 2023년 10월 25일 날 호우 피해 관련 재난심리치료비 지원 안내라고 그제서야 오는데 1인당 100만 원 이내의 의료비 지원한다고 이렇게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비판하자 이 내용을 삭제를 했고 이 내용에, 이 사회적 참사, 오송참사는 생존자들이 있다는 말씀 거듭 드렸습니다. 이분들은 아예 이 안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7월 10일, 또 본인 동의 없는 개인 의료정보 무단 유출을 합니다.

그리고 2025년 7월 14일 날 6월 달에 한 번 김영환 도지사가 대통령이 오셨을 때 그때 유가족들을 만나서 2주기 추모기간을 하겠다고 하시고 그리고 공무원들에게 전부 리본을 달게 하고 그리고 본인은 술자리, 추모기간에 청주시장이나 시의원들과 함께 술자리를 갖습니다.

그리고 궁평2지하차도 오송참사 희생자 기억의 길에 추모 현판을 혐오시설이라고 저런 현수막이 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오송참사 추모비는 도의회 예산 전액을 삭감을 합니다. 피해자들의 의회 출입도 막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0일 날 기관보고 때 김영환 도지사는 정치 탄압이다, 목이라도 매야 하냐, 기소해라 이런 식으로 도민들을 분노케 하고 참사 피해자분들에 대한 2차 가해를 계속적으로 하십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저는 사회적 참사에 정부는 없었고 참사 이후 충북도와 청주시의 이 미온적인 대처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기억을 혐오로 만들고 있습니다. 마치 죄인처럼 일관되게 대우했고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도 수모와 고통을 안겼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말은 제가 한 게 아닙니다.

그날 살아오셨었던 그 참사 현장에서 살아남으셨던 분, 앞으로 좀 나와 주…… 잠깐 시간 좀 멈춰 주십시오.

생존자협의회 대표님, 나와 주세요. 나오시면 안 되나요? 마이크를 좀 전달해 주시면…… 마스크를 좀 쓴 것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노를 많이 하셨을 텐데 이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인 김00** 참사가 일어난 원인은 우선 지금 진상규명 밝히고 있으니 그거를 차치하고 나서라도 저희가 참사 이후에 느낀 굉장히 많은 불합리한 점들과 지자체들의 만행 그리고 저희들이 받은 2차 가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번에도 잠시 말씀은 드렸지만 저희 생존자들이 받은 2차 가해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너희들은 살았으니까 앞으로도 알아서 살아라’라는 계속된 일관된 태도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 참사가 바로 나고 나서 유일한 버스 생존자가 구급차에 탔습니다. 그런데, 물론 공무원일 것 같습니다만 도청에서 왔었든 시청에서 왔었든 여러 번 계속 구급차 문을 열어 보고 ‘왜 혼자 살아서 나왔어요?’ 인적사항을 계속 적어 가면서 그런 질문들을 계속해서 결국 그 생존자는 울음을 터뜨리게 됩니다.

저에게도…… 저는 그때 당시 친한 동승자 형과 같이 출근길을 가다가 저 혼자 빠져나오게 됐는데요. 저에게도 여러 번 동승자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인적사항을 적어 잤습니다. 시작부터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정말 중요한, 재난참사가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피해자의 조사입니다. 사망자가 몇 명이고 희생자가 몇 명이고 또 부상자가 몇 명인지. 하지만 7월 15일 참사가 일어난 이후에 충청북도는 8월 말까지도 저희들의 숫자조차 틀리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청은 10월 6일까지 똑같이, 도청과 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도청과 시청이 서로 공유를 안 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고 저희들을 그냥,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희들은 살았으니 알아서 살아가라라는 태도로 일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아까 의료비 지원해 주는 데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정신과 진료라는 게 받아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정신과 진료는 우선 예약하기조차 힘듭니다. 그리고 정신과 진료는 건강보험공단에 등록이 돼서 치료를 받으려면 나중에 학업이나 취업, 입학에 불이익을 받을까 봐 비급여로 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저희 생존자 가족 중에도 그럴까 봐 치료를 못 받으신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정신과는 자녀가 치료를 받아도 그 상담 내용은 부모한테도 안 알려 주는 그렇게 예민한 의료기록입니다. 개인 의료정보입니다. 하지만 지자체는 의료비를 지원해 준다는 명목하에 무단으로 계속 그 정보를 가져갔습니다. 그것을 작년 7월 달에 인지하게 됐고 저는 그 이후에 사비로 계속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유가족 중에 일부는 사비로 치료 받고 일부는 지자체가 쓰라고 한 동의서를 작성하고 지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아까 서범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료비 사용내역이 반의반의 반도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지원을 해 준다고 했는데 그 지원이 정말 행정편의의, 공급자 중심의 그런 지원이었습니다. 정신과를 가면요 약 위주로 처방을 해서, 그 약이 부작용이 굉장히 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운전하는 데 있어서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을 안 드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정신과 치료가 너무 안 맞으니까 유가족분들과 생존자분들이 다른 방법들을 조금 요구하는 게 사실 상담 이런 것들입니다. 하지만 저는 원칙적인 치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병, 외상이든 내상이든 마음의 병이든 원칙적인 진단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단 이후에 다른 방법들로 치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은 꼭 관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서범수 수고하셨습니다.

지사님, 잘 들으셨지요?

○증인 김영환 예,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범수 이런 부분은 바로바로 조치를 좀 해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증인 김영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범수 알겠습니다.

양부남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양부남 위원 박 검사장님, 서지 마시고 옆에 앉으세요. 그 앞에 앉아요.

고생이 많습니다.

○증인 박영빈 아닙니다.

○양부남 위원 오전에 이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가 수사 가이드라인을 정한 게 아닙니다. 나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정할 권한도 없는 사람이고 그럴 의사도 없습니다. 나는 국회의원으로서 충분히 법적 시각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은 이행조치라는 의무의 해석에 있어서 이것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실제로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막아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이행을 내가 해석했어요. 그 연장선상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렇다면 김영환 지사는 본인이 구축했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잘 작동하지 않았다, 관리 감독을 폐기했다는 점을 제가 주장하고 싶어요.

첫째, 7월 15일 참사 당일 김영환 지사의 행적을 보겠습니다. 07시 40분경 퇴청을 합니다. 집으로 갔어요. 그 이후에 죽 보면 07시 56분 미호천 월류 시작부터 해서 08시 31분부터 08시 35분에 피해 차량이 진입해서 피해자가 나옵니다. 즉 이러한 아수라장이 날 때 본인이 구축했던 체계가 잘 돌아가도록 한 게 아니고 고의적으로 방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 감독 의무를 해태했다는 게 주장입니다.

그다음 PT요.

이 궁평지하차도에 자동진입차단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충북도에서는 특별교부세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검찰에서는 충북도 공무원, 8명인가 7명인가

되지요?

○증인 박영빈 예, 7명……

○양부남 위원 이 사람들을 업과상으로 기소하면서 근거로 ‘이러한 것에 비춰 봤을 때 궁평지하차도의 침수 위험성을 인식했다. 그렇기 때문에 과실이 있다’라고 기소했지요?

○증인 박영빈 예, 그렇습니다.

○양부남 위원 그런데 김영환 지사에 대해서는, 물론 죄명은 틀립니다. 죄명은 틀리지만 노력했기 때문에 죄가, 불기소 이유로 사용했어요. 자동진입차단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특별교부세를 신청한 걸 가지고 충북도 공무원들은 업과상에 대한 증거로 썼고 김영환 지사의 중대재해법에는 불기소 자료로 활용이 됐어요.

그런데 저는 이 똑같은 상황에서, 물론 죄명은 틀리지만, 김영환 지사도 궁평제2지하차도가 침수 위험이라는 인식을 했다고 보여져요. 그러면 본인도 이게 위험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막아야 되는 관리 감독 의무, 본인이 만들었던 시스템이 작동되도록 해야 될 의무가 있었다. 이것을 안 했다. 그래서 나는 관리 감독을 해태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금강홍수통제소에서 그날 04시 10분부터 홍수주의보를 발령하지요?

○증인 박영빈 예, 그렇습니다.

○양부남 위원 충북도 공무원들은 이 문자 메시지를 받은 것이 근거가 돼서 기소가 됐어요.

○증인 박영빈 그에 따라서 상황 관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양부남 위원 여러 사유가 있지만 이 문자를 받고 나서도 당신들이 상황 관리를 하지 않았다, 침수와 범람 위험이 있는 데를 알았다, 문자를 받았으니까. 그런데 공무원들이 안 했다 해서 기소 근거로 썼습니다.

김영환 지사님께 질의하겠어요.

이 문자 받으셨습니까? 전 도민한테 다 잤습니다.

○증인 김영환 예, 받았을 것입니다.

○양부남 위원 받으셨어요?

○증인 김영환 예, 그런데 그 인지를 못 했지만 받았을 것입니다.

○양부남 위원 받으셨으면 그 문자를 캡처를 해서 저한테 좀 보내 주시지요. 이것 중대한 제 질의입니다. 왜냐? 만약 04시 10분에 이 문자를, 전 도민한테 잤는데 이 문자를 받고서도 정말로 이 재해 상황을 막기 위해서 아무런 조치를 안 했다면 이거는 분명히 과실이 커진 것이고, 두 번째 이 문자를 받지 않았다면 지사님이 충청북도에 안 계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검찰 이것 수사 안 했지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나도 검사해 봤지만 물어보는 것 자체가, 기억할 수 없는데 이것을 내가 꼭 확인하고 싶어요. 지사님이 이 문자를 안 받았다면 그날 지사님이 충청북도에 안 계신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받았다면 아무런 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과실이 큰 겁니다.

그다음 보겠습니다.

그다음 PPT.

지금 검찰에서는 사전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잘 돌아가도록 조치만 했으면

된다는 게 주장인데 과연 그러면 김영환 지사께서 해야 했던 안전보건체계가 정상적으로 돌아갔는지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는데 시간이 끝났으니까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범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박정현 위원 대전 대덕구 박정현 위원입니다.

시간 잠깐 멈춰 주십시오.

염형철 참고인 나와 주십시오.

염형철 참고인, 오늘 국정조사에서 어떤 지위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참고인 염형철 저는 시민진상조사단의 일원으로 사고 이후에 원인과 문제점들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왜 별도의 시민진상조사단을 구성해서 활동한 거지요?

○참고인 염형철 정부에서 이렇게 큰 사고가 났음에도 합당한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박정현 위원 시민조사단 최종보고서가 2024년 5월 16일 날 발간됐네요?

○참고인 염형철 예.

○박정현 위원 그리고 나서 청주지검에서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건 관련해서 수사 결과가 올해 1월 9일 날 발표가 났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시면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관련해서 수사 결과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청주시장,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시공사 전 대표이사, 시공사 이렇게 해서 현재까지 총 45명을 기소했고 충청북도지사는 불기소 처분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궁평지하차도 관리청인, 궁평지하차도에서만 14명이 희생이 됐는데 충북도지사만 불기소 처분된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이해할 수가 없고요.

PPT 안 띄우시나요?

(영상자료를 보면)

여기 내용에 보면 1, 2, 3, 4가 다 사전예방조치를 취했다는 겁니다. 사전예방조치를 잘 취해서 안전보건의무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해서 불기소 처분을 했는데 이게 맞습니까? 사실은 사전예방조치를 취한 건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재해 때문에 사건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 지휘하는 게 도지사의 책무고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소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고인 염형철 위원님, 제가 보기에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 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조사에서 주로 참여했던 부분은 수해 발생, 제방 붕괴와 관련한 부분과 그쪽에 집중돼 있어서 궁평터널과 관련해서는 준비를 못 했습니다.

○박정현 위원 재난이 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골든타임을 지키는 거잖아요?

○참고인 염형철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제가 보니까 염 참고인은 이번 오송참사에서 제방이 붕괴된 후에 30분 이상 골든타임이 존재했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고요. 이 골든타임이 지켜졌으면 14

명의 안타까운 희생자도 없었고 16명의 생존자들도 사실은 살아 있는 게 살아 있는 게 아닌 상황인 거잖아요, 아까 생존자의 발언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염형철** 그 부분은 30분만이 아니라 사실은 7시 3분 감리단장께서 이미 물이 넘치고 있다, 제방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라고 신고한 그 시점부터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그거보다도 더 빠르게 4시 10분 정도부터 감리단장이 현장에서 작업을 했다고 했었는데 그 작업을 할 때 적절한 장비가 지원이 되고 그리고 인력이 지원됐다면 충분히 대비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골든타임은 훨씬 더 길게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충북도도 그렇고 청주시도 그렇고 행복청도 그렇고 금강유역환경청 역시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책임을 회피했기 때문에 이 네 기관들이 모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현 위원**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참고인 염형철** 현장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사고 현장은 청주의 관문이기 때문에 들락날락하면서 그곳이 사고 위험이 없다 내지는 이곳이 홍수취약지역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판단한다는 것은 대단히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박정현 위원** 김영환 도지사께서 계속 얘기한 게 ‘미호천은 한 번도 넘친 적이 없었다’, 이 주장이 그런 거지요?

**○참고인 염형철** 그렇지요. 전혀 저는 터무니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공간은 병목구간이기도 하고 더구나 설계에서 제방을 절개하고 아예 그 제방이 있던 위치에다가 교각을 세우는 것이었거든요. 따라서 그 설계도를 살펴보는 담당 공무원들이라면 분명히 그 사고에 대해서 사전에 대비하고 그리고 조치를 했었어야 됩니다. 이곳이 홍수에 취약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고 문제가 많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어서 조금 이따가 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범수** 수고하셨습니다.

정춘생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정춘생 위원** 도지사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도 중요하지만 저는 피해자, 피해 생존자들과 그리고 유가족에 대한 충분한 지원, 트라우마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저는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충청북도와 청주시 차원에서 피해 생존자들과, 유가족들과 충분한 소통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김영환** 한다고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춘생 위원** 최선을 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우선 2023년 9월 1일 충청북도가 유가족 동의 없이 분향소를 철거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놓고 기습 철거했습니다. 그것도 49재를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에 기습적으로 철거했어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변명을 하실 겁니까?

**○증인 김영환** 좀 오래된 일이라서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정춘생 위원** 그게 오래된 일은 아니지요.

○증인 김영환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춘생 위원 피해자 중심주의라고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들의 주장을 다 들으라는 게 아니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 사건을 바라보고 그분들은 왜 분향소가 필요했고 왜 조형물을 설치하려고 하는지, 그것을 왜 기록하고 기억하려고 하는지 그것을 보여야 됩니다. 정치인이라는 게 감수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증인 김영환 예.

○정춘생 위원 그런데 왜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지 않고 왜 행정적으로 그렇게 기습적으로 철거를 해야만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증인 김영환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저는 그렇게 기억을 못 하고 이유가 있을 건데요.

○정춘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시겠습니까?

○증인 김영환 물론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정춘생 위원 사과하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의원실에서 파악하기로는 심리치료 과정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위반 등의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아까 일어섰었는데요 생존자협의회 대표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잠깐 시간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생존자와 유가족 등의 없이 치료병원으로부터 개인 의료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참고인 김00 치료비를 지원해 준다는 명목하에 저희들의 동의를 받지도 않고 의료기관인 정신과로부터 저희의 개인 의료정보들, 진료비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투약 그런 것들을 다 무단으로 가져갔습니다.

○정춘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고요. 청주시 담당 공무원이 의료진의 처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비용을 깎아서 제외한 사례가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참고인 김00 제가 알기로는 정신과 트라우마가 있으면 신체적인 영향도 있기 때문에, 비타민 처방을 한 것을 삭감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춘생 위원 지사님, PPT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충청북도에서 배포한 호우피해 관련 재난심리치료비 지원 안내문입니다.

안내문 보시면 정신적 치료와 직접 관련성 여부는 의료진 판단으로 적용한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지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요?

자의적으로 공무원이 판단할 문제 아닙니다. 특히 재난 참사 관련된 트라우마 치유는 그 누구도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여기까지는 지원이 되고 여기까지는 안 되고, 이것은 공무원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증인 김영환 우리 공무원들이 저런 것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해서 생긴 일이라고 생각하고 만약 그런,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지난번 국감 때도 제기가 됐습니다마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춘생 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실에서도 생존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 봤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 지원을 원하나? 가장 시급한 게 그냥 일반 정신과 진료보다도 재난정신의학…… 아시지요, 재난정신의학이 있다는 것? 재난정신의학 전문의가 초기 진단부터 맞춤형 진료체계까지 아우르는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지원하시겠습니까?

○증인 김영환 구체적으로 알아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춘생 위원 참사 트라우마는요 겪어 보지 않고는 저는 감히 그것을 상상도 할 수 없고 다 있다고, 공감한다고도 함부로 얘기할 수 없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피해자들의 의견이고 생존자들의 의견이고 유가족들의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소통하십시오.

○증인 김영환 예.

○정춘생 위원 제가 보기에는 청주시도 그렇고 충청북도도 그렇고 거의 소통을 안 했다고 보거든요.

(서범수 간사, 신정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앞으로라도 행안부에 피해지원단이 설치되어 있으니 이 과정에 충청북도, 청주시도 적극적으로 어떤 부분을 치유할 것인가, 치료할 것인가 이 부분은 따지지 말고 제발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면서 조율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증인 김영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춘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달희 위원님.

○이달희 위원 시장님, 지사님, 국가의 책무 중에 가장 중요한 책무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 현장에 있어 보면 매우 지나치게 대비를 해도 사회재난이나 자연재난이 발생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재난 후 상황 관리가 가장 중요하고 국가재난, 이렇게 공직자들의 실수나 미처 대비하지 못한 부분에 일어나는 참사에 대해서는 정말 국민들이 위로받고 존중받고 치유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에는 이의 없으시지요?

○증인 김영환 예.

○이달희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면, 무안에서 작년 연말에 일어난 12·29 여객기 참사에 보면 유족 지원 대책이 있습니다. 거기는 워낙 큰 참사고 해서 국회에서 특별법도 만들고 해서 지원 규모를 다 짜 놨거든요.

청주시나 충청북도에서 검토 안 해 보셨지요? 어떤 대책을 하는지 한번 꼼꼼히 보시고 광역이나 기초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모자라는 것은 이럴 때 국가에 직접 요청을 해서……

어떤 참사는 국가에서 다 책임지고 지원이 되고 어떤 참사는 소외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꼼꼼하게 비교하면서 오송참사에 대해서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영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달희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현장에 가 보니까…… 저희들이 보통 주민 입장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희생자 입장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신고하는 게…… 도의 재난안전실, 오늘 여러 도로관리, 행복청 얘기 나오는데 가장 먼저 신고하는 데가 어디겠습니까?

○**증인 김영환** 기초하고 119, 경찰 여기가 1차 재난안전법에서도 주체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 1차 가고요.

○**이달희 위원** 제일 먼저, 제일 아쉬운 게 119거든요. 그런데 제가 현장에 가 보니까 충청북도랑 충청북도 119본부가 조인되는 시스템이 부족합니다. 혹시 다른 시도에 어떤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보신 적 있습니까? 비교해 보셨어요?

○**증인 김영환** 비교는 안 했지만 우리가 뒤떨어져 있다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니까 살펴보겠습니다.

○**이달희 위원** 119본부랑 재난안전실은 거의 같은 공간에 있어야 주민 신고가 제일…… 우리 주민들이 재난안전실 전화번호를, 충청북도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가장 먼저 오는 곳이 119인데 119가 지금 충청북도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증인 김영환** 소방본부가 따로 다 있기 때문에 떨어져 있습니다마는 재난안전실을 지금 우리가 확대하고 새로 지을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좀 더 긴밀하게 본부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달희 위원** 소방본부 안에, 이게 체계가 다르더라도 재난안전에 대한 부분은 같은 업무잖아요.

○**증인 김영환** 그렇습니다.

○**이달희 위원** 소방본부 안이나 바로 옆에 같은 창을 두고 같이 소리가 들릴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증인 김영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달희 위원** 충청북도 전체 CCTV가, 북도 안의 재난안전관리실에서 취급하는, 들여다보는 CCTV 몇 대입니까?

○**증인 김영환**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수십 대, 삼사십 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달희 위원** 삼사십 대 훨씬 넘습니다.

○**증인 김영환** 그렇습니까?

○**이달희 위원** 예.

실장님, 몇 대지요?

충청북도 전체 재난안전실에서 1만 대도 넘을……

○**증인 김영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재난안전실에 있는 것을 말했는데 행안부에서 끌어오는 것까지 하면 170대가 있다고 합니다.

○**이달희 위원** 관리해야 되는 게, 들여다보고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그래서 지금 만약에 저렇게 미호천이 넘치면 그 부분을 다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끌어와서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충청북도 가 보니까 재난안전 관련돼서 소방본부랑 충청북도 재난안전실이 너무 낙후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강력하게 요청하셔서라도 다시 시스템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증인 김영환** 내년에 증축 계획을 지금 하고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개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다음은 위성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요 박준규 재난안전관리실장이 앞으로 와서 앉으시고요. 그리고 다음 이 상래 청장님, 앞으로 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님도 거기 서시고요.

우선 행복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장을 언제 부임하셨지요?

○증인 이상래 22년 5월 중순에 부임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22년 5월.

그러면 청장 재임 시에 현장을 다 방문하셨습니까?

○증인 이상래 전체 공사 현장을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순회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공사 현장이 몇 개였지요, 그 당시에?

○증인 이상래 제가 정확한 개수 자체는……

○위성곤 위원 열세 곳이었어요. 열세 곳이었는데 앞서 얘기 들으면 하천 관련 현장은 가지 않은 것처럼 말씀을 해서……

○증인 이상래 가지 않은 게 아니고요, 23년 6월 달에 갔었습니다.

○위성곤 위원 가서 그러면 하천 제방 절개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어요?

○증인 이상래 특정 부분을 가리키면서 절개됐다는 사실은 들었습니다.

○위성곤 위원 매월 현장을 방문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부임한 지 1년 넘어서 자신 거예요? 그렇게 바쁘셨어요? 제가 볼 때……

○증인 이상래 사실은 현장 스케줄은 담당 국에서 짜는 대로 저희가 돌아다니기 때문에……

○위성곤 위원 청장으로서, 기본적으로 현장 다니면서 점검하는 것이 청장의 업무잖아요.

○증인 이상래 업무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위성곤 위원 관리 감독해야 되는 거고,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음, 재난안전관리실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특별교부세 2020년부터 신청하셨지요?

○증인 박준규 정확한 것은 그 당시는 그 업무를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위성곤 위원 그동안 몇 차례에 대해서 특별교부세를 얘기했는데 아직도 그것에 대해서 파악을 안 하셨어요?

2023년도에도 신청하셨지요?

○증인 박준규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때 담당하셨어요, 이 업무?

○증인 박준규 신청 당시에는 담당하지 않았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담당했어요?

○증인 박준규 저는 재난안전실장으로 당시 7월 1일 자 부임을 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7월 1일 자?

○증인 박준규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특별교부세가 6월에 교부가 됐잖아요?

○**증인 박준규** 예, 그것도 알고 있는데 7월 1일 자로 했기 때문에 신청 당시에는 제가 없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성곤 위원** 보고를 받으셨지요?

○**증인 박준규**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특별교부세 보고받으시고 도지사께 말씀드렸어요, ‘특별교부세 이렇게 확정됐습니다’라고?

○**증인 박준규** 그것은 교부 당시에 아마 예산이나 관련 부서에서 보고가 이미 이루어 졌을 겁니다, 6월이기 때문에.

○**위성곤 위원** 보고가 됐겠지요.

특별교부세는 재난특교였나요, 현안특교였나요? 당연히 재난특교였겠지요?

○**증인 박준규** 예,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위성곤 위원** 재난특교였을 거예요. 재난특교였다면 도지사께서는 이 차도의 위험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박준규** 개별적으로, 특별교부세가 그 단일 건이 아니고 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올렸기 때문에 여러 건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성곤 위원** 아니, 충북도에 특별교부세를 몇 건 정도 받으세요? 도 단위로 한 100건 돼요? 10건 이내일 건데요.

○**증인 박준규** 그러니까 그게 수시도 있고 정기분도 있기 때문에 당시에 몇 건이라고 제가……

○**위성곤 위원** 제가 얘기한 것은 행안부장관 특교를 신청하신 거잖아요, 6월에?

○**증인 박준규** 예, 6월……

○**위성곤 위원** 그 특교가 몇 건인지 몰라……

올해 몇 건 신청하셨어요?

○**증인 박준규** 글쎄,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제가 7월 1일 자 부임이기 때문에 신청 당시에는……

○**위성곤 위원** 도대체 아는 게 없군요.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증인 박준규** 그 재난 상황에 따라서 회의를 소집해서 재난 단계별로 상황에 따라서……

○**위성곤 위원** 상황을 전파하는 거지요?

○**증인 박준규** 예.

○**위성곤 위원** 실장님이 그러니까 밑에 있는 직원이 방재안전직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재난관리에 관한 재난관리 과목을 시험 보는 거거든요. 방재의 핵심은 전파에 있어요. 그런데 전파를 하지 않았어요.

○**증인 박준규** 접수에 대한……

○**위성곤 위원** 도대체 그런 교육을, 그런 관련된 교육을 합니까? 지사께서 그런 교육을 하라고 하셨어요?

○**증인 박준규** 말씀드렸듯이 지금 기관을 구분할 수 없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7회 했다는 것도 어느 기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도대체 무슨 교육을 하는 거예요? 상황이 발생했고 신고가 들어왔는데, 시민이 전화해서 하천이 범람할 것 같다고 얘기하면 알아 두라고 얘기했더라도 상황을 전파하는 게 공무원의 기본 상식 아닌가요?

○**증인 박준규** 그것은 접수자가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대해서……

○**위성곤 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왜 그렇게 시켰냐고요, 접수자가 그 모양으로 하게끔? 실장님, 직원 교육을 그렇게 합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실장님처럼 답변하면 누가 그 상황이 발생하면 신고하겠어요? 아니, 책임감이 없잖아요, 도대체 공무원으로서!

○**증인 박준규** 제가 전반적으로 수차례, 여러 차례 교육했다고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위성곤 위원** 교육을 했는데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 보면, 질의할 게 다른 게 있었는데……

(웃음소리)

좀 더 저는 공직자들이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묻는 것은, 시민들이 묻고 국민들이 묻는 것은 공직자들의 책임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 지사도 그렇고 실장도 그렇고 똑같잖아요.

○**증인 박준규** 저희가 상황에 따라 철저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부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정말……

○**박정현 위원** 14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일부 부족한……

○**위원장 신정훈** 정리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제대로 공직자를 교육했는데 도대체…… 너무 뻔뻔한 것 같아요.

○**박정현 위원** 14명이 죽었는데 일부 부족한 거라고?

○**위성곤 위원** 개인적인 감정은 없는데 너무 뻔뻔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위원장 신정훈** 증인, 들어가 앉아 주세요.

다음은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 지검장님, 앉아 주십시오, 제가 잘 보이게.

오늘 일부 야당 위원님들께서 중대재해처벌법을 너무 과다하게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 하셨고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바가 있습니다, 지검장님.

그런데 오늘 오후에 나온 판결에…… 아리셀 사고 아시지요?

○**증인 박영빈** 예.

○**이상식 위원** 그 형량이 얼마 나왔는지 들으셨습니까?

○**증인 박영빈** 아직 못 봤습니다.

○**이상식 위원** 15년 받았습니다. 아들도 15년, 두 부자인데요. 15년이고 5명이 법정 구속되고. 이렇게 무거운 처벌을 내린 이유가 지검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박영빈**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발생하는 중대사고에 대한 예방과……

○**이상식 위원** 그러니까요. 산업재해 OECD 국가 1위의 오명을 떨치고, 오명을 벗어나고자 대통령도 그렇게 지금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증인 박영빈** 예, 그렇습니다.

○**이상식 위원** 그런 분위기에 맞춰 가지고 판사님이 지금 15년을 아들하고 오너한테 둘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이사가 아들이 다, 총괄본부장이 하지 나는 모른다고 해도 그게 면책이 되지 않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 면을 볼 때, 이재명 정부가 기업 하는 CEO들에게 배임죄 같은 것은 경제적인 문제기 때문에 그것은 폐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의 생명, 근로자의 생명과 관련된 가치는 양보하지 않겠다는 이런 철학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같은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검장님이 지금 보시기에, 오늘 여러 가지 증언을 들었지 않습니까? 자연재난과 여주무관님 이야기 그리고 또 도로관리사업소 소장 이야기 이런 것을 들어 보니까 어떻습니까? 충북도에서 재난안전관리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고 잘 이행하고 있다고 판단합니까? 어떻습니까?

○**증인 박영빈** 재난 상황이 발생할 당시에 작동해야 할 기체들이 작동을 안 했고 공무원들이 준비된 절차에 따라 해야 할 것을……

○**이상식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왜 그러면 똑같은 아리셀 사고에서는, 오너가 알아도 얼마큼 알겠습니까? 그러나 오너한테 총체적인 책임을 지운 거거든요, 그 아들도 마찬가지. 그런 입법 취지라면 기소해 가지고 책임을, 법원의 판단을 최소한 받아 보기라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증인 박영빈** 다만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중대……

○**이상식 위원** 좋습니다. 한번 보세요.

한번 띄워 보세요, PPT.

(영상자료를 보면)

지금 검찰에서 몇 가지 불기소의 사유를 제시했습니다. 제가 한번 봤습니다. 이게요 그런데 전부 다 그거예요.

지검장님, 밑에 보이시지요? 보이지요?

○**증인 박영빈** 예, 보고 있습니다.

○**이상식 위원** 이게 전부 다 뭐나 하면 지하차도라는 물적인 시설 그러니까 하드웨어에 대해서만 전부 다 설시를 했어요. 그런데 지검장님, 이게 지하차도가 무슨 구조적으로 부실하게 시공되거나 아니면 뭐가 잘못돼 가지고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물적인 시스템이 붕괴된 것은 제방이지요. 지하차도는 멀쩡했다고요.

문제는 뭡니까? 그걸 체계적으로 미리 위험을 감지하고 대응을 못 했기 때문에, 교통통제를 못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14명이라는 생때같은 목숨이 쓰러진 것 아니겠습니까?

○**증인 박영빈** 교통통제가 안 된 게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이상식 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컴퓨터가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같이 작동해야지 제대로 돌아가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적인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중요하

다. 소프트웨어는 결국 사람들이고 시스템이고 한데 지금 보고하고 점검하고 또 전파하고 하는 이런 게 하나도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충북지사 책임자를 기소를 하셔서 검찰은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법원의 판단을 한번 받아 봤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기왕지사 이미 지나갔지만 지금 대전고검에서 다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증인 박영빈** 예, 그렇습니다.

○**이상식 위원** 그러면, 오늘도 새로운 증거 같은 게 나왔습니다. 청주지법에서 증인 한분이 2003년도 충북도 재난안전계획 전년도 것 베꼈다 증언을 했습니다. 아십니까? 그 증언이 나왔어요. 비상연락망도 빠트렸다.

이런 게 제대로 시스템이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교육훈련을 제대로 했으면 도로관리사업소 사람들이 당연히 경찰에 전파하고 했겠지요. 그것을 가지고 시스템이 제대로 됐다, 도지사가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검장님.

○**증인 박영빈** 재판에서 새롭게 드러난 사항하고 저희가 놓친 부분을 고검에서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식 위원** 그렇게 너무 객관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여기 오늘 청문회에 기왕에 지검장님 오셨잖아요. 다 들으셨잖아요.

○**증인 박영빈** 예.

○**이상식 위원** 그리고 새로운 것들도 많이 알게 되셨으니까 또 느낀 바가 있을 테니까 기회를 일부러 만드셔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대전고검에서 뭘 결정한 의사구조가 있을 텐데 거기에다가, 저도 행안위 위원으로서 의사결정 과정에 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안부나 경찰청의 어디에. 그렇다면 지검장님도 의견을 개진하십시오. 개진하셔 가지고, 지금 전체적인 사회의 추세가 우리 국민의 노동자의 근로자의 시민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처벌을 해야 됩니다. 역사적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재해뿐만이 아니고 역사적인 사례에서도 우리가 제대로 청산을 못 하고 처벌을 못 해 가지고 지나감으로써 똑같은 잘못이 반복되는 경우가 수없이 많았지 않습니까? 오늘 수원지법에서 오너, 대표이사하고 총괄본부장, 아들하고 아버지에게 똑같이 1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그 의미를 저는 잘 새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검장님.

○**증인 박영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회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김성회 위원** 경기도 고양시 김성회입니다.

아까 전에 존경하는 서범수 위원께서 위원장 사회를 보실 때 생존자분 말씀 끝나고 나서 ‘이런 건 고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도지사님이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는 장

면이 저는 오늘의 참 아이러니한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년, 2년 전에 이미 말씀을 듣고 고쳤어야 될 내용인데 이 자리에 와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생겨서 겨우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안타까운데요.

지난 15일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두 현장 점검하시면서 오송참사 현장도 직접 보고 유가족들과 대화도 나누셨고 유가족들 여전히 그날의 아픔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 눈물 속에 담긴 상처와 억울함이 과장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확인하셨을 겁니다. 생존자분들의 말씀도 정말 소중했고요.

그런데 현장조사 당일에 유가족들이 겪은 현실은 위로가 아니라 또 다른 상처였습니다. 이런 참담한 상황을 지켜보면서 유가족을 대신해서 충북도지사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지사님, 9월 19일 질의응답 종료 이후에 국악엑스포 가시기 전에 1시간 반 정도 시간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식사하셨습니까, 어디 다른 데 일정을 가셨습니까?

○증인 김영환 지금 잘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김성희 위원 질의가 끝난 직후에 유족 간담회가 시작이 됐지요. 그런데 도청 관계자들이 전부 다 나가는 장면 사진으로 확인 부탁드리고요.

(영상자료를 보면)

사실은 유족들의 말씀을 듣는 것도 필요하고 저희가 간담회를 밖에서 할 수도 있지만 그 자리에서 하는 것은 유가족들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듣는 자체가 위로라는 생각을 누구나 할 텐데 그런데 지사님 자리를 안 지킨 것에 대해서 유족이 직접 지적하면서 ‘우리가 악성 민원인 취급받는 것 같다’라고 호소까지 하셨습니다.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그렇게 가셨어야 됐을까요?

○증인 김영환 그날 유족들 그 자리에 제가 배석하는 게 좋을지를 검토했는데 제가 없는 것이 오히려 자유롭게 저희들에 대해서도 불만을 말씀을 하실 수도 있고,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나가시라고 했기 때문에 나갔지 우리가 유가족을 피하거나 악성 민원인으로 생각한 건 아니다 그렇게 말씀……

○김성희 위원 그 자리에 누군가는 남아 있어야 했지 않을까요?

청주시장님.

○증인 이범석 예.

○김성희 위원 위원장님도 그 당시에 청주시장, 관계자 계속 찾았는데 단 한 명도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청주시에서 있었던 일이고 그날 현장 간담회도 청주시에서 한 건데 아무도 안 나와 계실 수가 있었나요?

○증인 이범석 저희들은 참석 대상 아니라고 통보를 받아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희 위원 안타깝습니다.

여태까지 생존자나 유족들하고는 간담회나 면담을 좀 진행하셨습니까, 시장님?

○증인 이범석 사건 초기에 장례 지원하면서 조문하고 한 차례 면담했습니다.

○김성희 위원 45일째에 면담하다가 유족들이 이게 뭐냐고 뛰쳐나간 이후로 2년 동안 대화를 안 하셨지요?

○증인 이범석 그때 간담회 할 때 청주시의 법적 책임 공방이 되는 상황이 돼 벼려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김성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지만 공직자들이 피해자들과 이런 분들의 말씀을 듣는 것 만으로도 도움이 될 텐데, 그분들을 위로할 수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 될 것 같으니까 대화 자체를 안 했다는 자체가 이게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안타깝고요.

지사님, 직원들이 현장 추모 현판 설치 반대와 관련된 이야기, 도청 추모 조형물에 대한 이야기 나왔는데 이것 보고는 받으셨어요? 그런 유족들의 불만이 있었다는 보고는?

○**증인 김영환** 어떤 불만이요?

○**김성희 위원** 그런 것이, 현판이 설치가 되지 않고 조형물 예산이 깎이고 있다라는 유족들의 불만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냐고요.

○**증인 김영환** 그것은 유족들의 불만이 아니라 저도 불만이기 때문에, 도의회에서 그 예산이 깎였는데 그래서……

○**김성희 위원** 그때 저희들한테 되찾아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보니까 9월 16일에 도의회 열어서 재석 28명 중 전체 5000만 원 전액 삭감을 결정하는 데 찬성이 21명, 국민의힘 20명에 민주당 1명이 가결해서 이렇게 넘어갔는데 무슨 설득을 하셨어요, 지사님은?

○**증인 김영환** 그분들이 말씀한 것은 이것을 도청에다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도의원들과의 의사소통이 부족하다, 아주 반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결될 것은 저는 예상을 못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어떻든 그것을 복원할 것이고 또 어떤 방법으로든 제 임기 중에 아니면 조만간 조형물을 만들 생각입니다. 그 조형물은 추모비라기보다는 우리 도가 도민의 안전을 중시한다는 뜻에서 예술적인 공모를 통해서 또 유가족들도 동의해서 지금 진행되는 일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너무 걱정하지 않도록 제가 그것을 해결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희 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안 하고 1분만 쓰고 말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추가질문 안 하실 겁니까, 바로 있는데?

○**김성희 위원** 예,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그렇게 하십시오.

○**김성희 위원** 지금 생존자분도 와 계시지요? 마이크 좀 들어 주시고요.

지금 말씀을 죽 들으셨을 텐데 지사와 시장에게 궁금한 게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저희가 대신이라도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참고인 김00** 사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김성희 위원** 제가 시간이 부족하니까 질문 들으시고 두 분이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참고인 김00** 저희 유가족과 생존자들의 가해자가, 물론 지금 불기소돼 있는 도지사 고 기소가 돼 있는 시장님이지만 저는 가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최고 책임자. 도의적인 책임이라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정치적인 책임도 있고요. 과연 그 말을 하셨을 때 유가족과 생존자들을 진심으로 위로를 하고 그런 생각으로 하셨는지 진심으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법적인 책임을 떠나서. 언어기술적으로도 사실 사과를 하려면 사족을 달아도 앞에다 달고 뒤에다 죄송합니다라고 끝내야 됩니다. 하지만 ‘도의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하고 항상 사족을 다셨습니다.

저는 두 분께 유가족과 생존자 모두를 대표해서 그리고 열네 분의 희생자들을 생각해

서 어떻게 진심으로 사과하실지 이 자리에서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성희 위원** 지사님부터 해 주시지요.

○**증인 김영환** 어떻든 무고한 아무 죄 없는 시민들이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못한 이 참사에 대해서 도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로서 참으로 죄송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이범석** 이 참사의 관할지역 시장으로서 유가족 여러분과 생존자 가족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주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을 하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2차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문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3분으로 하겠습니다.

박덕흠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박덕흠 위원** 이범석 시장님.

○**증인 이범석** 예.

○**박덕흠 위원** 침수지역 현장에는 몇 시에 가셨지요?

○**증인 이범석** 오송 지하차도는 1시 좀 넘어서 도착했습니다.

○**박덕흠 위원** 이게 09시 5분에 부시장께서 사고를 인지했다고 돼 있는데 맞습니까?

○**증인 이범석** 현장에 사고가 있어서 부시장과 흥덕구청장이 현장 지휘하도록 하고 그 당시에 시내 인구밀집지역인 모충동과 신봉동에 침수가 심각한 피해가 있어서 저는 그쪽 현장으로 갔습니다.

○**박덕흠 위원** 성훈수 주무관이, 아까 질의했을 때 이야기 들으셨지요?

○**증인 이범석** 예.

○**박덕흠 위원** 공사 구간은 그래도 관리 감독 그 부분은 공사의 감독하는 부분에 책임이 좀 있다고 얘기 들으셨지요?

○**증인 이범석** 예.

○**박덕흠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청주시에서는 절단, 절개한 부분에는 결국은 관리 감독, 유지·보수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나머지 구간이야 당연히 업무 이관을 받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고 공사 구간만큼은 결국은 유지·관리·보수를 할 수가 없잖아요.

○**증인 이범석** 예, 맞습니다. 교량공사에 대해서는 혀가청인 하청관리청인 금강유역청이 지도·점검의 의무가 있는 것이고 발주청이 관리 감독 권한이 있고……

○**박덕흠 위원** 아니 그래도 혀가를 내준 금강청에 문제가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데 저는 그것보다도 공사하는 부처에서 이것을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다 수시로 현장도 가 보고 또 감리단을 사용을 해서 감독을 대리로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쪽에서의 책임을, 절개라든가 절단하든가 이것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유지·보수·관리 이것을 도에서나 청주시에서는 관리 감독할 수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증인 이범석 절대 공감합니다.

○박덕흠 위원 그리고 감리단장이 6시 14분에 청주시민콜센터를 통해서 하천수위 상승으로 오송읍 주민대피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지요?

○증인 이범석 예.

○박덕흠 위원 그런데 그때는 궁평지하차도도 위험하다 이런 얘기는 없었잖아요.

○증인 이범석 사실……

○박덕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청주시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버스가 교통통제를 해서 우회했다고 하는데 그 교통통제는 어디서 한 겁니까? 사고 버스사예요?

○증인 이범석 버스는 운전자가 통제된 구간을 우회해서 스스로 판단해서 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덕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 교통통제를 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비가 오니까. 그런데 그 교통통제를 경찰에서 했느냐……

○증인 이범석 통제는 침수된 구간만 통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러니까 그 통제를 청주시에서 했느냐 도에서 했느냐 경찰에서 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증인 이범석 그 당시 우회하게 된 배경은 37번 국도 구간입니다. 그 국도 구간을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통제를 했기 때문에 우회하는 길을 운전기사가 찾다가 그 길로 가게 됐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러니까 국도니까 충북도에서 했다는 얘기입니까?

○증인 이범석 버스의 노선 변경은 어디서 통제한 건 아닙니다.

○증인 김영환 도에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박덕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다음은 이해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해식 위원 이해식 위원입니다.

박영빈 검사장님, 나와서 앉아 주시지요.

○위원장 신정훈 이렇게 하시지요. 검사장님은 김영환 도지사님 바로 옆자리에 그냥 고정 착석해 주십시오, 추가질문.

○이해식 위원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에 보면 중처법상에 재해예방에 필요한 예산·인력·점검 등 안전보건관리계획의 구축 그리고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예산·인력·점검 등을 다 수행을 했다, 문제가 없다, 이행에 관한 조치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 결론인 것 같아요.

○증인 박영빈 예, 그렇습니다.

○이해식 위원 그런데 여기 중처법 시행령 10조에 보면 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서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에 자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증인 박영빈 예, 그렇습니다.

○이해식 위원 그런데 보건 관계 법령 중에서, 이건 아까도 이상식 위원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풍수해로 인한 사고잖아요. 그렇지요?

○증인 박영빈 예.

○이해식 위원 침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는데, 열네 분이나. 그러면 침수와 관련된 점검 그리고 이행 이런 걸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그 법령이 있어요, 자연재해법이라고. 이 자연재해법상에 정기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가 충청북도를 감사한 결과를 보면 3월에서 5월 중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여야 하나 참사가 발생한 23년에는 미실시했다 이렇게 감사 결과가 나와 있어요. 이것 혹시 보셨어요? 수사 과정에서 이것은 체크를 했습니까?

○증인 박영빈 예, 그 부분도 확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식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불기소 처분을 했지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볼 때는. 궁평1지하차도가 건설한 지가 얼마 안 됐고 구조물상으로는 굉장히 튼튼하고 안전한 구조물이에요.

○증인 박영빈 예, 그렇습니다.

○이해식 위원 그러니까 이에 대한 점검이나 이런 것은 사실 할 필요도 없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것이 낮은 지대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특교를 지원받기 위해서 건의한 건의문을 보면…… 아까 미호천은 너무나 튼튼하고, 제방이 튼튼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자꾸 강변을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요?

○증인 박영빈 위험등급 3등급으로 분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식 위원 그렇지요. 그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강변하는 이유를 제가 추측은 됩니다마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가장 필요했던 점검 그것은 풍수해에 대비한 그런 점검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실시하지 않았거든요. 정말 통탄할 일이에요. 7월 15일 날 참사가 났는데 3월에서 5월 사이에 한 번이라도 점검을 했으면 그 도로……

여기 보면요 이 점검을 어떻게 하게 돼 있나 하면 도가 도로관리사업소 및 각 시군 소관 도로시설물에 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점검을 총괄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증인 박영빈 시설물의 점검은 이루어졌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침수가 일어났을 때 호우경보 이후에 통제를 작동하는 기제를 말합니다.

○이해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풍수해에 따른 정기점검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비상 3단계가 발령이 되고 미호강 범람 위기를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도가 아무 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증인 박영빈 실제 재난 상황에서 작동이 안 된 건 맞습니다.

○이해식 위원 그렇지요?

○증인 박영빈 예.

○이해식 위원 그러니까 검찰의 이런 처분에 대해서 참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증인 박영빈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의 시민재해처벌법의 구성요건 구조랑.....

○이해식 위원 제가 말씀드린 중처법 시행령에 안전·보건 관계 법령,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자연재해대책법이 들어간다고요.

○증인 박영빈 그 부분 포함해서 고검에 전달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해식 위원 다음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훈 예.

그대로 그 자리에 앉아 계세요. 앞으로 지적될 사항이 마무리, 지금 추가질문 계속해 나갈 건데.....

그리고 검사장 증인께서는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좀 더 겸허한 자세로..... 지금 이 문제가, 계속된 모든 문제가 결론적으로는 오송 지하 참사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조사에 대한 지적사항이에요. 지금 당사자라고요.

○증인 박영빈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다음은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승 위원 김영환 지사님, 미호강이 급격하게 제방으로 넘치면서 대처하기 어려웠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아까 하셨어요. 그런데 궁평제2지하차도 통제기준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증인 김영환 예.

○권칠승 위원 미호천교 계획홍수위에 도달하는 경우입니다.

통제기준에 도달한 시각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증인 김영환 통제기준 그 아침에.....

○권칠승 위원 참사 당일 06시 34분입니다. 그런데 06시 30분부터 긴급점검회의 하고 계셨지요?

○증인 김영환 예.

○권칠승 위원 회의를 하시면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만약에 이때, 회의 때 통제기준에 도달했다는 것을 아셨다면 궁평제2차도 통제하셨겠지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통제기준에 도달했으니까.

○증인 김영환 통제기준에.....

○권칠승 위원 도달했다면.....

○증인 김영환 계획홍수위 하나만 갖고 통제를 하지는 않지만 고려사항입니다.

○권칠승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했겠지요.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7월 15일 당일 재난긴급점검회의 하실 때 그때는 시시각각 상황이 급박하게 변하는 중이었잖아요?

○증인 김영환 예.

○권칠승 위원 실시간 미호강 물 수위, 실시간 침수 현황, 실시간 사고 여부 이것을 바로 물어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것 당연하지요.

○증인 김영환 그때 우리가 무심천이 제일 심하고 그다음에 무심천과 괴산댐과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청주 부시장이 거기에, 영상회의에 참석하고 있었고요.

○권칠승 위원 미호강 물도 물어보셨을 것 아닙니까?

○증인 김영환 괴산, 충주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권칠승 위원 아니, 미호강 물은 안 물어보셨어요?

○증인 김영환 거기서는 보고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그 상황에서……

○권칠승 위원 그러면 보고를 안 했다 하더라도 이것 당연히 챙겨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증인 김영환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통제기준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권칠승 위원 아니, 통제기준을 떠나서 미호강 물 수위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실시간 침수 현황이 어떤지, 혹시 실시간으로 사고 난 게 있는지 그것 당연히 챙겨 봐야 되잖아요. 그것 안 챙기면 회의를 왜 합니까?

○증인 김영환 회의에서 제일 중요한 건……

○권칠승 위원 안 챙겨 보신 본인의 과실이 있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증인 김영환 그렇게 따지면 과실이 많이 있습니다.

○권칠승 위원 아닙니다. 회의를 하면 당연한 거지요, 이것.

○증인 김영환 그때 아침에 같은 시간에 회의를 하고 있었고 사고가 벌어졌는데 우리는 그런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던 말입니다.

○권칠승 위원 6시 반이라니까요. 6시 반에 회의를 시작하셨고 6시 34분에……

○증인 김영환 그걸 예측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예측하지 못한 것이……

○권칠승 위원 예측이 아니고요 그때 확인을 했으면 바로 확인이 되는 시간이었어요.

○증인 김영환 글쎄, 그 통제기준이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섯 가지……

○권칠승 위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확인하라는 말 한마디만 하셨으면 확인이 되는 거였었다고요.

○증인 김영환 그 확인할 곳은 수십 곳이 있고 수백 곳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권칠승 위원 한번 보십시오.

다음에 박영빈 지검장님, 공소장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뭐라고 내용이 기재돼 있느냐 하면요……

1분만 더 주시면 제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공소장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충청북도 관계자들이 참사 당일 06시 30분 호우 대처 상황 긴급점검회의가 개최되었음에도 미호강 수위를 확인하여 보고하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책임을 물었어요. 그래서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물은 것 맞지요?

○증인 박영빈 예, 그렇습니다.

○권칠승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회한하게도 김영환 지사와 이한울 주무관만 딱 빼져 있어요. 재난회의 참석자들이 미호강 수위 자체를 당연히 확인해야 된다나 확인하고 밀

의 사람이라면 그것도 또 보고도 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이렇게 공소장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중처법 적용하는 데는 이런저런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직 판례도 없고 해서. 그런데 회의 주재자로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도 안 살펴본 그 과실은 저는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 안 했습니까?

○**증인 박영빈** 재난 실무 담당자들이 계획홍수위에 임박했다는 보고를 했다 그러면 작동을 했을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보고가 도지사께는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권칠승 위원** 아니, 이건 회의하면 당연히 챙겨 보는 거지요.

○**증인 박영빈** 그 부분은.....

○**권칠승 위원** 그 과실을 안 물었잖아요. 그것 봐준 것 아닙니까? 그 생각을 수사할 때 못 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검찰의 과실입니다.

○**증인 박영빈** 결과론적인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권칠승 위원** 결과론이 아니고 당연하지요. 지금 재난회의 들어갔는데 강물 수위가 어떻고 이런 걸 챙겨 보는 게 당연한 거지요. 미호강만 있느냐 이런 게 변명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박영빈** 보고가 돼서 상황을 인식하고 있어야.....

○**권칠승 위원** 그러면 확인하고 보고할 게 미호강밖에 없다 이런 논리라면 지금 그 밑에 있는 실무자들도 다 똑같은 논리지요.

○**증인 김영환** 그때 궁평차도의 침수 상황을 CCTV를 통해서 도로공사가 보고 있었고 그다음에 그 수위가 50cm에 달하지 않으면.....

○**이광희 위원** 언제 보고 있었어요?

○**증인 김영환**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니까.....

○**이광희 위원** 오늘 계속 안 보고 있었다고 지금 다 밝혀진 것 아닙니까?

○**증인 김영환** 아니, 그러니까 도로공사가 보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광희 위원** 도로공사도 안 보고 있었던 것 아니에요.

○**증인 김영환** 도로공사가 보고 출발했지요.

○**이광희 위원** 아니,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계속 이를 동안 같이 있어놓고. 정말 너무하십니다, 지사님. 거짓말이나 살살 하고 말이야.

○**권칠승 위원** 기본 중의 기본을 챙겨 보지 않은 것에 대한 과실은 저는 분명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안 하신 것은 수사기관의 과실이 큽니다, 아니면 고의였거나.

○**위원장 신정훈**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이 판단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용혜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혜인 위원** 박영빈 증인, 결과론적인 게 아니라 검찰은 벌어진 일에 대한 결과를 가

지고 수사를 하는 거잖아요.

○증인 박영빈 예, 그렇습니다.

○용혜인 위원 그래서 결과론적이다라고 말씀하실 위치에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백번 양보해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검찰의 수사가 그 부분을 더 확인했어야 됐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재대본 회의에서 홍수경보에 대해서 점검한 사실 확인하셨습니까?

○증인 박영빈 홍수경보에 대해서는 발령이 됐고 인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혜인 위원 인식을 했다고, 그러니까 재대본 회의에서 점검했는지를 확인했냐고 여쭤봅니다.

○증인 박영빈 재대본 회의에서는 그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확인했습니다.

○용혜인 위원 점검하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재대본 회의에서 홍수경보도 점검을 하지 않았으면 사실상 재대본이 재난대응의 기능과 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기상특보를 확인하는 것은 위기경보와 재난대응의 기준점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자연재난 상황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확인하지 않았다, 재대본에서 확인하지 않았다라는 걸 검찰에서 수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셨으면 당연히 재대본부장인 김영환 지사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증인 박영빈 그 무렵에.....

○용혜인 위원 그리고 확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범리를 다르게 해석했다라는 이야기면 별로 듣고 싶지 않고요.

재대본 회의에 청주를 비롯한 3개 시군과 소방 모두 참석한 사실을 확인하셨습니까, 검찰에서?

○증인 박영빈 재대본 회의 참석은 확인했을 것인데 제가 그 부분은 구체적인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용혜인 위원 이것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청주 등 3개 시군이 참석을 했고 소방까지 참석을 한 것으로 파악이 돼요. 그리고 성의 없는 두 장짜리 결과보고서에도, 국회에 제출한 것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재대본 회의의 핵심은 사실은 정보 수집과 상황 판단이지 않습니까?

○증인 박영빈 예, 그렇습니다.

○용혜인 위원 그런데 재대본 회의에서, 충북, 청주 그리고 소방 그리고 그 외의 3개 시군 단위에서 참가한 사람들이 전파받은 정보를 수집하는 공간이 바로 이 재대본이잖아요?

○증인 박영빈 예.

○용혜인 위원 그런데 충북도는요 당일에 홍수주의보, 홍수경보 전파받고 6시 31분부터 네 차례 행복청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게 도지사까지 안 올라갔다, 백번 양보해서 그렇다 치고 이 회의에 참석했던 청주시는 6시 37분에 계획홍수위 도달까지 전파받았습니다, 회의하는 중에. 소방도 6시 25분부터 비상근무를 지시하고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충북도 체계 내에서 도지사까지 그 보고가 안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 재대본 회의에서 이 정보가 수집이 되고 상황 판단이 이루어졌어야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 점검이 이루어졌나? 이루어졌는데 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면 그것도

문제인 거고 이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이 없었다라고 하면 재대본 자체가 그 기능을 상실한 것이기 때문에 충북도지사, 재대본부장의 상당한 과실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 왜 확인 안 하셨어요?

○증인 박영빈 재대본 관계자들이 그것을 인식했다는 것은 확인이 됐고 재대본 회의에서 도지사에게 보고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혜인 위원 그러니까요.

1분만 더 주십시오.

보고가 안 됐을 리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보고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재대본의 재난 대응의 기능과 목적이 완전히 상실된 거고 그렇다면 중처법상 체계를 구축할 의무 그리고 그것의 이행을 조치할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거지요, 중처법 9조.

그러면 둘 중의 하나는 적용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다 확인 제대로 하지도 않고 확인했다고 말하면서 제대로 적용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대본 회의에서 무엇이 논의됐는지를 검찰의 의지만 있으면 저는 충분히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청주시 공무원, 소방 공무원, 충북도 소속이 아닌 공무원들을 조사해서라도 이 논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했어야 됐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묻지 않은 거예요.

저는 지금이라도 재수사에 검찰이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재대본부장으로서 정보 수집과 판단이라고 하는 권한과 책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형사적으로 제대로 점검해서 마땅한 책임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증인 김영환 위원님, 재대본 회의의 CCTV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용혜인 위원 제가 그것 물어봤어요? CCTV 물어봤어요? 청주랑 3개 시군이랑 소방에서 확인한 정보들 수집하셨냐고 여쭤봤잖아요.

○증인 김영환 그러니까 재대본 회의의.....

○용혜인 위원 그리고 그것 도지사한테 여쭙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수사 과정에 대해서 여쭤던 거지. 그것 확인 안 하셨다고 하면 거기 도지사 자리에 뭐 하러 앉아 계세요?

○증인 김영환 아니, CCTV를 원하시니까 갖다 드린다니까요.

○용혜인 위원 제가 CCTV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 돌리지 마세요.

○위원장 신정훈 김영환 증인, 지금 질문의 요지는 다 국민들이 이해하고 지켜보고 있는데요 희한하니 증인께서는 질문의 요지를 이해를 못 하시는 건지 계속 그래요.

재난관리본부에서 그때 당시에 회의를 하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체크 안 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확인하고 있고 만약에 안 됐다면 대단히 중요한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 문제를 계속 변명하려고 그러세요?

○용혜인 위원 저는 CCTV의 C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다음은 서범수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서범수 위원 제가 신문하기 전에 경찰청에서 나온 112상황관리관님, 저 앞쪽으로 좀 앉으시지요.

지사님!

○증인 김영환 예.

○서범수 위원 오늘 하루 종일 그리고 지난 현장조사 그리고 기관보고 하면서 충북도의 재해대책시스템이 잘 작동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증인 김영환 결과적으로 너무나 아쉬운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그때 왜 일찍이 알지 못했을까, 왜 우리가 보고를 받지 못했을까……

○서범수 위원 작동이 안 된 거지요. 그렇지요? 작동이 안 됐다고 봅니다.

○증인 김영환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서범수 위원 그러니까 작동이 안 된 거지요, 작동이.

그래서 그 시스템 복구를 빨리 하시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심리 안정 등 유가족 케어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라 결국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증인 김영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다음에 경찰청 112.

○경찰청치안상황관리관 곽병우 예.

○서범수 위원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현장 파출소 직원부터 해서 충북청장까지 다 입건이 되고, 14명이 입건이 되고 기소되고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왜 이렇습니까? 왜, 이게 뭐를 잘못했기에, 출동을 잘못했고 그다음에 또 뭡니까? 112 상황일지를 바꾼 겁니까, 뭡니까?

○경찰청치안상황관리관 곽병우 총괄……

○서범수 위원 아니, 여기 나오면서 빨리 파악을 하고 좀 나오셔야지 왜 그래요?

○경찰청치안상황관리관 곽병우 일차적으로는 오송파출소 현장 경찰관들이 07시 58분에 감리단장이 미호천 관련해 가지고 넘치려고 한다는 그 신고, 궁평지하차도 통제가 필요하다는 신고에 대한 즉각 조치……

○서범수 위원 그거는 주민대피, 주민 대피시켜 달라는 이야기고. 그렇지요?

○경찰청치안상황관리관 곽병우 예, 그것을 못 했던 부분과 두 번째로는 현장에 도착을 하지 않았는데도 도착한 것처럼 도착 처리를 수동 도착 처리를 한 부분 그리고 재해·재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코드를 좀 낮게 책정을 해 가지고 코드 1 이상으로 해야 되는데 코드 2와 코드 3로 한 부분 그리고……

○서범수 위원 그런 부분들인데 그것부터 해서 파출소 직원부터 청장까지 다 입건을 해야 되는 그 부분들이 경찰 내부에서는 부글부글할 겁니다. 그렇지요? ‘이게 뭐야, 도대체? 만만한 게 경찰이냐’ 뭐 이런 이야기 나올 수 있지요.

검사장님!

○증인 박영빈 예.

○서범수 위원 한번 다시 챙겨 봐 주십시오. 이런 부분은 너무 심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검사장님, 저번에 차장검사님이 나오셔 가지고 이해식 위원님이 그때 충북도

지사님 불기소사유서를 읽으셨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PPT에 띄우셔서.

왜 이게 유출됐느냐? 오늘도 검사장님께서는 ‘불기소사유서는 유출되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증인 박영빈 예.

○서법수 위원 그 사유를 밝히고 유출된 걸 확인하라고 했거든요. 감감무소식.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이 대검에 확인해 준 것 똑같이 그것 좀 해 주세요. 그 절차를 좀 봐야 주세요. 왜 스리슬쩍 넘어가려고 그럽니까, 이 부분을?

○증인 박영빈 그 부분은 고발인도 불기소 결정이 난 이후에 불기소이유서를 열람·등사 할 수 있습니다.

○서법수 위원 국회에 안 줬다고요.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그거는 국회에 보내 주면 안 됩니다라고 국회에 안 줬는데, 공개적으로는 안 줬는데 사적으로 뒤로 슬쩍……

○증인 박영빈 그 부분은 제가 알 수 없습니다.

○서법수 위원 그리고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검찰 곧 폐지하는데 자꾸 검찰보고 뭐 이래라저래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일할 맛 나겠습니까. 내가 보니까……

○이해식 위원 그것 검찰에서 받은 것 아니에요. 검찰에서 받은 것 아니라고.

○위원장 신정훈 자, 방금……

○서법수 위원 아니, 검찰에서 나온 건 아니더라도 그러면 그게 유출이 어떻게 됐는지는 확인을 해 줘야지요, 검찰에서.

○모경종 위원 그게 왜 유출입니까?

○용혜인 위원 그거를 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서법수 위원 유출이지요, 그러면.

○이해식 위원 당사자는 다 떼지, 그것.

○모경종 위원 아니, 고발인이 따로 있는데 고발인한테 받았으면 그게 유출입니까?

○위원장 신정훈 서법수 위원님, 지금 지검장 증인께서 고발인에게는 조치결정 이후에 그 공문서가 신청하면 제공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뒤로 빠진 그런 일이 아니라도 정상적으로 제공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서법수 위원 아니, 아까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국감이나 이런 국정조사에 있어서는 보안상 국가기밀이 아닌 이상에는 다 제출해야 된다면서요.

○위원장 신정훈 당연하지요.

○서법수 위원 당연한데 왜 안 내요, 우리한테는? 왜 우리한테는 안 주느냐고요.

○위원장 신정훈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고발인들한테는 불기소결정문이 고발인이 신청하면 줘요. 지금도 그렇지요?

○증인 박영빈 예, 그렇습니다.

○서법수 위원 왜 우리한테는 안 주고 그렇게 해요? 우리한테는 왜 안 주냐고.

○위원장 신정훈 그런데 왜 국정조사를 하는 이 국회에 제출이 안 되나? 그야말로 검

찰이 본인들이 다 이 문제를 뒤죽박죽 만들어 놓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증인 박영빈 이 사안뿐만 아니라 다른 사안에서도 불기소이유서는 나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정훈 국정조사라고 하는 이 법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잖아요.

회의가 계속 중입니다마는 저녁 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저녁 7시 한 50분 정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4분 회의중지)

(19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정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한울 주무관 어디 계세요?

지금 이한울 주무관이 건강이 좀 안 좋다니까 위원님들께서 먼저 질의하실 분들은 자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정대로 하겠습니다.

잠깐 앉아 주세요.

먼저 이한울 주무관 질의하실 분 손 한번 들어 주세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분이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이한울 주무관님하고 재난안전실장님하고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의자에 앉으셔도 되고요.

하루 종일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 신정훈 잠깐만요, 이한울 주무관은 앞의 좌석으로 앉아 주세요.

○이연희 위원 재난안전실장님, 홍수주의보 1단계가 내려진 13일부터 15일까지 재난안전실장님은 6시에서 6시 21분 사이에 퇴근을 하셨지요?

○증인 박준규 13, 14, 15 저녁 6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연희 위원 예.

○증인 박준규 그렇지 않습니다.

○이연희 위원 아니, 공소장에 그렇게 나오는데요?

○증인 박준규 그때는 수시로 재대본 회의가 있고……

○이연희 위원 아니, 여기 제가 읽어 드릴게요.

○증인 박준규 14일 저녁만 말씀드려도 9시에 중대본이 있었고 10시 50분부터……

○이연희 위원 박준규 실장님은 여기 공소장에 보면 재대본 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서지 않은 채 15일까지 매일같이 6시 10분경부터 6시 20분경 퇴근을 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것 틀린 거예요? 공소장이 잘못된 거예요?

○증인 박준규 그렇지 않습니다.

- 이연희 위원 그러니까 공소장이 잘못된 거예요?
- 증인 박준규 14일만 예를 들어도 저녁 9시인가에……
- 이연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소장이 잘못됐냐고요. 공소장에 있는 걸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 증인 박준규 예, 그렇습니다.
- 이연희 위원 지검장님, 이 공소장은 어떻게 된 거예요?
- 증인 박영빈 사실관계 확인해서 공소장에 그대로 적시한 겁니다. 재판에서 다투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그래요?
- 증인 박영빈 예.
- 이연희 위원 도로관리사업소장님, 7월 15일 날 참사가 났던 당일 몇 시에 출근하셨습니까?
- 증인 이석식 한 6시 50분쯤 출근한 걸로 알고……
- 이연희 위원 그때 출근을 했어요?
- 증인 이석식 예.
- 이연희 위원 지금 공소장 기록을 보거나 그다음에, 충북도지사님 같은 경우는 14일 날 비상 3단계가 발령됐는데 서울에 상경을 하셨고 밤 10시 55분쯤에 와서 재대본 회의를 하셨고 참사 당일 날은 아침 7시 40분부터 아침 9시 50분까지 자택에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충북의 재난본부를 총지휘해야 될 도지사도 서울 갔다가 집에 계시고 그다음에 재난안전실장은 비상 3단계가 발령됐는데도 6시 되면 퇴근하고 도로관리소장님도 6시 되면 퇴근하셨지요?
- 증인 이석식 아닙니다. 전날 한 8시 반쯤 퇴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비상 3단계가 발령된 상황에서 이렇게 되고 있으니 참사, 사고가 안 일어나는 게 이상한 일이에요.
- 지검장님, 오늘 청문회 쭉 지켜보셨는데 결국은 제방이 무너진 원인 하나 그다음에 교통통제 대응체계가 부실했던 것 하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특히 오늘 전체적으로 충북 재난대책본부의 대응, 활동, 신고, 보고, 전파 이런 것 다 보시면서 이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증인 박영빈 재난 당시에 정상적인 체계가 작동 안 한 건 사실입니다.
- 이연희 위원 인정하십니까?
- 증인 박영빈 예.
- 이연희 위원 질의가 다 끝났습니까?
- 위원장 신정훈 예.
- 다음은 윤건영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건영 위원 질의에 앞서서 앞쪽으로 나오실 분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한울 주무관은 그 자리에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박상준 증인 앞쪽으로 나와 주시고요. 그리고 이동옥 부지사님, 각자 그렇게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 이한울 증인과 박상준 증인은 행복청으로부터 당일 오송참사의 징후를 연락받았던 두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한울 증인은 어디로도 보고한 적이 없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계시고, 박상준 증인께 묻겠습니다.

보고한 적 있습니까?

○증인 박상준 저는 그날 전화가.....

○윤건영 위원 짧게요, 짧게. 전화를 받고 그 내용을 보고하신 적 있습니까?

○증인 박상준 없습니다.

○윤건영 위원 없습니다? 그러면 그걸 혼자만 알고 계셨어요, 그 엄청난 내용을? 도로 통제와 주민대피 그런 부분들을 혼자만 알고 아무한테도 전파하지 않고 직장 동료나 상사한테도 아무한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증인 박상준 .....

○윤건영 위원 답을 하십시오.

○증인 박상준 예.

○윤건영 위원 그냥 혼자만 알고 계셨다?

○증인 박상준 예.

○윤건영 위원 이한울 증인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혼자만 알고 계신 거지요?

○증인 이한울 예, 그렇습니다.

○윤건영 위원 이게 충북의 문제 같습니다. 행복청에서 그렇게 난리 나도록 전화했는데 전화 받은 두 사람은 혼자만 알고 있었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믿깁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는.

부지사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방금 대답을 한 이한울 증인과 박상준 증인 두 사람은 행안부로부터 징계 대상자로 올라온 사람입니다. 맞지요, 부지사님?

○증인 이동옥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윤건영 위원 부지사가 그걸 모르면 어떡합니까?

○증인 이동옥 우선 이한울.....

○윤건영 위원 23년 7월 28일 이후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해서 행안부로부터 통보받은 징계 대상자 중의 두 분이에요.

○증인 이동옥 제가 금년 3월 6일 부임하다 보니까 조금 잘 못 챙기고 있습니다.

○윤건영 위원 징계에 대해서 저 두 사람은 유보가 됐습니다. 왜 유보됐는지 아십니까?

○증인 이동옥 그때 당시에 제가 재판에 기소가 된 분들 그리고 또 관련, 연관이 된 분들이 아마 대부분 다 일괄적으로.....

○윤건영 위원 기소가 된 사람은 재판 중이라서 유보됐다고 쳐요. 저 두 분은 기소 자체가 안 되신 분이에요, 전화 받고도. 그런데 왜 징계가 유보됩니까?

○증인 이동옥 제가 오기 전에 전임.....

○윤건영 위원 아니, 오기 전이 아니라 지금 현직 부지사잖아요. 부지사가 안살림 하는 것 아니에요?

○증인 이동옥 맞습니다. 징계위원회가 당시에 열렸는데 그 당시에 징계위원회에서 보류를 한 걸로 알고 있고.....

○윤건영 위원 보류의 이유가 뭐냐고 묻는 것 아닙니까.

○증인 이동옥 제가 알기로는 재판에 계류됐고 그 관련된 같은……

○윤건영 위원 기소를 받지 않아서라고 본 위원한테 이야기했어요, 기소당하지 않아서. 그런 선처가 어디 있습니까? 기소당한 사람은 재판 진행 중이라 봐주고 기소를 안 당했으니까 징계를 유보하겠다? 그런 선처가 어디 있습니까?

특히나 개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두 분 중의 한 분은 24년도에 승진까지 하셨습니다, 징계 대상자가.

1분만 더 주십시오.

행안부에서 잔뼈가 굵은 부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징계 대상자가 징계도 받지 않고 승진하는 게 온당한 일이고 상식적입니까?

○증인 이동옥 전임 징계위원장인 행정부지사 때 일어난 일 같은데 제가 가서 다시 살펴보고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건영 위원 이게 정상적이냐고 묻습니다.

○증인 이동옥 아마 그때 무슨 사정……

○윤건영 위원 충북도의 오송참사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두 사람이었어요, 그 전화를 받고. 저 두 사람의 오늘 진술을 온전히 다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저 두 분만 조금만 나서서 정리했더라도 오송참사 막을 수 있었어요. 징계 대상자인데 징계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승진까지 시켜 줘요. 이러니 충북도만 피해 갔다라는 그런 의혹을 받는 겁니다.

○증인 이동옥 제가 복귀해서 아무리 전임 부지사 때 일이지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윤건영 위원 상식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지사님?

○증인 이동옥 조금 하여튼 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그것은 전임 부지사가 인사위원회였을 때 일어난 일 같은데 확인하겠습니다.

○윤건영 위원 이런 게 드러난 충북도 행정의 난맥이에요.

○증인 이동옥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유보가 되면 그 관련 법에 유보 사유가 해소되거나 아니면 본인이 신청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징계 다시 못 하게 되는 게 있어서……

○윤건영 위원 본 위원한테 이야기해 준 유보 사유는 기소되지 않아서라는 거랍니다. 그게 말이 되냐고요.

○증인 이동옥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그 문제는 부지사께서 본 위원회 활동이 종료되기 전에, 유보된 이후에 사실 불기소 처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 아니잖아요?

○증인 이동옥 예.

○위원장 신정훈 그러면 징계 여부를 심사해야 될 그 책임은 행정부지사한테 있는 것 아니에요? 전임 부지사한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당사자한테 있는 것 아니에요?

○증인 이동옥 제가 확인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이 위원회가 종료되기 전에 그 경위와 앞으로의 조치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이동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달희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이달희 위원 부시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공무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되는데 위원장님께서 조치를 보고해 달라 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셔도 됩니까?

○위원장 신정훈 제가 조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달희 위원 이한울 주무관님, 행복청 주무관 전화 통화의 내용과 경위를 오늘 종일 진술하셨는데요. 사전에 충북도청 동료나 상관들에게 메시지 내용을 의논하거나 지시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증인 이한울 없습니다.

○이달희 위원 오늘 중언한 내용에 거짓이 있나요?

○증인 이한울 없습니다.

○이달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충북도지사님, 충북 재해대책본부가 14일 오후 16시 40분부터 비상 3단계로 격상해서 철야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침 6시 30분에 재대본이 개최되는데 통상 이럴 때는 도지사님이 주관하시는 영상회의를 하지요?

○증인 김영환 예, 있습니다.

○이달희 위원 영상회의를 할 때는 보통 시군의 부단체장들이 영상에 나와서 시군의 재해안전에 대한 보고를 하게 되지요?

○증인 김영환 예.

○이달희 위원 그러면 도에서 도 소방본부나 도나 중대본이 지원해야 될 사항을 체크하시고 그렇게 지원하지 않습니까?

○증인 김영환 예, 그렇게 합니다.

○이달희 위원 그날 청주 부시장이 미호천 관련해서 보고를 했습니까, 6시 30분에?

○증인 김영환 미호천 관련해서 보고가 없었습니다.

○이달희 위원 그래서 도는 통상 재해대책본부가 있으면 영상회의를 하고 도청에서 파견 나간 보통 통상의 부시장이나 부단체장들이 도지사께 안전 상황에 대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증인 김영환 그렇습니다.

○이달희 위원 아까 용혜인 위원님 말씀에 CCTV를 보여 주겠다는 것은 이 내용을 보여 주고 싶으셨다는 거지요?

○증인 김영환 그런 건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달희 위원 영상회의를 보여 주고 싶으셨던 거지요?

○증인 김영환 그렇습니다. 영상에서 지시한 내용, 보고 내용이 다 있습니다.

○이달희 위원 그리고 하천 관리가 환경청으로 넘어가면서 시장님, 제방 유지 관리 책임으로 인해 중대시민재해로 기소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증인 이범석 예.

○이달희 위원 이 책임에 대해 청주시와 환경부가 서로 책임을 미루고 서로 억울하다

고 하는데 어떤 점에서 입장이 다르며 그에 대해서 시장님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역에 있어 보면 하천 관리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환경청이 하면 각 고을고을의 지형지물도 잘 모르는데 인사이동에 의해서 이런 큰 재난이 날 때 적극 대응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그리해서 시장님께 좀 여쭙고 싶습니다.

**○증인 이범석** 현행 하천법에는 국가 하천의 경우 금강 본류는 하천공사와 유지·보수를 하천 관리청인 금강유역청에서 담당하고 있고 지류인 미호강은 하천공사는 하천 관리청인 금강유역청이 담당을 하고 유지·보수 업무를 위임받아서 지금 청주시가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 강이 금강유역청에서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구간입니다. 하천 정비를 추진하는 구간은 하천 관리청이 공사를 준공 후 준공 고시하면 그다음 날부터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공사가 중단이나 중지가 되어도 관리 책임은 하천 관리청에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환경부의 중대재해 참고자료나 자자체 설명자료에도 공사 구간이나 공사를 하지 않는 구간도 환경부장관이나 수급인이 중대재해상 경영책임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용혜인 위원**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잠깐만요. 먼저……

**○용혜인 위원** 방금 이달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들어 있는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간단히 해 주십시오.

**○용혜인 위원** 1분만 주십시오.

재대본 영상회의 기록 가지고 제가 현장에서도, 상황실에서도 계속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오늘 제가 충북도에 확인한 거로는 로그 기록이랑 영상자료가 없다, 영상회의 기록이 없다라는 답변을 제가 충북도 재난안전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과장은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충북도지사가 지금 없는 자료를 가지고 국회에서 자료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거나 둘 중의 하나겠지요?

**○증인 김영환**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용혜인 위원** 조용히 하십시오.

위원장님, 도지사께서 그 자료가 있다고 말씀하신 만큼 로그 기록이랑 영상자료에 대해서 제출하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증인 김영환** 위원장님,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증인 김영환** 예,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잠깐만요. 의사진행입니까?

**○김성희 위원** 예, 자료 요구와 관련돼서.

**○위원장 신정훈** 예.

**○김성희 위원** 왜냐하면 지난번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 들은 설명하고 완전히 뒤집혔기 때문에 현장에서 들은 설명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그때 현장에 계셨던 분이

여기 계신가요? 충청북도에서 나오신 분이 계신가요? 재난대책본부 현장을 관리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누가 계신가요?

○이연희 위원 지금 뒤에 계시는 것 같은데……

○용혜인 위원 그때 상황실에 계셨던 분 계세요, 저희 현장조사 갔을 때?

○이연희 위원 지금 재난과장이 계시지 않았어요?

○용혜인 위원 현직은 없어요.

○충청북도자연재난과장 정진훈 예.

○용혜인 위원 계시네?

○김성희 위원 재난과장님, 저 앞으로 나가……

요지는요 같이 들은 얘기를 확인하려고 제가 의사진행발언하는 건데요. 그때는 뭐라고 했냐 하면 거기에 달려 있는 CCTV 카메라가 있길래 그 카메라를 통해서 녹화가 되고 있으면 회의 내용을 보고 싶다라고 하니 ‘위원님들,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영상회의가 있을 때 앞의 화면에 상대방을 보이게 하고 우리 쪽 회의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비추는 용도로만 사용되는 카메라이고 녹화의 기능은 쓰지 않기 때문에 어느 회의도 녹화한 적이 없고 녹음도 당연히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그 당시의 회의 영상은 없습니다’라고 저희가 안내를 받았거든요.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설명을 한번 해 보시지요, 나오셨으니까.

○충청북도자연재난과장 정진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저희들이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시군하고 영상회의를 하고요, 중앙하고 영상회의를 하는데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녹음이 안 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희 위원 그러니까 평소에 회의를 할 때 거기에 녹음기를 켜고 영상을 녹음하지 않는다고 설명을 받은 게 제가 맞지요? 그리고 다 위원님들 그렇게 들으신 것 아닙니까?

○충청북도자연재난과장 정진훈 별도로다가 녹음……

○김성희 위원 그러니까 소통하는 회의용인데 도지사는 무슨 근거로 저런 얘기를 하는지를 확인을 좀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증인 김영환 그날 상황실 아침의 회의는 제가 그때가 급한 상황이 괴산군이기 때문에 괴산군수님 또 청주 무심천의 부시장님 그리고 또 충주시장님 이렇게 영상회의를 했거든요. 영상 기록을 제가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서……

○용혜인 위원 본 적이 있답니다, 위원장님.

○증인 김영환 아니, 제가 그 뒤에도 보고 그걸 녹취록도 만든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확인해서 여기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용혜인 위원 둘 중의 한 분은 거짓말을 하신 거지요. 저는 위증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난 자료제출 요구도 그렇고 현장에서도 그렇고 계속 거짓말했습니다.

○증인 김영환 제가 생각할 때는 있는 것 같은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아니, 담당자가 없다고 했는데……

○위원장 신정훈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영상회의록이 있다는 거고 녹취록이 있는 걸로 말씀하시는는데 그 부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영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그 부분이 지금까지 회의 과정에서 진술이 어떻게 됐느냐는 추후로 확인해서 거기에 합당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마지막으로요 이한울 주무관한테 질의하실 분……

아니요, 지금 이연희 위원은 하셨잖아요. 이광희 위원님, 아니십니까?

그러면 이연희 위원님 1분 내로 추가질문해 주시고.

○서법수 위원 아까 실컷 하셔 놓고 또 하시라고……

○위원장 신정훈 또 추가적으로 할 기회가 없잖아요, 이제 마지막이니까.

○이연희 위원 이한울 주무관님, 아까 성흔수 주무관한테 참사가 일어나고 며칠 있다가 전화를 하셨다고 했는데 왜 전화를 하셨습니까?

○증인 이한울 그때 제가 들은 것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았습니다.

○이연희 위원 어떤 것…… 그날 당일 날 전화한 것을 들은 것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려고요? 왜 확인하려고 하셨습니까?

○증인 이한울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일어났으니까 연락을 한번 취해 보려고 했었습니다.

○이연희 위원 확인하기 위해서? 이걸 알고 있더라 하는 그런 식이어서 전혀 신경을 안 썼다면서요.

○증인 이한울 이런 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기억하는 내용은 이런……

○이연희 위원 그래서 성흔수 주무관하고 통화한 내역을 다른 사람한테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증인 이한울 없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리고 나서 추가로 더 통화 안 하셨어요?

○증인 이한울 예, 그렇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어쨌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오늘 죽 지켜보셨고 몸도 힘드신데 어쨌든 지금 재난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임무가 신고 전화가 들어오면 보고·전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재난대응 중의 하나입니다. 첫 번째 단계인데 그걸 지금 이한울 주무관 선에서 어쨌든 답변에 따르면 묵살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형참사가 일어났고.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데 본인은 기소도 안 됐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본인은 어떤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까? 한마디 해 보세요.

○증인 이한울 제가 우선은 정말 고의로 묵살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일반적, 제가 해왔던 대로 청주시와 경찰청 쪽에 연락을 했다고 해서 곳곳에 전파를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유가족분들과 피해자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연희 위원 재수사가 다시 진행이 되면 그에 따른 법적 책임 이런 것들을 다 피하

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 부분도 담담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증인 이한울 예.

.....  
○위원장 신정훈 더 이상 이한울 주무관에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한울 주무관, 오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우선 특별한 개인의 건강 문제이기 때문에 먼저 퇴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퇴장해 주십시오.

다음은 모경종 위원님 3차 3분 내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경종 위원 검사장님 나와 계시지요?

○증인 박영빈 예.

○모경종 위원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여러 가지 포인트 중의 하나가 누구는 기소가 되었고 누구는 기소가 안 되었다 이런 걸로 오늘 이야기들이 요약될 것 같아요. 검사장님께서 느끼시기에도 그런 것 같지요?

○증인 박영빈 지금 중대재해 관련해서는 도지사 부분 기소 안 된 것을 쟁점으로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경종 위원 제가 여러 차례 청주시장님한테도 한번 여쭤봤었는데 왜 청주시장님은 기소가 되었고 충북도지사님은 기소가 안 되었을까? 여러 번 청주시장님께 여쭤봤지만 다른 대답만 하셨으니까 다시 묻지는 않겠습니다.

보통 이런 큰 사고가 나면 흔히 말하는 꼬리 자르기, 꼬리 자르기가 너무나도 많지요. 가장 힘없고 하급 직원에게 모든 걸 덮어씌우고 또는 그 사람들에게만 책임을 지게 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가장 책임이 많거나 높게 져야 되는 사람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거나 또는 책임을 지는, 가장 위의 우두머리가 책임을 지는 경우는 봤어도 꼬리도 아니고 우두머리도 아니고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옴팡 뒤집어쓰고 그 사람들만 책임을 지고 있는 우스꽝스럽고 정말 기이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영환 지사님, 김영환 증인님,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특정 인에 타깃을 두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인정하시지요? 현장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증인 김영환 특정인의.....

○모경종 위원 그렇게 생각하세요?

○증인 김영환 결과적으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라고 생각합니다.

○모경종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느껴지셨다면 스스로가 찔리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은 특정인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정조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아픈 기억을, 정말 아픈 기억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기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 있었는지, 잘못된 부분이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체크하는 겁니다.

이번 국정조사 청문회 그리고 그 이전에 기관보고부터 받아보면서 제가 느낀 바로는 김영환 지사님이나 청주시장님이나 그리고 그 외에 증언대에 서셨던 모든 분들이 본인

책임 회피하기에 너무 급급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한울 주무관이 일부러 안 계실 때 이야기를 하려고 아까 질의는 안 했습니다마는 출산한 지 3개월밖에 안 된 정말 하급 공무원한테 모든 짐을 덮어씌우고 있는 것 아닌가, 선배 세대로서 어떻게 보면 조카뻘 되고 딸뻘 되는 하급 공무원한테 모든 걸 다 덮어씌우고 있는 것 아닌가, 내 자식이었으면, 내 딸이었으면 그렇게 했을 것인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여기 계신 책임 회피에 급급하신 분들 통렬히 반성하시고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증인 김영환 제가……

○모경종 위원 질의 안 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다음은 양부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부남 위원 PPT 띄워 주세요.

박 검사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증인 박영빈 아닙니다.

○양부남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검찰이 김영환 지사에 대해서 불기소 이유로 내세웠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됐다, 내가 백번, 천 번 양보해서 그러면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정말 구축돼 있는가를 따져 봤더니 부실해.

첫째는 재난안전상황실에 미호천 CCTV가 재생되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궁평2지하차도 내에 있는 CCTV가 도로관리사업소로만 송출이 되고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재난상황실로 송출이 안 됐습니다.

세 번째는 궁평지하차도 통제기준이 있어요. 매우 형식적입니다. 조건이 1번 침수심이 50m 도달 시, 2번 미호천이 50cm 도달 시…… 1, 2, 3 씨진 대로 보시고 내가 4번, 5번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4번은 시우량이 395.60mm 도달 시, 5번은 기상특보가 똑같아요. 395.60mm예요. 이 조건이 하나만 충족되면 통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우량 395.60mm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사님? 1998년 순천 주암에서 대한민국의 최고 시우량이 145.1mm입니다.

○증인 김영환 그게 잘못 기재된 것으로……

○양부남 위원 잠깐 들어 보세요.

잘못 적을 게 따로 있지.

들어 보세요.

395.60mm, 여기 오타가 된 게 아니라 공문에 그렇게 설정이 돼 있어요. 오타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설정이 돼 있어요. 이 말은 시우량 가지고는 지하차도를 통제할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 기상특보는 예비특보, 호우주의보, 호우경보, 태풍경보, 태풍…… 이걸 써 놨어요. 얼마만큼 궁평지하도 통제기준이 형식적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말한 것처럼 충청북도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안전하지 않다, 매우 부실하다. 그래서 내가 백번 양보를 하더라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입니다.

그다음, 이것은 충청북도에서 미호천 제방에 대해서 유지 보수 업무를 청주시에 위임

할 때는 아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10조 8호를 보면 조치능력·안전관리능력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그다음에 비용에 관한 기준·절차를 정해서 제방 유지보수 업무를 청주시에 위임하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기준을 설정해서 위임하고 플러스 연 1회 점검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점검을 안 하면 연 1회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 했습니까?

○**증인 김영환** 지금 위원님 하신 말씀은 여러 가지, 제가 드릴 말씀은 많은데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양부남 위원** 아니, 여기서…… 이것 중대한 문제예요. 왜 이걸 내가 짚고 넘어갔느냐? 지금 검찰도 이걸 조사를 안 했습니다.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10조 8호에 관해서……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충북도는 청주시에 제방의 유지 보수 업무를 위임함에 있어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기준을 설정해서 위임해야 돼요. 기준 설정해서 위임했습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증인 김영환** 실무자에게 좀, 답변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양부남 위원** ‘예스, 노’로 하세요. 했어요, 안 했어요?

○**증인 김영환** 아니,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양부남 위원** 안 했지요?

두 번째, 기준을 설정해서 위임했다 치더라도 연 1회 이상 점검을 해야 되는데 점검 했습니까? 안 했지요? 점검을 안 했으면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보고 안 받았지요?

○**증인 김영환** 실무자가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양부남 위원** 이 자체가 문제가 되고 이게 의문이 듭니다.

검찰에서도 이것 수사 안 했습니다. 안 했지요?

○**증인 박영빈** 예, 제방 부분의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 주체는 청주시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양부남 위원** 국가하천법의 위임규정에 의해서 지금 청주시가 제방의 유지 보수 업무가 있다고 일괄적으로 끝내 버렸는데 그 전제조건이 이게 이행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행되지 않으면 충북도도 미호천 제방에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필히 조사하시고, 이 부분이 안 된 것 같아요. 자료제출 해 주시고 안 됐으면 법적 책임이 따를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다음은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대전 대덕구 박정현 위원입니다.

제가 대덕구청장을 지낸 사람으로 이번 오송참사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참사 당일 오전 8시 40분에 궁평지하차도에 물이 다 쌓고 거기에 30여 명의 시민들이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었는데 그때 김영환 지사도 없었고 청주시장님도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더구나 김영환 지사는 대웅 지휘도 하나도 하지 않았고 사건이 난 지 한 4시간여 만에 현장에 도착했던 말이지요.

그래서 결국 14명의 희생자가 생겼고, 그런데 청주지검은 알 수 없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했습니다. 이거야말로 명백한 유권 무죄고 무권 유죄입니다. 억울한 희생자와 생

존자를 위로하고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김영환 도지사는 다시 재수사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국정조사 과정에서 김영환 지사가 한 위증이 여러 개 됩니다. 이것도 반드시 고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정조사 청문보고서에 반드시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영환 지사님, 오송참사 추모 조형물 언제까지 건립하실 건가요?

○증인 김영환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 말씀을 어떻게 저희가 믿습니까?

지난 9월 15일 날 현장조사 갔을 때 지사께서 분명히 책임지고 도의원을 설득해서 하겠다 했는데 바로 그다음 날 충북도의회에서 보란 듯이 예산을 부결시켰습니다. 그냥 당장의 상황을 면피하기 위해서 발언하신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하니까 김영환 지사 존재 자체가 2차 가해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증인 김영환 구청장님 해 보셔서 아시지만 도의회가 도지사의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박정현 위원 적극적으로 설득을 지금……

영상 하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면)

지금 저게 충북도 건설안전소방위원회 회의록인데요. 지난 9월 8일 날 조형물 예산을 깎으면서 도의원들이 한 얘기입니다. 이게 국민의힘 도의원들인데요. 아니, 자당 도의원도 잘 설득을 못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저기 보면 충북도의원들은 도청에 휴식하러 갑니까? 저것도 분명히 충북도의원이 지금 희생자들에게 2차 가해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충북도청에 추모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은 충북도가 앞으로 이런 일을 다시는 일으키지 않겠다고 시민들에게 약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런 식으로 발언하는 것은 안 맞지요.

○증인 김영환 저기 변종오 의원님은 민주당 의원이십니다.

○박정현 위원 도지사님이 설득하지 못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납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증인 김영환 그래서 저게 당으로 나뉜 것이 아니라 도에다가 조형물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앞으로도 그런 사건……

○박정현 위원 다수당이 거기잖아요. 그리고 다수가 그렇게 한 거잖아요.

○증인 김영환 그러니까 그렇게 조형물이 이 사건이 있을……

○박정현 위원 그러면 지사님께서 자당 의원들은 설득을 시켰어야지요.

○증인 김영환 제 잘못인데요. 제가 잘못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정현 위원 그건 아시네요.

1분만 더 주십시오.

잘못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건 아시네요.

○증인 김영환 예, 그럼요.

○박정현 위원 됐습니다. 더 이상 답변을 안 받아도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어찌하더라도 조형물이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국정조사에서 우리가 확인한 결과는 참사의 선행 원인은 제방 붕괴지만 희생자가 생긴 직접 원인은 충북도가 도로를 통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전 예방과 대응에 대

한 노력도 없었고 그 이후에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도 없었습니다.

저는 지난 대정부질문 때 정성호 법무부장관에게 김영환 도지사의 재수사를 요구했고 장관께서는 국정조사 결과에 따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에 김영환 도지사의 재수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충청북도와 충북도의회가 포기한 유가족과 생존자의 한을 풀어 주는 일을 국회가 끝까지 책임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덕흠 위원** 위원장님, 끝났으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잠깐만요. 지금 거의 다…… 아직 마무리 안 됐습니다.

다음은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김영환 지사님,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주신 단말기를 혹시 받은 적 있습니까?

○**증인 김영환** 회의 중에 단말기를 쓰기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가지고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위성곤 위원** 단말기를 보기는 하셨군요.

○**증인 김영환** 예, 그럼요.

○**위성곤 위원** 재난안전통신망법에 의하면 단말기를 도지사에게 1개를 주도록 돼 있어요, 그렇게 배치한다고 계획을 수립했고. 그런데 이 단말기를 가지고 지휘하거나 조정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건 그냥 장식용으로 들고 다니신 거예요?

○**증인 김영환** 회의 중에 각 시군구와 통화를 할 때 활용을 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영상자료를 보면)

관련되어진 기록 내용을 보면 재난안전통신망의 기록에는 전혀 기록 내용이 없습니다.

2023년 하반기 재난안전통신망 표준운영절차를 행안부가 만들었는데요. 거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재난안전통신망의 주관자가 됩니다. 책임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연락관을 두도록 돼 있고 그래서 전반적인 지휘·조정을 이 망으로 하도록 법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나 하면 재난안전법에서는 재난안전관리의 최고책임자를 도지사에게 부여하고 재난안전통신망 사용 및 지휘·통제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기관에 대해서는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하도록 법적 의무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행정절차에 따르면 재난안전통신망 표준운영절차상의 지휘권 행사 절차는 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지휘하셨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왜냐하면 재난안전통신 매뉴얼에 분명히 기재돼 있는데 통신을 전파한 적은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어떻게 지시하셨습니까, 전반적인 상황을?

○**증인 김영환** 지금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지는 못한데 우리는 SNS, 다른 방식을 이용하거나 유선 또는 회의 또는 논의, 화상회의 다양한 매체를 이용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강제규정이, 꼭 그 단말기를 이용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이런 것들을 다시 좀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것도 모르신다는 거네요?

지휘에 대해서는 왜 재난안전망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했을까요? 상황 전파를 책임자가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게끔 하고 또 각 상황을 각 상황 참여자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꺼번에 같이 인식하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증인 김영환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데 그 절차도 모르시고 법도 모르시고 그러시면 되겠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증인 박영빈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이상식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광희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청주 서원구 이광희입니다.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님께서 계속해서 당시 미호강은 홍수취약지구가 아니었다는 것 때문에 책임이 없는 것으로 계속 일관되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환경부가 2023년 2월에 홍수취약지구 일제조사 공문을 각 유역청에 하달을 했고 2023년 2월에 금강유역환경청도 관내 충청북도 도지사를 비롯한 시도청에 점검 결과 제출을 요구를 했습니다. 자료를 잘 보시면 충청북도지사 이름으로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나간 게 보이시지요?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취약지구 선정 기준을 구조적 취약 구간, 하천공사 구간, 기타로 세분화하였고 하천공사 구간에는 진행 중인 하천 정비 및 수해복구 공사현장, 2번 점용허가를 받아 진행 중인 공사현장 중에 제방 절개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은 이에 대해서 자료를 내지요. 홍수취약지구 일제조사 결과에 충청북도가 낸 자료에 의하면 미호천은 빠져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금강유역청에 제출한 홍수취약지구 일제조사 결과 보고에서 17곳의 홍수취약지구를 선정해서 제출을 했는데 하천공사 구간을 이유로 충북 영동군 양산면 봉곡리 이것을 제외하면 하천공사 구간에 대한 취약지구 조사 결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미호천 제방공사 기간은 21, 22, 23년인데 이 당시에 3년 동안 제방 절개 공사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제조사 결과에 이 내용을 누락을 시켰습니다.

2022년, 2023년 동안 미호천은 6월까지 제방을 절개하고 공사 중이었고요. 만약에 제대로 돼서 확인을 해서 홍수취약지구로 관리가 됐다면 금강청, 행복청, 충청북도, 청주시가 좀 더 제방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런 식으로 자료를 누락시켰습니까?

○증인 김영환 누락시킨 적이 없고요. 제가.....

○이광희 위원 아니, 이거 자료 안 내셨잖아요. 왜 영동은 냈는데 왜 미호강은 안 냈습

니까?

○증인 김영환 미호강 둔덕이……

○이광희 위원 3년이나 절개가 됐는데……

○증인 김영환 한 번도 범람한 적이 없다고 말한 것이……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 한 번도 범람이 되지 않아서 이런 조치를 하는 겁니다.

○증인 김영환 침수하고 범람을 지금 오해하시는게……

○이광희 위원 환경청에서도 홍수취약지구 일제조사를 하라고, 특히 이 중에서 제방 절개와 관련된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하게 되어 있었는데 3년 동안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 래 가지고……

○증인 김영환 그 내용은 지금 처음 제기하시니까요……

○이광희 위원 계속적으로 단 한 번도 홍수취약지구가 아니었다고 주장을 하시면 안 되지요.

○증인 김영환 그러니까 그거는 위원님이 제기하시니까 저희가 자료를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광희 위원 검토가 아니라 이렇게 일을 안 하셨어요. 책임을 져야 될 일을 안 해서 사고가 난 겁니다.

○증인 김영환 지금 위원님이……

○이광희 위원 하나하나 조목조목 지사님께 계속 지금까지 말씀해 오셨던 것 내가 조 목조목 반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이상 모든 신문이 끝났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혹시 하실 분은 약 2분 정도씩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광희 위원 아니, 왜 이러십니까? 계속하셔야지요. 아니, 10분, 5분, 3분, 3분 하시기로 하셨잖아요.

○위원장 신정훈 3분 다 끝났잖아요.

○이광희 위원 아니, 그래서 3분 한 번 더 하셔야지요.

○위원장 신정훈 우선 한번 수요를 조사해 보겠습니다.

신문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저는 한 다섯 번 정도 더 남았습니다. 위원장님, 3분짜리 5개 정도 더 남았습니다.

○서범수 위원 혼자 하십시오, 그러면.

○이광희 위원 혼자 시간 주시면 제가 다 할게요.

○위원장 신정훈 지금 세 분, 두 분인데……

○이광희 위원 지금 저쪽 간사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좀 주세요.

○서범수 위원 아니, 간사 간에 합의된 것도 아무것도 필요 없네, 이제.

○이광희 위원 간사님이 그렇게 허락하신다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아니, 간사 간에 합의된 것도 필요 없고 전부 다……

○위원장 신정훈 여섯 분이 손을 드셨는데요.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간은 2분 정도씩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덕흠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흠 위원** 이산 이현상 대표이사님, 이쪽으로 좀 와서 앉아 주실래요? 시장님 옆에, 시장님 옆으로.

이산 대표이사님, 감리단장 변호인이 이야기한 건데요. ‘대체적으로 협의를 인정하지만 시공 편의를 위해 기존 제방을 무단으로 절개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은 금강유역청과 협의한 행복청 또는 설계사가 책임져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이현상** 저희는 설계도면대로 시공을 하고 감리를 했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시공대로?

○**증인 이현상** 예.

○**박덕흠 위원** 설계대로?

○**증인 이현상** 예.

○**박덕흠 위원** 그러면 설계대로 했을 때 아까 누구지요? 성호흔인가 그 증인이 얘기한 부분, 시공사가 감독청이 그 구간을 할 때는 구간 책임은 시공사나 또 관리청에서 이것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냐 제가 물어봤었잖아요.

○**증인 이현상** 저희가 시공과 감리를 함께 있어서는 설계도면에 의해서 하는 거지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요. 각각의 행위를 할 때는 빌주청과 유역청이……

○**박덕흠 위원** 아니, 그러면 감리를 하실 때…… 감리하신 거예요, 설계하신 거예요?

○**증인 이현상** 감리……

○**박덕흠 위원** 감리하셨지요? 감리를 할 때 절개하는 그런 부분 협의 안 합니까?

○**증인 이현상**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증인 이현상** 행복청과 금강유역청이 저희가 실정보고 또는 유역청에서도 저희보고 제방을 안정적으로 쌓으라는 것을 보면 충분히 두 기관 간에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금강환경청 얘기가 아니라 지금 행복청이 감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증인 이현상** 예.

○**박덕흠 위원** 관리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청하고……

○**증인 이현상** 이미 협의가 된 상황입니다.

○**박덕흠 위원** 다 얘기가 돼서 절개, 절단을 했다 이 얘기지요?

○**증인 이현상** 예.

○**박덕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두 번째, 이해식 위원님 아까 손 드셨습니까?

○**이해식 위원** 예.

○**위원장 신정훈** 이해식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 위원** 1분 더 주시지요. 저는 아까 못 해 가지고…… 제가 질의 순서를 맨 뒤로 조정해 달라 그랬는데 그냥 끝내셨거든요. 그냥 1분만 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신정훈 우선 2분 하시고 제가.....

○이해식 위원 충북도 자연재난과장 홍명기 과장,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아까 박준규 실장께서 밤 10시경에, 참사 당일 밤 10시경에 사전에, 참사 전에 교통통제와 주민대피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신고가 있었다라고 하는 보고를 늦게 받았는데, 팀장으로부터. 그러면 최소한 과장님은 실장님보다는 조금 더 빨리 알았을 것 같아요. 언제 보고를 받았어요?

○증인 홍명기 이한울 주무관 말씀하시는지?

○이해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한울 주무관이 아니라 참사 전에 교통통제하고 주민대피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신고가 있었다는 것을 밤 10시 이후엔가 보고를 받았다고 아까 실장이 그랬어요. 그것 누구로부터 받았느냐 그랬더니 팀장으로부터 받았다 그랬잖아요.

○증인 홍명기 저는 정상준 주무관한테 받았다고.....

○이해식 위원 정상준 주무관으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증인 홍명기 예, 9시 반 넘어서 제가 받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해식 위원 9시 반 넘어서 받았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증인 홍명기 이한울 주무관.....

○이해식 위원 이한울 주무관은 아니고. 이한울 주무관이라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증인 홍명기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한울 주무관이 전화 받은 것에 대한 것을 제가 9시 반 넘어서 전화 받았다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식 위원 9시 반 정도에 알았다 그런 얘기입니까?

○증인 홍명기 예, 그렇습니다.

○이해식 위원 이한울 주무관은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다고 그랬는데?

○증인 홍명기 정상준 주무관한테 받았다는 얘기를.....

○이해식 위원 정상준 주무관한테 얘기를 했군요, 이한울 주무관이?

○증인 홍명기 예, 그렇습니다.

○이해식 위원 지검장님, 그것은 좀 확인을 했습니까? 검찰에서 확인했잖아요. 그렇지요?

○증인 박영빈 제가 확인한 것은 자연재난실장은 하급자한테 사후에 늦게 들었다 이렇게 보고가 돼 있고 그 뒤에 사후의 보고체계에 대해서는 조사가 안 돼 있습니다.

○윤건영 위원 아니, 아까 이한울은 아무한테도 보고 안 했다고 그랬는데.

○이해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말이 틀리는 거거든요. 이한울 주무관은 분명히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했다고 했는데 이한울 주무관이 정 무슨 주무관?

○용혜인 위원 정상준, 정상준.

○이해식 위원 1분만 더 주세요.

이한울 주무관은 정상준 주무관한테 얘기를 했고 정상준 주무관의 보고를 9시 40분에 받았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증인 홍명기 예, 맞습니다.

○이해식 위원 이한울 주무관 앞으로 나와 보세요. 아, 없어요?

지검장님, 이 부분은 지금 확인이 돼 있는 부분입니까? 아까 검찰에서는 확인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증인 박영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장이 하급자한테 사후에 보고를 받았다 여기까지 확인이 돼 있고 그 뒤에 이한울 주무관이 어떻게 했다는 사후의 보고 경로에 대해서는 조사가 안 돼 있습니다.

○**이해식 위원** 그러니까 아까 실장은 팀장으로부터 받았다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 정상준 주무관은 또 팀장한테 보고를 한 것이고 팀장이 또 실장한테 보고를 한 것입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신 거고. 그러니까 결국 전체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계선이라고 하는 것이 담당자가 이한울 주무관인데 이한울 주무관이 팀장한테 보고를 했고 팀장이 정상준 주무관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얘기를 했을 거고 정상준 주무관이 팀장한테, 팀장이 과장한테, 과장이 실장한테, 실장이 부지사한테, 부지사가 지사한테 이렇게 계선을 타고 보고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지금 안 됐다라고 입을 맞추다가 오늘 들통이 난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증인 홍명기** 보고 시점의 차이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식 위원** 시점의 차이는 있지만 사전에, 그러니까 참사 전에는 지사한테까지는 보고가 안 됐을 거다 그 얘기입니까?

○**증인 홍명기** 예, 그렇습니다.

○**이해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박영빈 증인, 지금 말씀하시면서 상급자에게 보고된 사실에 대한 조사가 안 돼 있습니까, 본인이 지금 그 내용을 현재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겁니까?

○**증인 박영빈** 지금 파악한 바로는 재난이 발생한 이후의 상황의 보고체계는 재난안전 실장이 하급자로부터 보고를 받았고 그게 어디서부터 돼 있는지는 조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이것은 사후의 문제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사전에, 행복청의 주무관이 누구였지요? 성흔수, 성흔수 주무관이 이한울한테 전화했던 것 이후에 이한울이 상급자에게 어떻게 사전에 보고했는지에 대해서는 조사가 끝난 겁니까?

○**증인 박영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조사가 완료된 겁니까?

○**증인 박영빈** 사전에는 보고가 안 된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보고가 안 된 걸로 끝냈습니까?

○**증인 박영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다음, 이연희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지검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결국 재난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신고가 들어오면 보고하고 전파하는 거잖아요. 지금 거기 수사에 혼선이 있는 거잖아요.

일단 지금 이한울 주무관은 자기는 수사받을 때까지 아무에게도 얘기 안 했다. 그런데 재난안전실장은 무슨 팀장한테 보고를 받았다, 10시경에. 그다음에 홍명기 과장은 정상준

이라는 주무관한테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하는데 얘기가 서로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수사의 기본 ABC 아니에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신고 전화를 접수자가, 거기서 중단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수사를 안 한 게 이게 무슨 수사를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증인 박영빈 사전체계에 대해서는 다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재해가 발생 전에 신고 상황이 있었고 그 신고가 어디까지 보고됐냐는 조사가 됐고……

○이연희 위원 그러니까 이한울 주무관은 검찰에서 수사받을 때까지 누구에게도 얘기 안 했다는 것 지금 들으셨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서.

○증인 박영빈 예.

○이연희 위원 그런데 지금 재난안전실장하고 재난안전과장은 당일 날 저녁때 그런 얘기를, 신고 전화가 왔다는 걸 들었다는 것 아니에요. 다르잖아요, 얘기가.

그래서 저희가 의심하는 것은 그날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훈련받고 방재안전직인 그 사람이 보고했을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선가 그 보고체계가 은폐가 됐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이한울 주무관 말하고 그다음에 재난안전 실장과 과장 말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은폐 의혹이 있는데 검찰은 이것을 지금 조사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증인 박영빈 사후체계는 조사가 안 돼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놓고 어떻게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사를 안 해 놓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최고책임자인 도지사에 대해서는 불기소하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충북도 관련해서 그분들은 아주 낮은 수준의 범죄 혐의로 기소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 제가 봤을 때는 재판 가면 무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무죄용 기소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어떠세요? 답변해 보세요.

○증인 박영빈 공소유지는 철저히 하겠고 주무관 관련 부분은 기소 여부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도록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니까 수사 자체를 보고체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위원장 신정훈 정리하시지요.

○이연희 위원 주무관에서부터 도지사까지 다 수사를 해 보세요.

○위원장 신정훈 김영환 증인, 자세를 반듯이 좀 해 주십시오.

○증인 김영환 예.

○위원장 신정훈 조금 불편하실 줄 알지만 답변석에 계신 분이 옆으로 너무 기울어져 있습니다.

윤건영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윤건영 위원 신문에 앞서서 양찬모 전 119종합상황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저는 오송참사가 왜 초기 상황을 제대로 장악하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한번 따져 보려고 합니다.

PPT를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면)

충북소방에서 참사 초기에 올린 상황보고서를 요약한 겁니다.

09시 39분에 지하차도 내 차량이 3대 같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10시 13분을 봐 주십시오. 차량이 3대, 4명이 고립돼 있고 2지하차도에는 실종자 2~3명, 심정지 1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그 밑에 봐 주십시오. 10시 36분에 똑같이 궁평2지하차도에 실종자 2~3명, 심정지 1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아니, 사고가 발생하고 2시간이 지나도록 충북소방에서는 실종자 2~3명으로 파악했던 겁니다. 이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난 극복에 대한 자원들을 총동원하는 데 시간의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재빠르게 대응을 못 했던 거지요.

다음 PPT 봐 주십시오.

결국 14시 34분이 되어서야 오송 궁평2지하차도에 19대로 추정된다라는 상황보고가 처음 됩니다. 벌써 몇 시간이 지났습니까? 8시 반에 참사가 벌어졌는데 대여섯 시간이 지나고서야 차량이 19대로 추정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상황실에서 제대로 확인하기로는 15시 14분에 19대 고립 추정입니다. 이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방자원들이 제대로 적시에 동원이 안 됐던 겁니다.

PPT 다시 앞으로 돌아가 주십시오.

보면 여기 10시 40분에 경찰 상황실 CCTV 협조 요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충북소방이 못한 지점이 바로 이겁니다. 지하차도에 침수 상황이 벌어졌으면 곧바로 경찰 상황실 CCTV를 협조 요청하거나 소방이 가지고 있는 CCTV를 확인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차량이 몇 대 있는지, 인명피해는 얼마인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런 것 전혀 없이 상황보고를 계속하다 보니 서너 시간이 지나도록 2~3명만 계속 같혀 있다라는 걸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도지사는 다른 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가서 식사나 하고 있지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충북소방이 아무 반성도 없이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간이 짧아서 제가 마무리 지으면, 재난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게 초기 상황 점검입니다. 상황을 얼마나 장악하나인데 이번 오송참사는 초기 상황을 완벽하게 놓쳤다, 그렇기 때문에 참사를 더 키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19종합상황실장으로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증인 양찬모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초기에 급박한 상황에서 정확한 현장 정보를 습득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고요.

상황실에서 그때 당시에는 CCTV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습니

다. 그래서 저희들도 초기에 상황 정보가 담긴 CCTV는 여러 가지 각도로 상황 정보를 구하려고 애를 써 본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다행히 그걸 구해 가지고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CCTV 분석 작업을 하는 데 다소 시간이 오래 걸렸었습니다.

○**윤건영 위원** CCTV 요청한 게 사고 발생 2시간이 지나서예요.

○**증인 양찬모** 그 부분도 저희들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  
○**위원장 신정훈** 이달희 위원님.

○**이달희 위원** 박 검사장님, 통상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법원에서 재판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는 우리 헌법상 수사와 재판은 사법부의 고유권한이라 해서 간섭하거나 수사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경우가 많지 않았지 않습니까?

○**증인 박영빈** 수사나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제한.....

○**이달희 위원**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국회 바깥에 있을 때는 항상 국회에서 이런 청문회나 국정조사가 있어도 나와서 ‘수사 중인 사항입니다’ ‘재판 진행 중이라 재판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래서 위원님들도 질의하고 이런 부분에 굉장히 조심도 하고 이랬는데 22대 국회에 들어와서는 제 생각입니다마는 많은 사건들을 결론에 대해서 미리 예단하거나 이렇게 처리해야 된다 하고 가이드라인 발언성 질의가 굉장히 많아진 것 같습니다, 비단 이 청문회뿐만 아니라.

검사님은 우리 국회가 방향을 제시하거나 이렇게 한다면 사법권 침해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부분이 아니고 통상적으로요.

○**증인 박영빈** 방향 제시를 강요한다 그러면 그렇게 되겠으나 국회 활동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참고할 부분은 참고하겠습니다.

○**이달희 위원** 그동안 오송참사 이후에 2년이나 지났는데요. 오늘 청문회는 정말 유가족들의 참 답답한 심정을 우리 국회가 민의, 국민을 대신해서 풀어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을수록 저는 법에 따라서 확실하게 법 절차를 정확하게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0초만 더 주십시오.

유가족들의 역울함을 풀어야 됩니다. 진상조사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가족들 지원도 확실히 해야 됩니다. 우리 국정조사의 목적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개선, 시스템 마련하고 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좀 더 나은 체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처벌에 대해서는 법적인 절차를 거의 완벽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박영빈** 법 적용은 절차에 따라서 적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달희 위원** 사법 정의가 삼권분립에 의해서 지켜져야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는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무리 말씀 해 주세요.

○**증인 박영빈** 저희로서도 이렇게 안타까운 사태가 발생을 했고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 그리고 남은 피해자분들께 참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수사기관으로서도 나름 최선을 다하고 법 적용을 하려고 하였으나 미진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 항고청에서 사건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달희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구두로 더 묻겠습니다.

사후보고체계도 위법이 됩니까?

○증인 박영빈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달희 위원 이상입니다.

○증인 김영환 위원장님, 아까 제가 녹취록을 드리겠다고 말씀했는데 제가 지금 보고를 들어 보니까 재난상황실의 영상회의 장비와 로그 기록 및 영상녹화 기록은 없답니다. 그런데 제가 본 것은 비서실에서 녹음한 녹취록이 있어서 이 녹취록을 지금 제출하고 싶은데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여기 녹취록……

○위원장 신정훈 우선은 회의가 끝나고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증인 김영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이왕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영환 증인께서 하신 말씀 중에 객관적인 팩트에 준거해서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자기 주관적인 어떤 기억이랄까 생각에 의해서 나온 이야기하고 많이 섞여 있어요.

저는 방금도 119상황실장의 답변 과정에서 또 하나의 의혹이 들었는데 재난상황실에서는 이 상황을 파악해 가지고 8시 30분에 출동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궁평 지하차도 내의 침수 상황들을 실시간 보고 있다가 그랬는데 아까 119상황실장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그때 그렇게 침수되는 과정에서 몇 대의 차량이 수몰됐는지 이런 것이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사후적으로 틀어 보고 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도지사께서 지금 본인은 못 봤지만 재난상황실에서는 상황을 다 실시간 캐치하고 있었다 이 이야기가 전혀…… 비록 일부 내용은 파악하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침수되는 과정의 실시간 상황은 전혀,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고자 하는 궁평 지하차도 침수 상황에 대한 시간적인 데이터들은 없었다 그렇게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은 여러 차례 영상 실시간 보고 있었다, 이게 과장되다 보니까 말이 이렇게 많이, 신문이 길어지는 거예요. 방금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증인 김영환 제가 표현이나 기억에 의존해서……

○위원장 신정훈 답변은, 제가 이야기할게요. 정리할게요.

본인들이 제출하기로 한 영상녹취 자료가 왜 없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영환 예.

위원님 지금 하신 말씀은, 우리 재난안전실에는 궁평2차도의 녹화 화면은 없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울량동이라는 곳에 도로관리사업소가 있는데 거기서 그 상황을 보고 있었다는 말이고 거기의 녹취록이 있었고 그 녹취록은 그날……

○위원장 신정훈 도로관리사업소의 자료조차도 상황이 전개되는 상황, 그러니까 차량이 매몰되고 있는 상황들을 실시간으로 본 것이 아니었던 말이에요, 미루어 짐작하면. 나중에 나중에 상황실에서 다 파악해 보니까 수몰된 내용들에 대해서 추후에 알았다는 이야

기 아니에요.

○**증인 김영환** 나중에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그러니까 지금 증인의 이야기가 계속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어요. 팩트에 접근을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증인들의 증언에 대해서 다 분석해 가지고 대조해 가지고야 진실에 겨우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회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비교 검토해서 아마 저희들이 판단하고 보고서가 나갈 걸로 생각합니다.

마지막…… 용혜인 위원 어떤 일이십니까?

○**용혜인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의사진행발언이요?

○**용혜인 위원** 예,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1분 내로 해 주십시오.

○**용혜인 위원** 재대본 회의 내용을 파악하려고 사실은 참사가 있었던 2년 전부터 진짜 노력을 했는데 비서실에서 그러니까 충북도에서 자료제출 요구 목록을 다 알고 있었을 텐데 공식적인 녹취는 없고 비서실에서 따로 녹음하거나 촬영한 것을 갖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아무 말을 안 하고 있었다라는 게 저는 정말 기가 차고요. 이제서야 슬그머니 내놓고 있는 이 상황이, 사실 충북도 직원들 입장에서는 지금 도지사가 말실수를 했기 때문에 내놓고 있는 겁니다. 정말 저는 공직기강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종이를 들어 보이며)

아까 지사께서 녹취록이라고 하면서 이것 종이를 들고 계셨는데 이게 종이도 종이지만 원본 녹음 파일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출하고자 하는 자료가 녹음 혹은 동영상 자료인지를 확인해 주시고 그 원본 파일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6시 20분, 6시 40분 회의에 대한 녹취 혹은 동영상이 맞는지도 확인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우선 아까 저한테 제출하겠다는 자료를 지금 저한테 좀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김영환 지사는 지난 9월 10일 날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감리단장이 국정조사에 오는 것을 두려워해서 자살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사님, 맞지요?

○**증인 김영환**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광희 위원** 그럴 수도 있다가 아니라 두 번이나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영상자료를 보면)

제가 이렇게 녹취……

○**증인 김영환** 제가 감리단장을 만나지 않은 이상……

○**이광희 위원** 아니,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자, 보세요. 감리단장하고 유일하게 인터뷰한 분이 계십니다. 그 유일하게 인터뷰한 분이 ‘신고 과정에서 공사장 관리 책임자라고 밝혔더라도 경찰이 저렇게 대응했을까’, 경황

이 너무 없어 신고 도중 본인의 신분을 밝히지 못한 점이 정말 후회된다고 감리단장은 계속 죄책감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교정 당국 관계자가 인터뷰했는데 평소 죄책감을 많이 갖고 있어서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것은요 사자 명예훼손입니다. 그냥 사과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고인이 말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정조사를 부정하고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함부로 유포했습니다. 큰 죄예요. 적어도 징역 2년 이하나 금고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그런 일입니다. 사자 명예훼손하셨어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고인의 사망 사유를 허위로 유포하고 국정조사의 당위성을 부정하셨는데.

○증인 김영환 위원님이 그렇게 저에게 벌을 주시면 달게 받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벌이라니요? 질문입니다.

○증인 김영환 그리고 여기에 오는 공무원들이……

○이광희 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무슨 벌을 줍니까?

○증인 김영환 얼마나 많은 부담을 안고 계시는지는……

○이광희 위원 지사님, 감리단장이 왜 목을 매고 죽었느냐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국정감사에 오는 것을 두려워해서 했다고 본인이 말씀하셨어요, 두 번이나!

○증인 김영환 저도 얘기할 기회를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광희 위원 아니,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라니까. 제가 지금 벌주는 겁니까?

○증인 김영환 아니, 4년을 받은 감리단장이 2년을 산 분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목을 땠는데 그 목을 맨 것에 대한 책임이 청주교도소장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장관까지 갈 수 있는 것이 중대재해시민법이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취지가 있고요.

○위원장 신정훈 잠깐요, 중단해 주세요.

○증인 김영환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얘기한 것인데……

○위원장 신정훈 김영환 증인, 지금 굉장히 본 위원회를 모독하는 발언을 하고 계세요. 정말 이성적이지가 않아요.

자, 목을 맨 감리단장이 어떤 심사였을지는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단정해서 ‘법무부장관까지 책임을 물어야 될지도 모른다’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증인 김영환 아니, 제 말씀은……

○위원장 신정훈 그만하세요!

○증인 김영환 저한테 그렇게 고압적으로 하실 그런 위원장님의 지금 상황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박정현 위원 지금 그렇게 답변하실 상황이 아닙니다.

○증인 김영환 번번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도 국회를 해 봤지만 이렇게까지 고압적으로 증인을 다루는 법을 처음 봤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러면 고인이 말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정조사를 부정하고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거짓말해도 되는 겁니까?

○위원장 신정훈 그 발언은……

○모경종 위원 저도 지사님 같은 도지사 처음 봅니다.

○**용혜인 위원** 검찰에서 제대로 조사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위원장 신정훈** 사자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증인 김영환** 그렇게 하셔도 제 말씀의 취지는 감리단장이 그렇게 돌아가셨을 때……

○**위원장 신정훈** 그만하세요. 그만하시라고.

○**증인 김영환** 그것을 법무부장관까지 그렇게 갈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신정훈** 그만하세요. 그만하시라니까요!

○**증인 김영환**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런 취지로 한 것을……

○**위원장 신정훈** 그만하세요! 그만하시라고! 그만하세요!

제가 굉장히 많이 인내하고 지금 증인에게 기회를 드리기도 했는데 이 발언만큼은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돌아가신 분을 어떻게 당신이 알아요?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방금 전까지 사과해 놓고 또 그렇게 이야기해요?

국정조사를 마치 특정인에게 뒤집어씌울 것을 목적으로 한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표현한 것도요 제가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증인께서는 대단히 부적절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여러 차례 여러 경로로 들어 보면 본인의 책임감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많이 힘들어 했어요. 그리고도 이 상황 돌아가는 것이 본인에게 억울함이 많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국정조사라고 하는 것이 그분에게 불리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김영환 증인에게 불리한 일이 국정조사가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돌아가신 그분에게는 국정조사 때문에 목맬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고요. 세상이 그분에게 너무나 억울하게 많은 일들을 추궁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불행한 사태가 나왔을 수가 있어요.

저는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증인 이야기는 취소해야 돼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증인이 얼마만큼 증언을 불성실하게 하는가를 제가 지금 또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회의의 녹취록이 아니에요. 이걸 녹취록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또 녹취록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음원이든지 영상이든지 있어야 돼요. 낼 수 있습니까?

○**증인 김영환**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뒤에 있는 실무자 나와 보세요, 답변석으로. 이 녹취록을 제출한, 가져온 실무자 이리 나오세요.

이 문서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충청북도자연재난과장 정진훈** 이것은 저희 지사님께서 비서실에서, 저희들이 회의를 하면서 녹취된 게 아니고요. 비서실에서 인사말씀 녹음하는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위원장 신정훈** 정확히 이야기하세요.

비서실에서 인사말씀 녹음한 자료예요?

○**충청북도자연재난과장 정진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인사말씀이 아니라 회의록인데?

○**충청북도자연재난과장 정진훈** 그런데 그때 전체적으로 녹음한 게 있어서 그것을 제출한 겁니다.

○**위원장 신정훈** 녹음 원본이 있습니까?

○**충청북도자연재난과장 정진훈** 저한테는 없고요 비서실에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요.

○**충청북도자연재난과장 정진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제가 왜 그러냐? 이건 그냥 단순히 회의록을 정리해 놓은 듯한, 녹취록이라면 다양한 사람들의 쓰는 언어가 여기에 표현돼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거예요. 단순히 시장님 인사말씀, 아무개 군수의 발언 내용, 그냥 발언 내용을 요약해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녹취록을 자료로서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자연재난과장 정진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더 이상 질문하실 분……

○**서범수 위원** 정말 왜 이러세요?

○**이광희 위원** 아까 국민의힘 간사님께서 얼마든지 하라고 시간을 주셨어요.

○**서범수 위원** 그래 하세요, 그래!

○**이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위원장 신정훈** 이광희 위원님.

○**이광희 위원** 아니, 왜 화를 내시고 그러십니까? 본인이 얘기를 해 놓고 왜 화를 내고……

○**위원장 신정훈** 이렇게 하십시오. 서범수 위원님 잠깐만요.

○**이광희 위원** 본인이 얘기를 해 놓고 왜 화를 내고……

○**위원장 신정훈** 이광희 위원님.

제가 이 회의를 지난번 기관보고, 현장 방문 그리고 오늘 청문회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이번 국정조사의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전체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진실에 접근하는 데 많은 이야기들이 또 단서들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 이 국정조사에서 밝힐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진행 과정에서 나온 증언과 발언 중에서 수사나 재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는 것도 충분히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위원님들의 노력 그리고 또 신문 과정에서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신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광희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모셔 놓고 하루 종일 저기에 앉아서 한마디 발언해 주시기를 바라는 분이 두 분이 계세요. 1분씩만 시간을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정훈** 그러면 그렇게……

이연희 위원님.

○**이연희 위원** 저도 한 1분만 주십시오. 피해 주민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목소리를 꼭 좀 전달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좋아요. 하여튼 그러면 이연희 위원님하고 이광희 위원님 2분씩만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이해식 위원** 저는 안 돼요?

○**위원장 신정훈** 이해식 위원님은 양해를 좀 해 주셨으면……

○**이해식 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질문을 할 수 있게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신정훈** 예.

○**이광희 위원** 저는 질문은 서면으로 하고요. 오신 분들 말씀이라도……

○**이해식 위원** 서면으로 하고 답변은 좀……

○**위원장 신정훈** 예.

○**이광희 위원** 전 국가물관리위원회 염형철 위원님 나와 주시고요. 생명안전시민넷 최희천 집행위원님 두 분 앞으로 나오셔서 1분씩……

○**위원장 신정훈**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말씀을 좀, 전문가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부와 관련된 질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못 해서 두 분 말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인 최희천** 저는 시민진상조사위원회에서 진상규명팀장을 맡았던 최희천 박사라고 합니다.

제가 조사를 하고 그리고 청문회를 계속 들으면서 이해할 수 없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하나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충청북도도 있고 청주시도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각 실·반의 구성이라든가 임무 그런 부분들이 다 있고 그리고 상황 정보를 계속해서 취합하는 임무가 부여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제가 20년 이상 조사를 하고 대학에서 재난 강의도 하고 연구도 한 경험에 따르면 보통 재난대책본부가 구성돼서 운영이 될 때 여러 가지 단톡방들이 운영이 됩니다. 왜냐하면 각 실·반별로 하고 과별로 하고 그래서 보통 한 명이 중복적으로 거기에 참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실시간 정보가 공유가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용들이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다 옮겨지거든요. 그래야지 전체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그림을 가지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되지 않았다는 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하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위원장 신정훈** 이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최희천** 예.

또 하나는 수십 킬로미터에 걸친 제방에서 절단된 부분은 이번에 60m인데 그게 아무리 많아야 한두 개일 겁니다. 그게 1~2개월도 아니고 몇 년간 계속해서 주로 둑이 터진 상태로 있었는데 당연히 재난취약지역으로 조사가 되고 관리가 되어야 됐는데 그게 왜 안 됐는지? 왜냐하면 둑에 대한 부분들은 법적인 관리 책임의 논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넘어서는 순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마지막 30초만 말씀드리면 보통 재난조사를 하다 보면 일선 실무자들이 책임을 지는데 그 부분은 자신들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은 져야 되지만 자신들의 책임을 넘어서 시스템이 망가진 부분이라든가 운영이 안 된 부분들까지도 본인들이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고 이번에도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고맙습니다.

자기 이름 말씀해 주시고……

○참고인 염형철 저는 진상조사단에 함께 참여했던 염형철입니다.

저도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이번 사태가 벌어지고 지금 2년 2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정부기관에서 조사한 곳은 단 하나,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 예비조사 결과보고서 1건입니다. 자자체도 없고 행안위도 없고 환경부도 없었습니다.

저는 특히 그중에서도 홍수가 나면 으레 조사를 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내야 하는 그런 기관이 환경부에는 있습니다.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입니다. 이 기술원에 의해서 왜 사고가 났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문제가 커졌는지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 졌다면 오늘 청문회에서 있었던 많은 갑론을박들이 해결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 부분은 사태의 원인을 감추고 그리고 문제를 축소하기 위해서 구조적으로 은폐했다라고 봅니다. 그 해당하는 기관들에서 응당 책임을 져야 되고 특히 환경부의 책임이 굉장히 무겁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청문회를 보면서 위원님들께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우연하게 사고 당일 현장 근처에 있었고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진상조사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큰 사고가 났는데 다들 이렇게 무책임하고 그리고 그 사고로부터 아무런 교훈도 얻으려고 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참으로 통탄스러웠습니다.

더구나 이 상황이 어떻게 정치화되는가를 보면 이렇습니다. 사고가 7월 15일 날 나지요. 그런데 7월 18일 날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공주시와 논산시를 방문해서 ‘이럴 때 쓰려고 아껴 뒀다. 준설과 제방 축조 등에 사업비를 적극 지원해라’라고 해서 이 사고가 터지고 나서 느닷없이 준설과 그리고 제방 축조 사업들이 아주 날개를 달게 됩니다. 예산들이 크게 확장됩니다.

그리고 20일 날 조선일보는 ‘홍수 대비 미호강 준설 사업, 환경단체 반대에 막혔다’는 기사를 내서 엉뚱하게 4대강 사업 논쟁으로 이 상황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같은 날, 20일 날 한화진 장관께서는 4대강 보가 있었다면 달랐을 것이라면서 4대강 보 철거 결정을 뒤집겠다고 그날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확인하듯이 직접적인 원인은 제방의 단절이고 그리고 또 다른 원인은 차량통제를 하지 않은 것인데 전혀 엉뚱한 데로 갖고 가서 정치화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의 많은 것이 오늘 자리에서 해결이 됐고 그리고 새롭게 방향을 잡았다는 데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한 가지 남은, 제방과 준설이 그 사태 이후로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후 조치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희 위원님.

○이연희 위원 금호건설 사장님 계시지요?

금호건설 사장님하고 전 행복청장님하고 청주시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2023년 7월 15일 날 오송에는 참사만 있었던 게 아니고 막대한 침수 피해가 발생을 했

습니다. 임시제방이 무너지면서 6만t가량의 물이 지하차도뿐만 아니고 주변의 농경지, 주택 그리고 공장 시설물로 들이닥쳐서 막 침수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오송참사의 희생자들에 가려서 말도 못 하고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백억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해서 실제로 삶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고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수된 주택 같은 경우는 여전히 악취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고 많은 농기계 이런 것들을 거의 쓸 수가 없어서 재산상의 손실도 막대합니다.

이 손실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되는데 결국 국가나 지방자치 아니면 사고 원인 업체에서 이것을 배상해야 되는데 현재 진행 상황은 형사재판의 결과를 기다려 봐야 된다 이런 논리 때문에 아무것도 진척이 안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주민들의 피해, 그러니까 임시제방, 부실 제방을 쌓아서 그것이 무너져서 발생한 침수 피해에 대해서 주민들은 10년 이상 걸려야 배상을 받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금호건설이나 청주시 그리고 행복청에서 이런 부분은 먼저 배상을 하고 그리고 그 원인에 따라서, 재판 결과에 따라서 따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피해 주민들을 만나서 얘기를 듣고 경청을 하고 방안을 찾아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금호건설 사장님도 말씀해 주시고 청주시장님도 말씀해 주시고 전 행복청장님도 입장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조완석** 유가족 여러분과 재해자 여러분 그리고 피해를 입으신 주민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저희의 생각이 좀 깊었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어떻든 법적 책임과는 별개로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시장님도 말씀을 해 줘 보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증인 이범석** 2년 전 3일 동안 426mm의 극한호우뿐만 아니라 하천제방의 유실로 인한 피해는 적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정부 기준에 따라서 지원을 했지만 이 건은 손해배상이 성립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될지를 세부적인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보고 관계자들하고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금호건설 대표이사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이상래** 국가의 잘못이 있다면 당연히 배상·보상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현재는 책임 규명 과정에 있기 때문에 또 저는 이미 자리를 떠난 사람이고 그래서 제가 확정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떤 경우에도 이번 국정조사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국가의 잘못이 드러난다면 이건 반드시 배상을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앉아 주시고요.

추후로도 그렇지만 간접 피해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도 해당된 각 기관에서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해식 위원님 서면질의 말씀하셨는데 요지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식 위원** 김영환 지사께서 왜 미호강은 한 번도 범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했을까? 그것은 제방이 붕괴돼 가지고 물이 궁평지하차도로 흘러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라고 하는 것을 강변하기 위함인 것 같고.

또 실장님은 사후에 보고를 받았다는 건데 왜 그 누구로부터 보고받았는지에 대해서 굳이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사전에 알았던 것 아닌가.

그리고 김영환 지사께서는 왜 괴산으로 갔을까, 괴산댐으로 갔을까, 수위가 낮아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출발하기 20분 넘어 전에 이미 수위가 낮아지고 있었어요. 괴산댐의 수위가 낮아지고 있었는데 왜 괴산댐으로 갔을까? 괴산댐으로 가서 사고 소식을 들었는데도 왜 오송으로 가지 않았을까? 왜 거기서 점심까지 먹고 오후에 도착했을까? 그것은 사전에 보고를 받았는데 조치가 안 된 것에 대해서 면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버액션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의문을 서면으로 제가 요구를 할 테니까요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정훈**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시간적인 제약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질의를 통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저는 많은 것들이, 또 국민과 또 희생자 유가족에게도 진실에 접근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온전히 설명되었더라면 오늘이 국정조사도 필요치 않았을 겁니다. 특히 조사가 좀 더 철저하게 진행되었더라면 국민들의 의혹이 이렇게 커지지도 않았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설명 과정, 조사 과정이 미흡했던 참사의 진실,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진실에 접근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나머지는, 앞으로 이 조사가 끝이 아니고 저희 보고서에 담긴 내용들이 온전히 사법당국에서 그 취지에 맞게 또 진실에 맞게 조사가 추가적으로 진행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 당국에서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장시간 자리를 지켜 주신 증인·참고인 여러분, 국회 공무원 및 보좌직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32분 산회)

### ○출석 위원(22인)

고동진 권칠승 김성희 모경종 박덕흠 박수민 박정현 서범수 신정훈 양부남  
용혜인 위성곤 윤건영 이광희 이달희 이상식 이성권 이연희 이해식 정춘생  
주호영 채현일

###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전문위원 조문상

전문위원 나아정

###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 곽병우

### ○출석 증인

김영환(충청북도지사)

이동옥(충청북도 행정부지사)

홍명기(前 충청북도 자연재난과장)

양찬모(前 충청북도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장)

이석식(前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준규(前 충청북도 재난안전실장)

여운현(충청북도 (당시) 수행비서관)

오유길(충청북도 안전정책과장)

박상준(충청북도 자연재난과 주무관)

이한울(충청북도 자연재난과 주무관)

이범석(청주시장)

최원근(前 청주시 안전정책과장)

조희송(前 금강유역환경청장)

이상래(前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조완석(금호건설 대표이사)

서재환(금호건설 고문)

최선호(금호건설 상무)

박영빈(前 청주지방검찰청 수사본부장)

남화영(前 소방청장)

이현상(주)이산 대표이사)

### ○출석 참고인

최희천(생명안전시민넷 집행위원)

김00(오송지하차도참사생존자협의회 대표)

성흔수(前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광역도로과 주무관)

김남균(충북인뉴스 기자)

염형철(사회적협동조합 한강 공동대표)